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오종현·서동연·허윤영

2023. 9.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진

연구책임자

오 종 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서 동 연 공인회계사

허 윤 영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12
가.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	12
나.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13
2.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세부적 고찰	15
가. 법률적 관점	16
나. 경제적 관점	20
III.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제도	24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24
2. 소득세 과세단위 규정	27
가. 개요	27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28
3. 소득세 과세단위의 주요 변천 과정	36
가. 개정 연혁	36
나. 최근 논의 동향	40
IV.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42
1. 개인단위과세	42

가. 일본	42
나. 영국	56
2. 소비단위과세	79
가. 미국	79
나. 독일	97
다. 프랑스	122
3. 국제비교	141
가. 소득세 과세단위 개요	141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142
다. 소득세 과세단위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150
V. 시뮬레이션 분석: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52
1. 분석 방법	152
2. 분석 결과	157
3. 시사점	162
VI. 요약 및 결론	165
참고문헌	169

표 목차

〈표 III-1〉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	26
〈표 IV-1〉 일본의 총소득금액별 기초공제 금액	47
〈표 IV-2〉 일본의 공제대상 유형별 배우자공제 금액	48
〈표 IV-3〉 일본의 총소득금액 수준별 배우자 특별공제 금액	49
〈표 IV-4〉 일본의 부양친족 등의 총소득금액 요건 개정 전·후 비교	51
〈표 IV-5〉 일본의 공제대상별 부양공제 금액	52
〈표 IV-6〉 영국의 종합소득세율(2023/24)	60
〈표 IV-7〉 영국의 결혼공제(양도 가능한 기본공제) 적용 사례	64
〈표 IV-8〉 영국의 CTC 요소별 최대 지급액(2023/24 기준)	70
〈표 IV-9〉 영국의 WTC 요소별 최대 지급액(2023/24 기준)	73
〈표 IV-10〉 미국의 소득세 신고유형별 세율(과세연도 2023년 기준)	85
〈표 IV-11〉 미국의 EITC 신청을 위한 기준소득 금액(2023년 귀속 기준)	90
〈표 IV-12〉 미국의 EITC 신고유형 및 부양자녀 수별 지급방식(2023년 귀속 기준) ..	90
〈표 IV-13〉 독일의 소득세율	99
〈표 IV-14〉 독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단위 가구유형	105
〈표 IV-15〉 독일의 「소득세법(EstG)」 제33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 소득공제 관련 합리적 부담 수준의 비율	111
〈표 IV-16〉 독일의 소득세 형평공제액 산정 예시	116
〈표 IV-17〉 프랑스의 기본 가족계수(parts) 예시(2023년 6월 기준)	131
〈표 IV-18〉 프랑스의 과세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134

〈표 IV-19〉 국가별 소득세 과세단위와 특징	142
〈표 IV-20〉 국가별 기본 인적공제 제도	146
〈표 IV-21〉 국가별 세법상 부양가족 등의 범위와 요건	148
〈표 IV-22〉 국가별 과세단위 유형과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151
〈표 V-1〉 소득세 과세단위에 따른 세 부담 계산방식과 분석 시나리오	156
〈표 V-2〉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 비교	160

그림 목차

[그림 II-1]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13
[그림 III-1]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26
[그림 III-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3
[그림 III-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6
[그림 IV-1] 일본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44
[그림 IV-2] 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58
[그림 IV-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81
[그림 IV-4] 미국의 신고유형 및 부양자녀수별 EITC 지급방식	91
[그림 IV-5] 독일의 소득세 과세체계	100
[그림 IV-6]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125
[그림 V-1]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산출과정	153
[그림 V-2]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및 가구유형별 세 부담 비교	161

I. 서론

-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을 종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인적단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¹⁾
 - 소득세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과세와 소비단위과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 조세행정비용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한 유형으로 트렌드가 형성된 것은 아님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과세유형이 개인단위인지 소비단위인지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²⁾
 -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별 상황(자녀유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인적공제를 포함한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과거 우리나라는 자산소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부부합산과세(합산비분할)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단위과세로 전환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논의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부터 2010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과세단위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최근 혼인·

1) 김완석(2005), p. 15.; p. 19.

2)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제도, 자녀장려금 또는 근로장려금 등의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같이 특정한 사회보장 목적의 제도에 대하여는 부부 혹은 세대(가구) 단위 기준의 요건을 두고 있음

출산을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N분N승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2010년 전후까지는 경제적 실질 및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부부단위합산과세(이분이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었음³⁾
 -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조세수입의 감소와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 위축 등을 근거로 개인단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N분N승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⁴⁾
 - N분N승제는 프랑스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방안으로 1945년부터 시행하여 실제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도임
- 그러나 과세단위 제도 변경에는 상당한 비용과 과도기적 혼란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과세단위 변경은 우선적으로 가구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가구 내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⁵⁾
 - 조세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함께 과세단위변경이 저출산 해소 등 사회정책적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에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의 과세단위 제도별 특징을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의 현 위치를 검토해보고자 함

3) 주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단위가 가구라는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부부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며, 소득세 과세단위와 상호연관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원 및 평가단위가 일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을 주장함(안중범·전승훈·김동준(2010), pp. 171~173)

4) 『열린뉴스통신』, 「박성준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2022. 12. 27., <https://www.ow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49284>, 검색일자: 2023. 7. 10.; 『한국세정신문』, 「자녀가 있는 부부 세제혜택,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2022. 3. 24.,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4097>, 검색일자: 2023. 6. 2.

5) 안중범·전승훈·김동준(2010), p. 173.

- 조사대상국은 과세단위 유형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국가로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를 선정함
 - 개인단위과세 국가로 일본과 영국, 부부를 소비단위로 보는 국가로 미국과 독일, 가족을 소비단위로 보는 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함
 - 본 연구는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이론,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각 국가별 과세단위 변천과정, 과세단위와 관련된 주요 조세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⁶⁾
 - 주요 조세제도로는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 관련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저소득층 근로 및 자녀양육 지원세제⁷⁾ 등을 조사함
 - 다만 항목별 공제⁸⁾의 경우 각각의 정책적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비행태나 성향, 특수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세단위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조사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보고서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및 이론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및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제도 및 변천과정,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보고 조사국 간 제도를 국제 비교함
- 제V장에서는 과세단위 유형에 따른 조세 부담 효과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비교함
- 제VI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함

6) 가족(부부) 공동 사업소득,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단위 규정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및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세단위 및 가구별 세 부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8)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공제가 있으며, 국가별로 공제 항목의 범위는 상이함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가.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

-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을 종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인적단위로, 소득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의 귀속자 구성단위를 말함⁹⁾
 - 소득세 과세단위는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제도 등을 포함한 소득세 과세체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정기간 측정되는 소득의 범위와 함께 누구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사회·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¹⁰⁾
 - 즉 소득세의 과세단위란 소득세 산정 시 소득을 가득(稼得)하는 개인단위로 산정할 것인가 또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부부나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 누진세율¹¹⁾ 체계 하에서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 또는 소비단위 중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 외에도 과세단위는 헌법상의 원칙, 민법상의 부부재산제, 과세 공평성, 중립성, 조세행정, 사회보장제도 등과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

9) 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p. 19.; 이종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pp. 568~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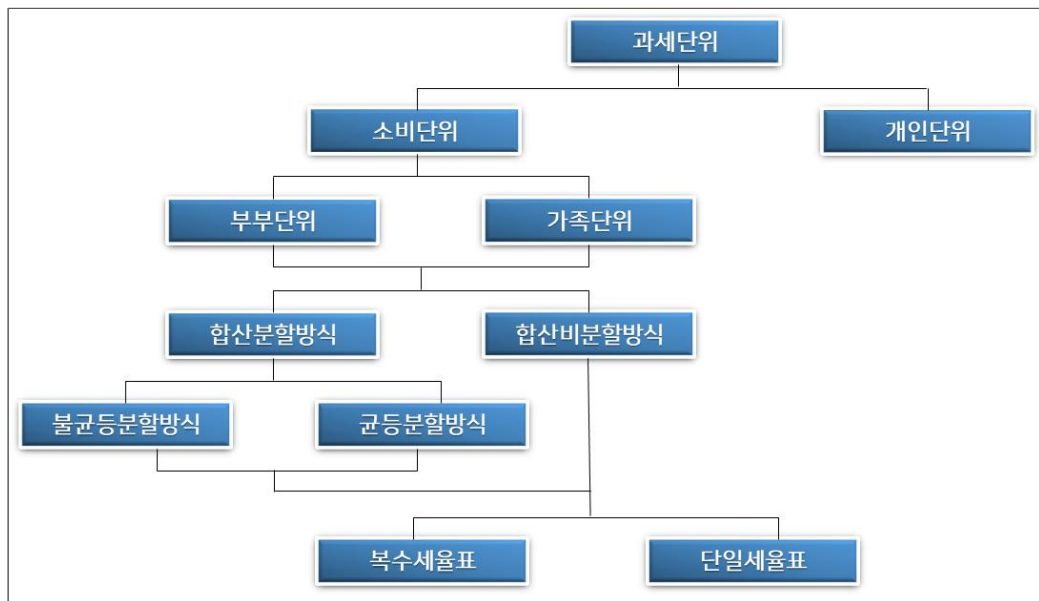
10) 전병목,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 p. 24.

11)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납부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말함

나.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¹²⁾

- 소득세 과세 시 세액을 산정하는 인적단위로서의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이론적으로 크게 개인단위와 소비단위로 구분함
- 개인단위는 소득을 얻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고, 소비단위는 부부나 가족 등 소비생활상의 집단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을 말함
- 과세단위 유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II-1]과 같음

[그림 II-1]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개인단위

- 개인단위(individual unit)는 소득을 얻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

12) 김완석(2005), pp. 20~23을 요약·정리함

하는 것으로, 세대 구성원별로 그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 각각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2) 소비단위

- 소비단위(consumption unit)는 소득을 소비하는 부부 또는 가족 등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합산 대상의 범위나 소득의 분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가) 합산 대상

- 소비단위는 소비생활상의 집단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와 가족단위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족단위에 있어서도 과세단위를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한정하여 설정하거나 부모 등을 포함한 모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소비단위에서 분류되는 부부단위와 가족단위는 다시 소득분할 여부 및 분할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나) 소득분할 여부 및 분할방식

- 소비단위주위는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분할 여부에 따라 합산 분할방식과 합산비분할방식으로 구분함
 - 합산비분할방식은 소비단위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후 분할하지 않고 합산 소득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합산분할방식은 부부 또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부부 또는 세대 구성원의 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이를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할방식에 따라 다시 균등분할방식과 불균등분할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균등분할방식은 소득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부부단위에 있어서 균등

분할방식으로는 ‘이분이승제’¹³⁾가 있음

- 불균등분할방식은 분할계수를 통해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부단위에 있어서 분할계수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따른 규모의 이익 등을 반영하여 2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임

다) 세율표의 차등 적용 여부

- 소비단위는 소비단위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표(one rate schedule) 방식과 소비단위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표(two or more rate schedules) 방식이 있음
- 기혼부부에게 적용할 세율표상의 과세구간이 독신자에게 적용할 세율표상의 과세구간의 2배인 경우에는 이분이승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

3) 선택적 이분이승제

- 소득세 과세단위의 절충형으로 개인단위와 소비단위 중 합산균등분할방식을 정하는 선택적 이분이승제가 있음
- 이 경우는 개인과세와 소비단위에 따른 합산과세에 대하여 개별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납세하는 방식임

2.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세부적 고찰

- 소득세 과세단위는 헌법 및 민법상의 기본원칙과 관련 규정과의 조화, 과세 형평성,

13) 이분이승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부부 1인당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 부부 1인당 소득세액에 다시 2를 곱한 금액을 부부의 소득세액으로 하는 방식임

결혼 및 취업에 대한 중립성, 세무행정상의 간소화와 조세회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이하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의 선택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어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특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함

가. 법률적 관점

-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헌법, 민법, 기타 다른 세법과의 사이에서 과세원칙의 통일치성(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 헌법적 측면

-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규정은 특정한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규정이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이 있음

-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의는 현행 헌법상 기혼부부에 대하여 개인단위 또는 부부합산단위가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⁴⁾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혼인에 있어서 평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문으로서, 혼인당사

14) 「헌법」 제36조 제1항

- 자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에 대한 중립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혼인생활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성원칙¹⁵⁾에 따른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됨
 -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과거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부를 과세단위로까지 확대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소득세법」이 1949년에 제정된 이래 소득세 과세단위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¹⁶⁾
 - 이후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자산소득¹⁷⁾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를 해 오다가 2002년 8월 29일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완전한 개인단위로 전환하게 되었음¹⁸⁾

15) 비례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정부입법지원센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4&astClsCd=>, 검색일자: 2023. 9. 27.)

16)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17)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음

18)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하였음

- 200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¹⁹⁾ 관련 조문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2008년 개인단위로 변경되었음²⁰⁾

2) 민법적 측면

- 소득세 과세단위는 「민법」상 부부재산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는 부부의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임²¹⁾
 - 소득세 과세단위가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와의 체계적인 일관성이나 조화성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 부부재산제라 함은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경우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임²²⁾
- 「민법」상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관계를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법에서 법정재산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음²³⁾

19)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

20)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선고 2008헌가12(병합);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21) 김완석(2005), p. 86.

22) 이동식,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2020, p. 315.

23) 「민법」 제829조 제1항

-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그 일방의 재산이라고 함²⁴⁾
 - 이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²⁵⁾
-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²⁶⁾

- 다만 부부재산제와 과세단위 문제는 별도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²⁷⁾
 - 「민법」상 혼인 중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공평한 세 부담 분배를 위해 「세법」상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부부 또는 가족으로 할지 여부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 양자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임²⁸⁾

24) 「민법」 제830조

25) 「민법」 제831조

26) 현재 2008. 11. 13. 2006헌바112; 헌법재판소는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할 뿐이며(민법 제830조 제2항), 더욱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한다는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당연히 개인단위가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논리적 당위성도 없다 할 것인데도, 부동산을 소유한 배우자 등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에 있어 그 과세 기준 금액과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에 따라 부부 일방 또는 가족인 세대원의 특유재산까지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원리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음

27) 이동식,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2020.

28) 부부별산제 하에서도 소득세 과세단위에 있어서 소비단위를 채택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있음

나. 경제적 관점²⁹⁾

-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과세단위(tax unit)로서의 '납세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결혼의사결정 및 배우자의 노동공급 등 경제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미침
 - 소득 증가에 따라 세 부담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례세율구조에서는 과세단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과세단위는 납세자의 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결혼 및 노동공급(예: 맞벌이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침
 - 이하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가 과세 공평성(공정성), 중립성(효율성), 조세 간소화(단순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특징과 함께 살펴봄

1) 과세 공평성

- 과세 공평성의 관점은 어떤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개인 또는 가구 간의 공평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경제생활의 기본단위가 부부 또는 가족단위이고 공동소비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비단위가 우위에 있음
 - 반면 개인단위는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경제적 단위가 가구라는 점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가구 간의 공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 간에는 세 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단위 과세에서는 가구 간 공평성이 저해됨
 -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인 자와 1,000만원인 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29) 이종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pp. 568~570.; 船橋 充 稿, 『所得稅制の課稅單位に関する一考察』, 租稅資料館, 2014, pp. 24~31을 요약·정리함

경우와 두 사람 모두 각각 2,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경우 세 부담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두 경우 모두 결혼 후 부부합산소득은 5,000만원임
-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이 각각 2,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개인단위 과세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 가족단위과세에서는 두 부부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함
- 두 부부의 합산소득은 5,00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생활수준(소비수준)이나 담세력이 동일하다고 보면 가구 간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단위보다 소비단위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음

- 반대로 개인 간의 공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개인은 세 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비단위 과세에서는 개인 간 공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중립성

가) 결혼에 대한 중립성

- 결혼에 대한 중립성은 개인이 결혼할지 여부를 선택할 때 과세단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결혼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크기가 달라지면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세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중립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임
- 결혼에 대한 중립성 기준에서는 개인의 세 부담이 결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단위가 소비단위에 비해 우위에 있음
 - 특히 소비단위 중 합산비분할방식은 부부소득의 합산으로 그 금액이 커짐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는 결혼에 대한 제재(marriage penalties) 또는 결혼세(marriage tax)로 작용함

- 이와 반대로 합산분할주의는 부부소득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혼에 대한 보너스(marriage bonus)로서 기능함
- 이와 같이 과세단위로 소비단위를 채택하는 경우 결혼 여부가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과세단위가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다만 결혼보너스 또는 결혼페널티가 부부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합산소득 수준, 개인소득의 유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취업에 대한 중립성

- 취업에 대한 중립성은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incentive)가 다른 세대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세제상의 고려사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 이 관점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가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중립성 측면에서는 개인단위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비단위에 비해 우위에 있음
 - 소비단위는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배우자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로 여성의 노동참여 및 노동시간 증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부부단위 비분할 합산과세에서는 납세자 본인이 고소득자이거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취업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Boskin(1973)은 개인단위가 누진적 소득세제 하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의 이차소득자에게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³⁰⁾

30) 전병목(2007), p. 26 재인용

- 과세단위의 변경은 노동공급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함³¹⁾

3) 조세 간소화

- 소득세 과세단위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과세당국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함
 - 조세 간소화의 기준에서는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자 및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개인단위가 소비단위에 비해 납세협력 또는 세무행정 측면에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소비단위는 세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등의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단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의 인위적인 소득분산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조세행정비용도 증가할 수 있음

31) 안중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9, p. 4.

Ⅲ.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제도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 소득세는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비과세소득 제외),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함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³²⁾ 과세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역년으로 함
 -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들 소득금액 합계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함³³⁾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³⁴⁾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산출됨³⁵⁾

32)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33)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34) 다음의 경우를 말함(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검색일자: 2023. 8. 1.)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5)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검색일자: 2023. 7. 24. 참고하여 요약함

- 각 소득 유형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함
-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하여 인적공제라고 함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보험료, 주택자금에 소요되는 원리금 상환액 일부 또는 이자 상환액 등을 공제하는 것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
 -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임
-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함
 - 「소득세법」상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³⁶⁾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³⁷⁾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항목에는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음
 -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적용함
 - 그 외에도 저소득층의 근로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됨

36) 종합소득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며,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세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37)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를 말하며, 보험료를 제외한 항목의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액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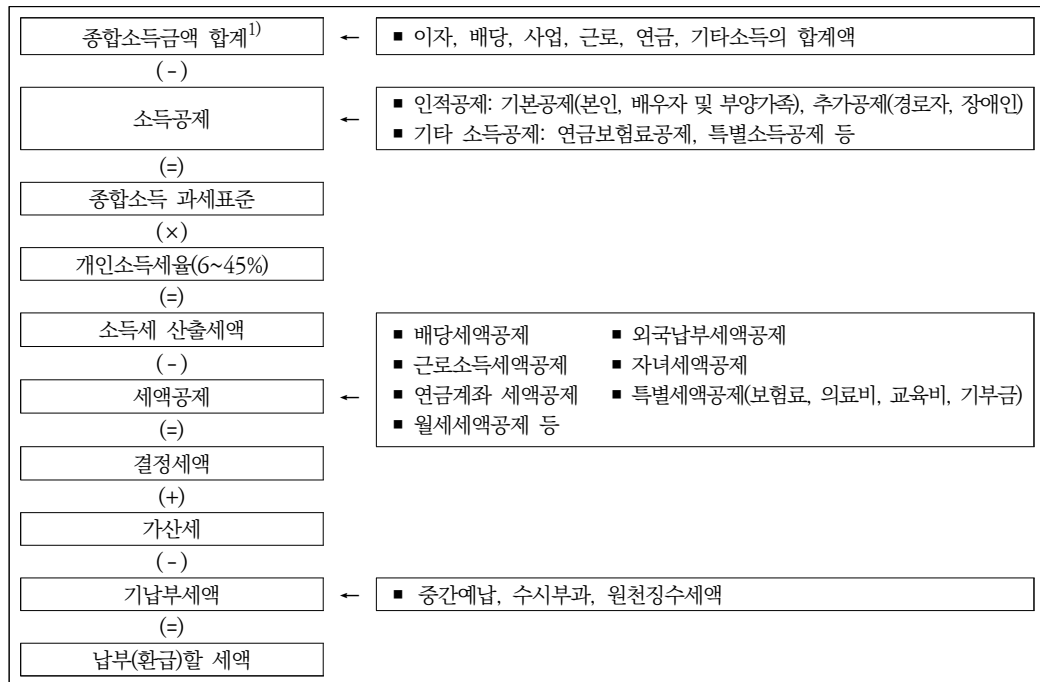
〈표 Ⅲ-1〉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

(단위: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주: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주: 1) 비과세 소득 제외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검색일자: 2023. 7. 24.

2. 소득세 과세단위 규정

가. 개요

- 우리나라는 자산소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합산 비분할과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이후 현재까지 모든 소득 유형에 대하여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³⁸⁾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조세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과세권자에 대응되는 당사자를 말함
 -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인 과세를 원칙으로 함³⁹⁾

- 다만 일부 세목에서 특정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세대별 또는 가구별 자산 및 소득을 고려하는 제도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개인이 아니라 1세대⁴⁰⁾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적용 대상 여부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약정이 있는 경우 부부재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약정재산제)

38)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조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그중 「소득세법」은 개인이 납세자가 되는 조세법임

39)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조세법이 법률관계로서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으로서의 과세물건이나 그 귀속이 권리·의무의 주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함.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거나 부모가 납세의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세채권채무가 성립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면 당연히 개별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40)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재산제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배우자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에만 부부 공유로 추정함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 우리나라는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의 부양가족 수 등 가구 상황에 따라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며,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 및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있음
-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납세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및 부양가족(이하 '기본공제대상자⁴¹⁾')의 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특별세액공제의 항목별 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으며(일정 금액을 한도로 함), 기본공제대상자⁴²⁾의 항목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⁴³⁾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액도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임
 - 교육비와 기부금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자)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액도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됨
- 근로 및 자녀 관련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음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4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4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자에 한함

43)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또는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및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므로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 부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하 본문에서는 과세단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인적공제(소득공제)와 근로 및 자녀 관련 세제에 대하여 살펴봄
 - 특별세액공제는 각 항목별로 정책적 목적이 상이하고 가구의 소비행태, 가구원의 특수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세단위 자체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높다고 보지 않음

1) 인적공제

- 우리나라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음
 - 기본공제는 납세자와 부양가족 등의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공제하는 것임
 -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등 특정한 상황의 경우 기본공제 외의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하는 것임
- 기본공제는 종합소득 납세의무자인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연 150만원⁴⁴⁾)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⁴⁵⁾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됨
 -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제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말함⁴⁶⁾

44) 1995년 이전까지는 공제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었으나 1996년부터는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함(한국조세연구원(2012a), p. 445). 1인당 공제액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는 100만원,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0만원을 적용하고 있음

45) 「소득세법」 제50조

-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이 취학·질병·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봄⁴⁷⁾
- 부양가족은 납세자 본인과 다음 중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⁴⁸⁾
 -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할 경우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임⁴⁹⁾
 - 70세 이상인 사람(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⁵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녀자 공제):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46)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47)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임

48)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49) 「소득세법」 제51조

50) 장애인증명서·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 2. 13.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 2. 1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

2)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⁵¹⁾

-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12월 저소득 가구의 생계보조와 저소득근로자의 근로 활동 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임⁵²⁾
-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이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⁵³⁾
 - (소득 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구) 구성원의 형태⁵⁴⁾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연간 총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됨⁵⁵⁾
 -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임
 -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

5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부터 100조의 13까지

52) 2008년 귀속분 소득신고를 바탕으로 2009년에 최초로 장려금이 지급된 이래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53) 조특법 제100조의 3 제5항 3호; 2018년까지는 부양가족 및 단독가구 요건(연령 또는 장애등급)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으며, 2016년까지는 1세대1주택(2013년 이전에는 무주택) 요건이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폐지됨

54)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구분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직계존속(70세 이상)은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1.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각각의 과세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

존비속,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형제자매는 제외), 부양자녀는 다음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⁵⁶⁾

- 거주자의 18세 미만 자녀⁵⁷⁾(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의 합계액⁵⁸⁾이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다만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외국인이거나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정해진 '근로장려금 산정표'⁵⁹⁾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2023년 기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를 지급함⁶⁰⁾

- 총 급여액이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소득(총 급여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임⁶¹⁾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임(2023년 기준)⁶²⁾
 -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400만원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900만원부터 점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57)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58) 재산의 합계액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전세금, 현금·예금·적금·부금 및 저축성보험,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2

6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4항

61) 비과세소득 및 직계존비속의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부동산권리 대여업 등 특정한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제5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6 제2항)

62)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가구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30만원이었음

- 진적으로 감소하여 2,200만원이 되면 0원으로 감소함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1,400만원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3,200만원이 되면 0원으로 감소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1,700만원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3,800만원이 되면 0원으로 감소함

[그림 Ⅲ-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3. 7. 1.

3) 자녀장려세제

□ 우리나라의 자녀 관련 세액공제 제도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63)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이하 '자녀장려금')가 있음

63)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산·입양자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201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 자녀장려금제도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에 도입됨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⁶⁴⁾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됨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가 8세 이상⁶⁵⁾인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15만원(2명 초과 시부터 1명당 30만원)⁶⁶⁾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⁶⁷⁾
-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함⁶⁸⁾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임⁶⁹⁾
-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가족구성요건,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가족 요건) 만 18세 미만(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⁷⁰⁾가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총 소득금액⁷¹⁾이 4천만원 미만

6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65)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함(2022. 12. 31. 개정).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요건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점차 확대됨에 따른 조치로, 2018. 1. 1.부터는 6세 이상, 2019. 1. 1.부터는 7세 이상, 2020. 1. 1.부터는 8세 이상을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함

66) 즉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인 경우 연 60만원을 공제함

67) 「소득세법」 제59조의 2

68)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 법 개정 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됨(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

70) 자녀장려금에 대한 부양자녀의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4 준용)

71)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 총소득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함

- (재산 요건) 가구원 총 재산⁷²⁾ 합계액이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외국인이거나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음⁷³⁾

□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정해진 '자녀장려금 산정표'⁷⁴⁾에 따라 산정하며,⁷⁵⁾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2023년 기준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의 50%를 지급함⁷⁶⁾

○ 총 급여액 등⁷⁷⁾의 구간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 2023년 기준)⁷⁸⁾을 지급함

-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인당 80만원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4천만원부터는 1인당 50만원을 적용함

72)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 총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7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 제2항 제1호

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9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4항 준용

77)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소득(총 급여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78) 2016년 이전에는 1인당 최대 50만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인당 최대 70만원

[그림 Ⅲ-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료: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검색일자: 2023. 7. 1.

3. 소득세 과세단위의 주요 변천 과정

가. 개정 연혁⁷⁹⁾

- 우리나라는 1949년⁸⁰⁾ 독자적으로 소득세법을 제정한 이후로 개인단위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⁸¹⁾
 -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산소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모두 폐지되었고, 이후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단위과세 원칙을 적용함

79) 한국세제사(2012), 한국조세연구원 참고하여 정리함

80) 「소득세법(1949. 7. 15. 법률 제33호)」

81) 1948년 이전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기 하에서는 가족단위 비분할 합산과세방식을 적용하였으나, 1949년 독자적으로 소득세법을 제정한 이후로 개인단위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함

- 1974년 세제개편으로 1975년부터 종합소득 과세를 도입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는데,⁸²⁾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세대) 단위 합산과세를 적용하였음(자산소득 합산과세)
 -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한 명이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⁸³⁾
 - 자산합산대상 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주된 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 이 가장 많은 자를 의미함⁸⁴⁾
 - 자산소득은 배당소득·이자소득·부동산소득을 말함

-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 비분할 합산과세는 1995년까지 유지되었으나 1996년 1월 1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⁸⁵⁾ 부부단위 합산과세로 변경됨⁸⁶⁾

82) 1960년대까지의 조세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고도성장에 따른 성과의 적절한 분배라는 소득 재분배 기증의 강화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세체계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를 위하여 토지에 한정되었던 부동산투기억제세 폐지, 자산소득에 대한 가족단위합산과세, 배당이자소득의 과세범위 확대 등을 실시하였음

83)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공포, 1975. 1. 1. 시행)」 제80조, 제81조

84)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1975. 1. 1. 시행)」 시행령 제131조)

1. 자산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 1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2 및 3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중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신고서에 기재가 없는 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서장이 정하는 자로 함

85)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함

86) 한국조세연구원(2012b), p. 126.;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방법을 세대단위에서 부부단위로 변경한 이유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형태와 실무적용상의 간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봄(김완석(2005), p. 31)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⁸⁷⁾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도입당시 당해 금융소득이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융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도로 규정하였음⁸⁸⁾
- 이후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에 대한 차별금지)⁸⁹⁾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을 결정하였으며,⁹⁰⁾ 이로 인하여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 시 폐지됨
-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별 소득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함
 - 2001년 이전까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였음
 - 2002년 12월 18일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의 당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인 경우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함
 - 이후 2013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도입 당시에는 개인별 과세단위 형태였으나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세대단위 비분할 합산과세로 개정되었음
-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에 대하여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산의 공시가격을

87)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공포·시행)」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0조

88)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공포, 1996.1.1. 시행)」 제14조 제3항 제4호

89)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90) 헌재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하도록 함⁹¹⁾

- 이 경우 1세대에 속하는 자 중 주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기타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 등의 소유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
- '1세대'에는 주된 소유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⁹²⁾

□ 그러나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2002년의 판결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단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함⁹³⁾에 따라 2008년 12월 26일자로 폐지되었음

□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합산과세제도가 존재했던 사례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세대별) 합산과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 2가지이며, 두 제도 모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폐지됨

- 두 판결에서 위헌의 주요 근거가 된 「헌법」 제36조 제1항이며,⁹⁴⁾ 특정한 법률 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 이러한 헌법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9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 일부개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92)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 일부개정)」 제2조 제8호; 동 법령 제1조의 2

93)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94)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동식(2012, 조세법과 헌법)은 적극적 측면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대한 침해로부터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규정한 것으로, 소극적 측면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

- 이는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한 부부나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절한 비례적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자산소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단위 과세주의를 적용하고 있음

나. 최근 논의 동향

-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개인단위과세를 유지해 오면서도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조세법학적 관점에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단위 주의(합산과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⁹⁵⁾
 - 조세정책학적 관점에서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장점이 있으나 조세수입의 감소,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단위과세 유지가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⁹⁶⁾
 - 또한 개별과세가 가구 간 세 부담 차이를 양산하거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음⁹⁷⁾
 - 한편 이분이승제가 가구 간 세 부담 형평성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복수세율 표 도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⁹⁸⁾

95) 김완석(2005)

96) 전병목(2007), 전병목·박명호·김완석(2008)

97) 전병목(2007)

98) 유재선(2005), 안종범·전승훈·김동준(2010)

- 2010년 이후로는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으나,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⁹⁹⁾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독신가구 대비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간 조세부담 차이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¹⁰⁰⁾
 - OECD에서 2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와 독신가구 간 조세부담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이 8.9%p 낮은 반
면 우리나라는 3.8%p로 나타남
 -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의 경우 10%p를 웃도는
세 부담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혼인율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혼인세액공제, 선택적 이분이승제 또는 N분N승제 검토, 자녀세액공제 인상, 소득
공제 상 자녀 범위(연령) 확대 등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¹⁰¹⁾
- 한편 과세단위 문제는 사회·정책적 대응측면보다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로 보아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선택적 부부합산
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¹⁰²⁾

99) 『중앙일보』, 「에 없든없든 세금 비슷한 韓, '유자녀-독신' 차이 OECD 하위권」, 2023. 6. 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175>, 검색일자: 2023. 7. 25.

100) OECD iLibrary, "Taxing Wages 2023,"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wages-2023_8c99fa4d-en(accessed July 25, 2023)

101) 임동원(2022a, 2022b)

102) 이동식(2020)

IV.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1. 개인단위과세

가. 일본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¹⁰³⁾

-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며, 거주자는 다시 비영주자와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인 영주자로 나누어짐
 - 거주자는 국내외를 원천으로 하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¹⁰⁴⁾
 - 소득세 과세대상은 포괄주의 소득 개념 하에 그 소득의 원천이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¹⁰⁵⁾ 10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 내용과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¹⁰⁶⁾

103) 일본 국세청, “No.1000 所得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000.htm>, 검색일자: 2023. 7. 10.

104) 비영주자의 과세범위는 거주자의 과세 범위에 준하지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지불되거나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105) 기타소득(잡소득, 雑所得)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등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말하므로 소득세는 개인이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음

106) 일본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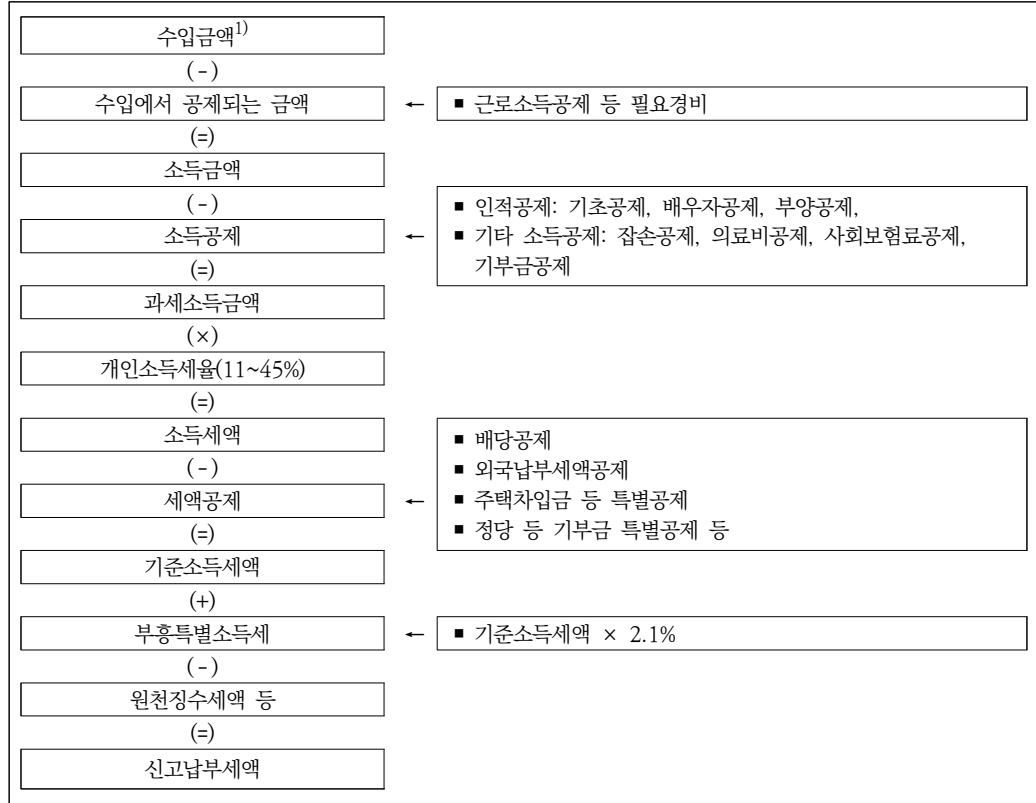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나 정책 목적 등에 의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¹⁰⁷⁾이 있으며, 이를 「소득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 과세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음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이 있음
 -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 과세를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의 세액계산은 [그림 IV-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단계의 세액계산 과정을 거쳐 납부세액을 산출함
-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 유형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¹⁰⁸⁾
 - 과세소득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크게 인적공제와 기타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¹⁰⁹⁾
 -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로 구성됨
 - 특별공제는 장애인공제, 과부공제, 한부모공제, 근로학생공제로 구성됨
 - 기타공제는 기부금공제, 잡손공제, 의료비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등이 있음
 - 소득세액은 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 분리과세 대상소득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금액에 최대 4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함¹¹⁰⁾

107) 일본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상 주요 비과세소득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출장 여비 전근 여비 및 통근수당, 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받는 특정 급여 유족 연금 등, 장애인 등의 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등이 있음

108) 일본 국세청, “No.2011 課税される所得と非課税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11.htm>, 검색일자: 2023. 7. 10.

109) 참고로 일본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잡손공제, 기부금공제, 기초공제 3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일본 재무부, “人的控除の概要,”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3.htm, 검색일자: 2023. 7. 10.; 잡손공제, 의료비공제, 사회보험료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등 기금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 공제, 기부금공제, 장애인공제, 과부공제, 혼자공제, 근로학생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

[그림 IV-1] 일본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주: 1) 비과세 소득 제외
 자료: 일본 국세청, “所得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1.htm, 검색일자: 2023. 7. 10.

110) <일본 개인소득세율(과세연도 2022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엔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엔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엔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엔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엔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엔 초과	45%	4,796,000엔

주: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에 대해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부과됨
 자료: 일본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소득세액을 산출함
 -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배당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등이 있음
 - 한편 부흥특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소득세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 2.1%를 적용하여 산출함¹¹¹⁾
- 신고납부세액은 기준소득세액에 부흥특별소득세액을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2) 소득세 과세단위

가) 개요

- 일본의 현행 과세대상의 귀속주체가 되는 인적단위를 의미하는 소득세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별산제 하에 개인단위로 담세력을 파악하여 과세하고 있음
 -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계산 시 거주자에게 소득세의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¹²⁾
 - 거주자는 거주지가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을 말함¹¹³⁾
 - 일본에서는 현재 개인단위 과세가 원칙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소득세제 도입당시부터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단위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¹¹⁴⁾
 -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세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대단위 과세체제로 유지되다가 샤우프 권고¹¹⁵⁾에 의해 개인단위 과세로 이행하였음

111) 2013년부터 2037년까지는 부흥특별소득세를 매년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112) 일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113) 일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114) 이하 3) 주요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에서 자세히 후술 하기로 함

- 한편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가족 내 소득 분할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다가 폐지한 바 있음

□ 일본의 부부재산제는 「민법」에서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및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¹¹⁶⁾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 일본은 소득세 과세 시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가구의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조치를 두고 있음
 - 이는 각 가구의 가족 구성원의 수, 가족의 소득 수준, 나이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조치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가 있음¹¹⁷⁾
 - 이와 관련된 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이하에서 '기본 인적공제'라 칭함)가 있음¹¹⁸⁾
 - 이하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일본의 소득공제제도 중 기본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함

(1) 기초공제

□ 기초공제는 기본적인 인적공제로,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에 따라 2023년 기준

115) 샤우프 권고(シャウプ勧告)는 일본 조세법의 기초가 되는 세제개혁에 관한 보고서로 연합국군 최고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1949년 5월 10일 일본에 온 칼 샤우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5일 발표됨(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information/qanda015.html, 검색일자: 2023. 5. 8.)

116) 일본 「민법」 제762조

117) 일본은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사회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가 운용되고 있음

118) 인적공제란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납세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함

최대 48만엔을 공제받을 수 있음¹¹⁹⁾

- 납세자의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기초공제 금액을 차등하여 적용 중임¹²⁰⁾

〈표 IV-1〉 일본의 총소득금액별 기초공제 금액

(단위: 엔)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공제액
2,400만 이하	48만
2,400만 초과 2,450만 이하	32만
2,450만 초과 2,500만 이하	16만
2,500만 초과	0

자료: 일본 「소득세법」 제86조

(2) 배우자공제

-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배우자공제라 함¹²¹⁾

- 공제금액은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규모 및 공제대상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2023년 기준 최대 48만엔을 공제받을 수 있음¹²²⁾
 - 공제대상 배우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중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의 배우자를 말함
 - 노인 공제대상 배우자란 공제대상 배우자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를 말함
- 공제대상 배우자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

119) 일본 「소득세법」 제86조

120) 참고로 2019년 이전의 기초공제의 금액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8만엔이었음

121) 일본 국세청, “No.1191 配偶者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1.htm>, 검색일자: 2023. 5. 2.

122)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이외에 장애인 공제가 있음

-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일 것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¹²³⁾
- 연 총소득금액¹²⁴⁾이 48만엔 이하(급여만 있는 경우는 급여수입이 103만엔 이하)
- 청색신고자의 사업전종자(事業專従者)로서 당해 연도를 통하여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전종자가 아닐 것¹²⁵⁾

〈표 IV-2〉 일본의 공제대상 유형별 배우자공제 금액

(단위: 엔)

공제대상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공제액	
	일반 공제대상 배우자 ¹⁾	노인 공제대상 배우자 ²⁾
900만 이하	38만	48만
900만 초과 950만 이하	26만	32만
950만 초과 1,000만 이하	13만	16만

주: 1) 공제대상 배우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중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의 배우자를 말함

2) 공제대상 배우자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를 말함

자료: 일본 국세청, “No.1182 老年寄りを扶養している人が受けられる所得税の特例,”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2.htm>, 검색일자: 2023. 5. 2.

123) 근무, 학업, 요양 등으로 인하여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봄(일본 국세청, “No.1180 扶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_qa.htm, 검색일자: 2023. 8. 10.)

124) 총소득금액은 손실의 이월공제를 적용한 손익통산 후의 다음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1.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단기양도소득 및 잡소득의 합계 금액

2. 종합과세되는 장기양도소득과 일시소득 합계액의 2분의 1(자료: 大和市, “総所得金額、総所得金額等、合計所得金額の違いについて,” <http://www.city.yamato.lg.jp/web/shizei/shizei01211371.html>, 검색일자: 2023. 5. 2.)

125) 일본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청색신고서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는 바, 이 납세자를 청색신고자라고 함. 이 청색신고자 이외의 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작성하는 흰색신고서로 신고한다는 의미에서 백색신고자라고 칭함; 사업전종자(事業專従者)란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15세 이상(12월 31일 기준)의 친족으로 연간 6개월 이상 납세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납세자가 사업전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되지 않으나 청색신고자의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일본 국세청, “No.2075 青色事業專従者給与と事業專従者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75.htm>, 검색일자: 2023. 9. 27.)

(3) 배우자 특별공제

- 배우자 특별공제는 배우자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당해 연도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일 것
 -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
 -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일 것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연 총소득금액이 4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일 것
 - 청색신고자의 사업 전종자로서 당해 연도를 통하여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 전종자가 아닐 것
 - 배우자가 배우자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

- 배우자 특별공제액은 2023년 기준 최대 38만엔으로,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의 당해연도 총소득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부부간에 서로 받을 수는 없음¹²⁶⁾

〈표 IV-3〉 일본의 총소득금액 수준별 배우자 특별공제 금액

(단위: 엔)

		공제대상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900만 이하	900만 초과 950만 이하	950만 초과 1,000만 이하
배우자 총소득금액	48만 초과 95만 이하	38만	26만	13만
	95만 초과 100만 이하	36만	24만	12만
	100만 초과 105만 이하	31만	21만	11만
	105만 초과 110만 이하	26만	18만	9만
	110만 초과 115만 이하	21만	14만	7만
	115만 초과 120만 이하	16만	11만	6만
	120만 초과 125만 이하	11만	8만	4만
	125만 초과 130만 이하	6만	4만	2만
	130만 초과 133만 이하	3만	2만	1만

자료: 일본 국세청, “No.1195 配偶者特別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검색일자: 2023. 8. 10.

126) 일본 국세청, “No.1195 配偶者特別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검색일자: 2023. 5. 3.

(4) 부양공제¹²⁷⁾

- 일본은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부양친족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양공제라고 함¹²⁸⁾
 - 자녀의 부양을 담세력의 감소 요인으로 취급하여 부양친족 수 등의 세대구성에 따라 세금부담 능력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부양공제라는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공제대상 부양친족이란 부양친족 중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를 말함
 - 특정부양친족이란 공제대상 부양친족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를 말함

- 부양친족이란 당해 연도 12월 31일¹²⁹⁾ 현재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함¹³⁰⁾
 -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 등 이내의 혈족 및 3촌 등 이내의 인족을 말함)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이나 시정촌장으로부터 양호를 위탁받은 노인을 말함
 - 「민법」 제275조에 따른 친족은 6촌 등 이내의 혈족,¹³¹⁾ 배우자, 3촌 등 이내의 인족¹³²⁾을 말함¹³³⁾

127) 일본 「소득세법」 제84조

128) 일본 국세청, “No.1180 扶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23. 5. 3.

129)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국(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시 사망 또는 출국 시점을 말함

130) 참고로, 2023년 이후부터 국외거주친족 중 유학생이나 장애인에 대한 송금 서류에 있어서 소득요건금액(현행 48만엔) 이상의 송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은 부양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음

131) 혈족(血族)은 혈연으로 이어진(연결된) 관계이며 양자도 포함함

132) 인족(姻族)은 결혼을 원인으로 연결되는 상대방 가족으로, 본인 배우자의 혈족 또는 본인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133) 일본 「소득세법」 제157조,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5조; 일본 「민법」 제725조의 친족의 범위와 동일함

- 사실상 동거인의 경우에는 민법이나 세법에 따른 친족으로 보지 않음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¹³⁴⁾
- 연 총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급여만 있는 경우는 급여수입이 103만엔 이하)¹³⁵⁾
 - 참고로 <표 IV-4>에서 부양친족 등의 총소득금액 요건 개정 전·후를 비교함
- 청색신고자의 사업 전종자로서 당해 연도를 통하여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 전종자가 아닐 것

<표 IV-4> 일본의 부양친족 등의 총소득금액 요건 개정 전·후 비교

(단위: 엔)

부양친족 등의 구분	총소득금액 요건	
	2019년 이후	2019년 이전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친족	48만 이하	38만 이하
원천공제대상 배우자 ¹⁾	95만 이하	85만 이하
배우자 특별공제 대상 배우자	48만 초과 133만 이하	38만 초과 123만 이하
근로학생 ²⁾	75만 이하	65만 이하

주: 1) 원천공제대상 배우자란 총소득금액이 900만엔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중 총소득금액이 95만엔 이하인 자를 말함.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2) 납세자 본인이 근로학생일 때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27만엔임

자료: 일본 국세청, “扶養親族等の合計所得金額要件等,” <https://www.nta.go.jp/users/gensen/haigusya/henkou.htm>, 검색일자: 2023. 5. 24.

- 부양공제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양친족의 나이 및 동거 유무에 따라 공제액이 달리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2023년 기준 공제대상 일반 부양친족은 38만엔, 특정 부양친족은 63만엔임
- 참고로 부양자녀에 대한 부양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축소되어 16세 미만 자녀

134) 일본 「소득세법 기본통달」 2-47; 일본 국세청, “「生計を一にしているもの」の意義,” <https://www.nta.go.jp/law/joho-zeikaishaku/shotoku/joto-sanrin/091116/04.htm>, 검색일자: 2023. 5. 25.

135) 2019년 개정 전에는 38만엔 이하를 적용함(일본 국세청, “各種控除等を受けるための扶養親族等の合計所得金額要件等の改正(令和2年分以降),” <https://www.nta.go.jp/users/gensen/haigusya/henkou.htm>, 검색일자: 2023. 5. 24.)

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은 아동수당제도로 일원화됨

- 연령이 16세 미만인 부양친족에 대해서는 부양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6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5만엔의 추가 인적공제도 폐지함

〈표 IV-5〉 일본의 공제대상별 부양공제 금액

(단위: 엔)

구분		공제액
일반 공제대상 부양친족 ¹⁾		38만
특정 공제대상 부양친족 ²⁾		63만
노인 부양친족 ³⁾	동거노부모 등 이외의 자	48만
	동거노부모 등 ⁴⁾	58만

주: 1) 부양친족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를 말함
 2) 공제대상 부양친족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를 말함
 3) 공제대상 부양친족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의 자를 말함
 4) 노인 부양친족 중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상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말함
 자료: 일본 국세청, "No.1180 扶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23. 5. 2.

(5) 아동·특별장애인 등이 있는 자 등의 소득금액 조정공제

- 소득금액 조정공제도는 2018년 세제개정에 의해 급여소득 공제액 축소에 따른 육아가구 등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함¹³⁶⁾
 - 소득금액 조정공제란 연 급여수입이 850만엔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요건 충족 시 일정 금액을 급여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¹³⁷⁾
 - 적용대상은 당해연도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850만엔을 초과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함
 - 납세자 본인이 특별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을 가진 자

136)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3의3

137) 이 외에도 급여소득과 연금소득 모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금액 조정공제가 있음

- 특별장애인인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자
- 소득금액 조정공제액은 850만엔을 초과하는 급여 등의 수입금액(최대 1,000만엔)의 10% 임
- 동 공제제도는 부양공제와 달리 세대 내 다른 소득자의 23세 미만 부양친족 등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¹³⁸⁾
 -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급여소득이 850만엔을 초과하고, 부부 사이에 1명의 23세 미만의 부양친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3) 주요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가) 주요 변천과정¹³⁹⁾

- 일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 과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득세 과세단위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일본에서의 과세단위에 대한 변천과정 및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최근의 동향을 정리함
- 일본의 1887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호주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음¹⁴⁰⁾
- 1950년에는 샤우프 권고에 의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족단위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는 개인단위 과세가 채택되었음
 - 샤우프 권고는 개인단위 과세를 도입하도록 한 이유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함
 - 누진세율 하에서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 부

138) 일본 국세청, “第41条の3の3 所得金額調整控除 関係,” https://www.nta.go.jp/law/tsutatsu/kobetsu/shotoku/sochiho/801226/sinkoku/57/41/03_2.htm, 검색일자: 2023. 5. 8.

139) 船橋充, 『所得税制の課税単位に関する考察』, 2014, p. 25.

140) 오윤, 『세법원론』, 한국학술정보, 2018, pp. 458~459.;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126~127.

담의 불공평한 분배라 할 수 있음

- 세 부담의 증가는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가 됨
-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동일한 세대인지 또는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공평하지 못함
-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세대의 세액을 세대구성원에게 안분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임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동거친족의 소득합산을 폐지하고 각 납세자가 독립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의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권고하였음
- 특히 1947년 「민법」의 친족편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가족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가족단위 과세는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음¹⁴¹⁾
- 다만 개인단위과세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소득을 창출하는 자가 주로 가주에 한정된 경우 많아 과세단위로 개인단위를 채택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었음¹⁴²⁾

- 1988년 세액계산의 복잡함으로 인한 세제간소화를 목적으로 자산소득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여 자산소득에 대해서 기존의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하였음¹⁴³⁾
-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은 1957년부터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특례로서 다시 부활한 바 있음

나) 최근 논의동향

- 일본 정부의 세제조사사회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을 수 차례 검토한 바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의 개인단위 과세를 유지하면서 공제제도의 신설 및 개정

141) 김완석(2005), p. 59.

142) 林宏昭, 『どう臨む、財政危機下の税制改革』, 清文社, 2002, pp. 108~109.; 船橋充, 『所得税課税単位に関する考察』, 租税資料館, 2014 재인용

143) 참고로 재산과세의 경우 토지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1991년 도입한 지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였는데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을 통하여 가구 구성원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주로 개정이 이루어짐¹⁴⁴⁾

- 1986년 2월 세제조사회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에 변경에 대한 논의 배경을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음¹⁴⁵⁾
 - 남편의 소득 가득 활동에 대한 전업주부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분이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 세 부담의 불균형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 가능한 기준소득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2005년 6월에는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세제조사회에 의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음
 - 첫째, 일본의 현행 개인단위과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담세력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배우자공제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이분이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육아 지원 측면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세제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임
- 일본에서는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가구에 유리한 N분N승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도 논의 중임
 - N분N승제란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 과세단위로, 아동 등 부양가족(N)이 많을수록 세대의 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되는 과세체계를 말함
 - 다만 일본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세제상 혜택이 집중되는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¹⁴⁶⁾

144) 일본 세제조사회 기초문제소위원회, 『個人所得課税に関する論点整理』, 2005, pp. 7~10.

145) 일본 세제조사회 전문소위원회, 「課税単位に関する専門小委員会報告」, 『ファイナンス』 22(1), 1986, p. 93.

146) 일본 정부, “鈴木財務大臣兼内閣府特命担当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https://www.fsa.go.jp/>

- 첫째, 소득세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개인단위 과세체계를 세대단위로 변경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소득세 전체 납세자의 약 60%가 현행 소득세 최저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어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은 한정적으로, 특히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일본 아사히 언론은 ‘N분N승제’ 도입 시 일본 재무성이 배우자공제나 부양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세율로 도입했을 경우 4조~5조엔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시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음¹⁴⁷⁾

나. 영국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¹⁴⁸⁾

- 영국은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각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산출함¹⁴⁹⁾
 -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영국 거주자인 개인 또는 신탁(trust) 임
 -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신탁으로서 영국 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함
 - 과세기간(과세연도)은 직전연도 4월 6일부터 당해연도 4월 5일까지로 함
 -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저축이자, 배당소득 등),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함
 -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열거주의(source doctrine)를 취하고 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common/conference/minister/2023a/20230203-1.html, 검색일자: 2023. 5. 22.

147) 일본 아사히뉴스, “「N分N乗方式」4~5兆円収収減 財務省が試算,” https://news.tv-asahi.co.jp/news_economy/articles/000288107.html, 검색일자: 2023. 7. 10.

1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254~258.

1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39.; pp. 247~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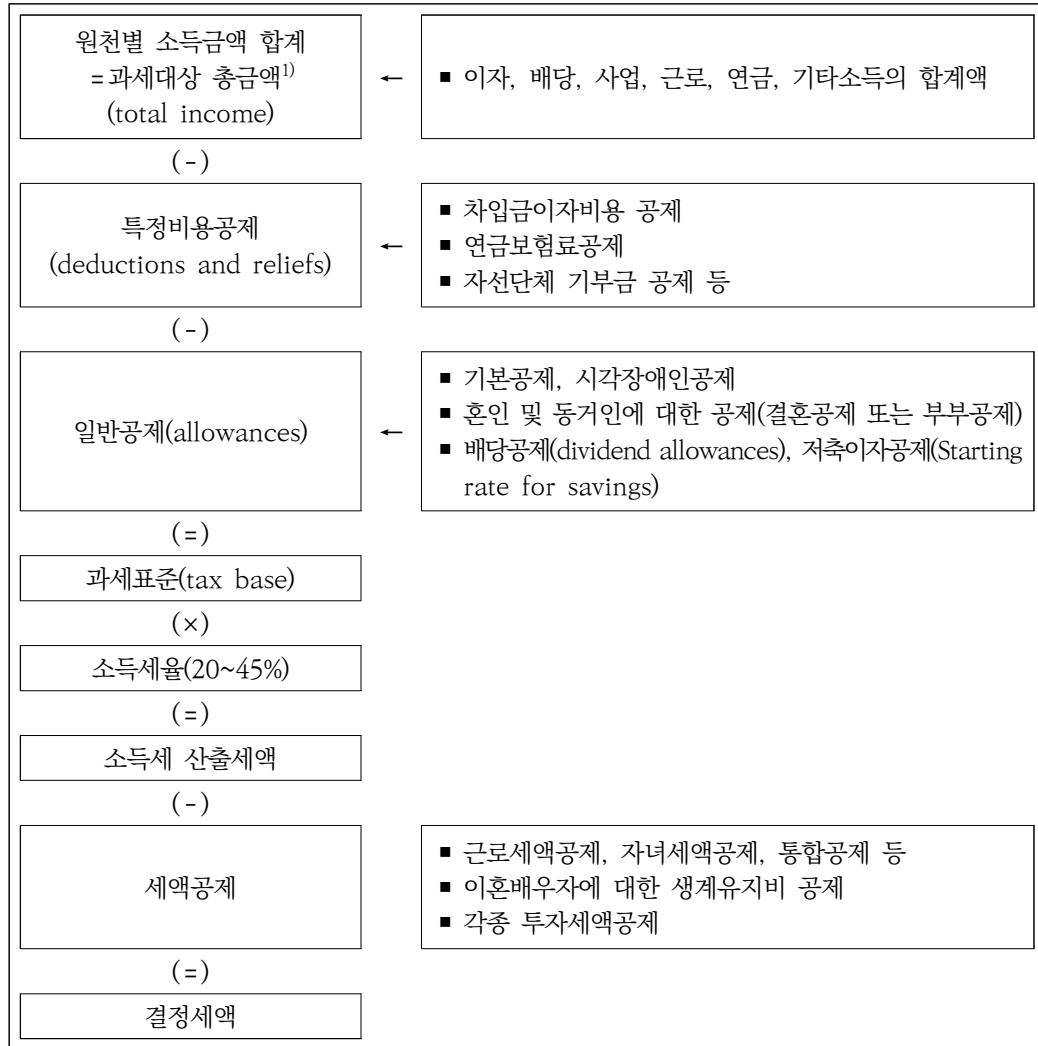
- 납부할 소득세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산출됨
 - 각 원천별 수입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총소득 금액(total income)을 산출함
 - 과세대상 총소득금액에서 해당되는 특정비용공제(deductions and reliefs)와 각종 소득공제(allowance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특정비용 공제에는 대표적으로 특정용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포함됨
 - 일반 공제에는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시각장애인가공제가 있으며, 결혼한 부부(동성파트너)의 경우 결혼공제 또는 부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배당소득과 저축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일정금액을 공제함¹⁵⁰⁾
 - 과세표준에서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tax credits)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대표적인 환급형 세액공제에는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으며,¹⁵¹⁾ 그 외 비환급형 세액공제에는 이혼배우자 생계유지비 공제,¹⁵²⁾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이 있음

150) 배당공제(dividend allowanc) 1,000파운드와 저축수당(Starting rate for savings) 5,000파운드가 있음(2023/24 기준)

151) 2017년 4월 이후로는 근로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다른 저소득층 지원세제와 통합하여 '통합공제(UC)'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

152) 배우자 중 한 명이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 한함(영국 국세청, "Income tax relief on maintenance payments," <https://www.gov.uk/income-tax-reliefs>(accessed August 29, 2023))

[그림 IV-2] 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주: 1) 비과세소득 제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54 <표 V-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
 - 기본세율(Basic rate), 고세율(Higher rate), 추가세율(Additional rate) 구간으로 구분하며,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20%, 40%, 45%임(2023/24 기준)¹⁵³⁾
 - 1만 2,570파운드 이하: 0%
 - 1만 2,571파운드 이상 5만 270파운드 이하: 20%(기본세율)
 - 5만 271파운드 이상 12만 5,140파운드 이하: 40%(고세율)
 - 12만 5,140파운드 초과: 45%
 - 다만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구간을 판단하되, 별도의 세율 체계를 적용함
 -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이 각각 기본세율, 고세율, 추가세율 구간에 해당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7.5%, 33.75%, 39.35%의 세율을 적용함¹⁵⁴⁾

153) 다만 스코틀랜드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도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2023/24 기준) (자료: 영국 국세청, "Income Tax in Scotland," <https://www.gov.uk/scottish-income-tax> (accessed July 10, 2023))

(단위: 파운드(GBP), %)

구분	과세소득	세율
Starter rate	12,570 초과 14,732 이하	19
Basic rate	14,733 이상 25,688 이하	20
Intermediate rate	25,689 이상 43,662 이하	21
Higher rate	43,663 이상 125,140 이하	41
Top rate	125,140 초과	46

; 영국의 과세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차기연도 3월 31일까지로, 2023/24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를 의미함. 이하 동일

154) 영국 국세청, "Tax on Dividend," <https://www.gov.uk/tax-on-dividends>(accessed July 26, 2023)

〈표 IV-6〉 영국의 종합소득세율(2023/24)

(단위: GBP(파운드), %)

세율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¹⁾ (taxable income)	종합소득세율
기본공제	12,570 이하	0
기본세율(Basic rate)	12,571 이상 50,270 이하	20
고세율(Higher rate)	50,271 이상 125,140 ²⁾ 이하	40
추가세율(Additional rate)	125,140 ²⁾ 초과	45

주: 1)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만 2,570파운드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공제 금액은 2021/22부터 2027/28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2) 기본공제는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감소하여 12만 5,14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영(0)이 됨

자료: 영국 「Finance Act 2023」 제5조; 「Finance Act 2021」 제5조; 영국 국세청,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3. 7. 10.

2) 소득세 과세단위 개요

□ 영국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는 개인이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음¹⁵⁵⁾

○ 배우자 또는 법정파트너(civil partners)¹⁵⁶⁾의 경우에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소득공제도 개인별로 적용함

○ 다만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공동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소득 및 공제금액을 배분함

- 원칙상 50:50의 균등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 및 실제 배분 비율을 과세관청에 통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음

1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45.

156) 법정파트너(civil partners)는 영국 법률상 인정된 동성 간 혼인관계를 의미함. 영국은 2004년 제정된 「Civil Partnership Act 2004」에 따라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영국세법에서도 이에 따라 통상의 부부와 같은 세법상 지위를 부여함(Wolters Kluwer, 2015, p. 33)

- 영국에서는 부부재산제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으며, 부부재산 관계는 개별적인 법률 규정과 판례¹⁵⁷⁾에 의해 형성됨¹⁵⁸⁾
- 영국은 19세기 후반 「Married Women's Property Act 1870 and 1882」 제·개정을 통하여 결혼한 배우자가 각자 독립된 주체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부별산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봄¹⁵⁹⁾

3)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 영국은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각종 공제 또한 개인별로 적용함
 - 다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로 배우자 간 양도 가능한 공제(결혼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¹⁶⁰⁾ 가구별 소득 및 구성원 형태에 따라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가구 형태에 따른 세액 공제(tax credit)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세액공제(WTC), 자녀세액공제(CTC)가 있으며, 2017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통합공제(UC)로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음
 - 이는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형태의 소득지원제도임

가)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성별 또는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총소득에서 일괄적으로 1만 2,570파운드(2022/23 기준)를 공제하며,¹⁶¹⁾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157) 영국은 우리나라 「민법」과 달리 관습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Common Law」이 개별 법체계 적용 시 중요한 역할을 함

158) 이동식(2018), p. 102.

159) 이창현(2016), p. 9.

160) 결혼공제(부부 중 한 명이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부부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액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작동함

161) 기본공제 금액은 2021/22부터 2025/26까지 1만 2,570파운드로 동결됨(영국 「재정법(Finance Act 2021)」 제5조)

소득에 대해서는 2파운드당 1파운드의 비율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함¹⁶²⁾

- 즉 소득이 12만 5,14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인적공제는 0이 됨
- 시각장애인¹⁶³⁾에 대해서는 2,870파운드(2023/24 기준)의 시각장애인가공제(Blind person's allowance)를 추가 공제하며, 해당 납세자의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제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전액 양도할 수 있음¹⁶⁴⁾
 - 공제금액을 양도받는 배우자 등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 납세자 본인과 동거 중인 관계여야 함

나) 결혼공제(Marriage allowance 또는 transferable tax allowance)¹⁶⁵⁾

- 결혼한 부부 또는 동성파트너 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기본공제금액에 미달하는 자의 기본공제금액의 10%를 배우자(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음¹⁶⁶⁾
 - 결혼 공제(Marriage allowance)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결혼(동성파트너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¹⁶⁷⁾

162) 영국 국세청,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accessed June 23, 2023)

163) 지역 의회에 맹인 또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관련 증명서가 있는 경우를 말함

164) 영국 국세청, "Blind Person's Allowance,"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what-youll-get>(accessed June 23, 2023)

165) 영국 국세청, "Marriage Allowance," <https://www.gov.uk/marriage-allowance>(accessed May 17, 2023); 영국 국세청, "Apply for Marriage Allowance," <https://www.gov.uk/apply-marriage-allowance>(accessed May 17, 2023)

166) Bloomberg tax, "Country Guides, United Kingdom, 6. Personal Tax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591154216>(accessed May 17, 2023)

167) 결혼공제 제도는 2013년 9월 당시 영국 총리였던 David Cameron가 기혼 부부와 동성 파트너를 위한 양도가능 세금 공제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부 쌍방이 모두 고세율 납세자가 아닌 경우(즉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개인 기본공제금액의 10%를 배우자(동성파트너)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제도 발표 당시에는 이전 가능한 기본공제액을 1,000파운드로 발표하였으나 2015년 3월 예산에서 2015/16 과세연도의 개인 수당이 1만 500파운드가 됨에 따라 1,050파운드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기본공제금액의 10%로 설정되었음. '양도 가능한 공제(transferable tax allowance for married couples and civil partners)'라고도 하며, 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MCA)와는 다른 제도임

- 결혼공제 신청 시 1,260파운드(2023/24 기준)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며, 이를 통해 과세연도(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마다 세금을 최대 252파운드까지 절감할 수 있음
 - 결혼공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부부 중 소득이 적고 소득이 1만 2,570파운드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 등이 고세율 또는 추가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야 함
 - 즉 공제를 받기 전 소득이 기본세율 구간(1만 2,571파운드 이상 5만 270파운드 미만(스코틀랜드의 경우 4만 3,662파운드)에 속해야 함
- (예시) 결혼한 부부 일방(A)의 소득이 1만 1,500파운드이고 그 배우자(B)의 소득은 2만파운드인 경우¹⁶⁸⁾
 - 기본공제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 A는 소득이 기본공제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0이며, 배우자 B의 과세표준은 $20,000 - 12,570 = 7,430$ 파운드로 계산됨
 - 그러나 결혼공제로서 A는 기본공제 1만 2,570파운드 중 1,260파운드까지 배우자 B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 기본공제는 양도한 1,260파운드를 제외한 1만 1,310파운드가 되어 과세표준은 190파운드,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양도받은 1,260파운드를 더한 1만 3,830파운드가 되어 과세표준은 6,170파운드가 됨
 - 즉 일방이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일방의 과세대상 금액은 증가할 수 있지만 부부의 전체 과세대상 금액은 줄어들

168) 영국 국세청, "Marriage Allowance," <https://www.gov.uk/marriage-allowance>(accessed July 1, 2023)

〈표 IV-7〉 영국의 결혼공제(양도 가능한 기본공제) 적용 사례

(단위: 파운드)

	(1) 기본공제 양도하지 않는 경우			(2) 기본공제 양도하는 경우(A→B)			(1) - (2)		
	A	B	A+B	A	B	A+B	A	B	A+B
과세표준	11,500	20,000	31,500	11,500	20,000	31,500	-	-	-
기본공제	12,570	12,570	25,140	11,310	13,830	25,140	△1,260	1,260	-
과세대상	0	7,430	7,430	190	6,170	6,360	190	△1,260	△1,070
세율	20%			20%			20%		
소득세액	0	1,486	1,486	38	1,234	1,272	38	△252	△214

주: 영국 국세청, "Marriage Allowance," <https://www.gov.uk/marriage-allowance>(accessed July 1, 2023)

자료: 본문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결혼공제는 온라인, 자체평가신고서(Self Assessment)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 간 소급 청구 가능함¹⁶⁹⁾
- 즉 2023/24 과세연도에 대한 결혼공제는 2028년 4월 5일까지 해야 함
 - 과세연도 개시 전에 결혼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적용 받으며, 과세연도 개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에 한하여만 적용함
 -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공제를 취소해야 하며,¹⁷⁰⁾ 취소 신청 전까지는 매 과세연도마다 배우자에게 결혼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이전됨¹⁷¹⁾
 -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결혼(파트너) 관계가 종료된 경우
 - 소득이 변동된(증가한) 경우
 - 더 이상 결혼공제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169) Finance Act 2018 section 6; 2023/24 과세연도 기준으로 2018년 4월 5일 이후 과세연도의 결혼 공제를 소급 청구 가능

170) 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당사자가 취소해야 함

171) 영국 국세청, "Marriage Allowance-If your circumstances change," <https://www.gov.uk/marriage-allowance/if-your-circumstances-change>(accessed May 17, 2023)

다) 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MCA)¹⁷²⁾

- 부부공제는 2000년 4월 폐지되었으나 결혼한 부부 또는 동성파트너 관계에 있고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2023/24 과세연도 기준 89세 이상)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부부공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자체평가신고서(Self Assessment) 작성·제출 시¹⁷³⁾ 부부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한 요양,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 군대·감옥, 훈련·교육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 부부공제 금액 계산 시 2005년 12월 5일 이전에 결혼한 경우 남편의 소득을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결혼한 경우 부부 중 높은 소득자의 소득을 사용함

- 부부공제액은 영국 국세청 사이트의 ‘Married Couple’s Allowance calculator’를 통하여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으며, 2023/24 과세연도 기준 연간 최소 401파운드 최대 1,037.5파운드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음
 - 공제액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됨¹⁷⁴⁾
 - 부부 중 한 명이 1935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 여부¹⁷⁵⁾
 - 부부 중 고소득자의 출생연월일
 - 2005년 4월 6일 이전의 결혼 여부
 - (2005년 4월 6일 이후 결혼한 경우 부부 중 고소득자의) 연간소득금액

172) 영국 국세청, “Married Couple’s Allowance,” <https://www.gov.uk/married-couples-allowance>(accessed May 17, 2023)

173)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의 경우 국세청에 직접 문의

174) 영국 국세청, “Calculate your Married Couple’s Allowance,” <https://www.gov.uk/calculate-married-couples-allowance/y>(accessed May 17, 2023)

175) 본인과 배우자 모두 1935년 4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면 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가 아닌 결혼공제(Marriage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음

- 연금 납입여부, 퇴직연금계약에 따른 총 기여금 예상액
 - 세금공제 적용받는 연금 납입예정금액
 - 전체 과세연도 동안 Gift Aid를 통한 자선단체 기부 예상금액¹⁷⁶⁾
 - 과세연도 중에 결혼(동성파트너 등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산정함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별거하는 경우 공제는 과세연도가 말까지 지속됨
 - 결혼공제와 부부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부가 모두 193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결혼공제 대신 부부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함
- 과세연도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부공제를 상대방에게 공유하거나 이전할 수 있음
-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과세대상금액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부부공제 금액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음¹⁷⁷⁾

라) 부양가족 관련 제도

- 영국의 부양가족과 관련한 세액공제(tax credit) 항목으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이하 'CTC'),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 이하 'WTC')가 있음
- 다만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기존의 WTC, CTC를 포함하여 각종 공제 및 수당을 통합공제(Universal Credit, 이하 'UC')로 대체해가고 있음¹⁷⁸⁾

176) 1938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로서 Gift Aid를 통하여 영국 자선 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공제액이 높아질 수 있음

177) 영국 국세청, "Further information," <https://www.gov.uk/married-couples-allowance/further-information>(accessed May 17, 2023)

178) 'UC'는 2013년부터 4월부터 일부 공제·수당 영역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자녀세액 공제(CTC), 근로세액공제(WTC) 뿐만 아니라 주거혜택(Housing Benefit), 소득지원(Income Support), 소득기반 구직자수당(JSA;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 관련 고용 지원수당(ESA;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까지 포괄하며, 2029년 까지 점진적으로 통합·대체할 계획에 있음(자료: 영국 국세청, "Universal Credit," <https://www.gov.uk/universal-credit>(accessed June 27, 2023))

- 이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에 대한 별도의 공제제도 또는 기본 생계유지비와 관련된 보편적 지원책은 확인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소득지원제도(means-tested benefit)로서 UC를 운용하고 있음
 - 특정 장애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자¹⁷⁹⁾를 위하여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간병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간병인 공제(Carer's Allowance/credit)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 CTC와 WTC는 영국은 2003년 부모의 복직 지원, 아동 빈곤 감소, 가족 재정 지원 증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로,¹⁸⁰⁾ 1주 또는 월(4주) 단위로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 UC 도입에 따라 기존의 세액공제들이 통합·대체되어가고 있는 바, 2017년 4월 6일 이후로는 WTC 또는 CTC를 신규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CTC 또는 WTC를 받고 있었던 자에게만 허용됨
 - 2017년 4월 6일 이후 WTC 신청은 기존에 CTC를 받고 있던 자, CTC 신청은 기존에 WTC를 받고 있던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대신 UC를 신청할 수 있음¹⁸¹⁾
- UC는 일반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특정한 경우 16~17세도 가능)이고 주 연금연령(State Pension age) 미만인 자로서 현금성자산·저축 및 투자액이 1만 6,000파운드 미만인 경우 청구할 수 있음¹⁸²⁾

179)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 관련 수당(예: Attendance allowance,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구 장애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 등을 받고 있는 자

180) 영국 국세청, "Background and Definitions -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Provisional awards - April 2022(Updated 22 November 20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2/background-and-definition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2>(accessed January 20, 2023)

181) 영국 국세청, "Universal Credit," <https://www.gov.uk/universal-credit/eligibility>(accessed June 27, 2023)

182) 영국 국세청, "Universal Credit," <https://www.gov.uk/universal-credit/eligibility>(accessed June 27, 2023)

- UC 지급액은 소득, 근로 여부 및 근로 시간, 가족 상황(결혼 여부, 자녀 유무), 연령, 장애여부, 주거혜택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 현금성자산·저축 및 투자액이 6,000파운드 이상이거나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UC 지급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기존에 CTC, WTC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UC를 신청하거나 UC를 청구한 배우자와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CTC, WTC는 중단됨¹⁸³⁾
 - 한 번 중단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CTC, WTC, UC 모두 결혼한 부부(동성파트너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joint claim),¹⁸⁴⁾ 지급액 산정을 위한 소득 수준을 판단할 때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을 합산함¹⁸⁵⁾
- 영국은 소득세에 대하여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과세를 하지만, CTC, WTC, UC에 대해서는 결혼한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그 지급액을 결정함
 - CTC, WTC 및 UC 예상 지급액은 영국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해 볼 수 있음¹⁸⁶⁾

183) 영국 국세청, "How tax credits and other benefits affect each other," <https://www.gov.uk/how-tax-credits-affect-other-benefits>(accessed June 27, 2023)

184) 영국 국세청, "How to claim tax credits-Joint claims," <https://www.gov.uk/claim-tax-credits/joint-claims>(accessed July 4, 2023); 영국 국세청, "How to claim Universal Credit," <https://www.gov.uk/guidance/tax-credits-and-some-benefits-are-ending-move-to-universal-credit#how-to-claim-universal-credit>(accessed July 4, 2023)

185) 영국 국세청, "How to claim tax credits - What counts as income," <https://www.gov.uk/claim-tax-credits/what-counts-as-income>(accessed July 4, 2023)

186) 영국 국세청, "Benefits-calculators," <https://www.gov.uk/benefits-calculators>(accessed June 27, 2023); "Tax credits calculator-WTC, CTC," <https://www.gov.uk/tax-credits-calculator> (accessed June 27, 2023)

(1) 자녀장려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¹⁸⁷⁾

- 영국의 자녀장려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이하 ‘CTC’)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임¹⁸⁸⁾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된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CTC 적용 대상 자녀는 16세 미만의 아동 및 적격 청소년임
 - 적격 청소년이란 16세 이상 20세 미만으로서 승인된 교육·훈련¹⁸⁹⁾을 받고 있는 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임
 -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CTC 지급액은 가구, 자녀수, 자녀의 장애여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매년 물가인상률(inflation)을 반영하여 조정됨¹⁹⁰⁾
 - (가구요소) 한 명 이상의 자녀 또는 적격청소년이 있는 1가구당 연간 545파운드가 지급됨
 - 다만 2017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 (자녀요소) 자녀 1인당 연간 3,235파운드가 지급되며 3명의 자녀까지 가능함
 - 다만, 2017년 4월 6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2명까지 가능함¹⁹¹⁾

187) 김재진(2014, pp. 31~33); 영국은 2003년 4월 부모의 복지 지원, 아동 빈곤 감소, 가족 재정 지원 증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와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 WTC)를 도입하였음(자료: 영국 국세청, “Background and Definitions -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Provisional awards - April 2022(Updated 22 November 20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2/background-and-definition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2>(accessed June 27, 2023))

188) 2017년 4월 5일 이전에 CTC를 신청한 경우 적용 가능하며, 2017년 4월 5일 이전에 WTC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7년 4월 6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음

189) 승인된 교육·훈련은 전일제 학생으로서 대학교(university) 전 단계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의미함

190) 아동 수당 및 보호자 수당 증액규정(SI 2020/298)이 2020년 1월 제정(2020. 4. 시행)됨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하게 되었음

191) 다태아, 합의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자녀(A child born as a result of non-consensual conception)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3번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요소 및 중증장애요소) 자녀가 장애 및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 각각 3,905 파운드, 1,575파운드가 지급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3명의 자녀에 대해 적용됨
- CTC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간 기준소득(2023/24 기준 1만 8,725파운드)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파운드당 41펜스씩이 점감함(점감률: 41%)¹⁹²⁾

〈표 IV-8〉 영국의 CTC 요소별 최대 지급액(2023/24 기준)

(단위: 파운드)

구성 요소	연간 최대 금액
가구요소(Family Element, 가구 당 한번)	545
자녀요소(Child Element, 자녀 또는 적격 자녀 1인 당)	3,235
장애요소(Disability Element, 자녀요소에 추가)	3,905
중증장애요소(Severe Disability Element, 자녀요소 및 장애 요소에 추가)	1,575 (5,480) ¹⁾

주: 1. 매년 물가상승률(inflation)을 반영하여 결정됨

1)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는 자녀요소에 추가하여 장애요소 3,905파운드와 중증장애요소 1,575파운드를 합한 5,480파운드를 최대 지급받을 수 있음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23, p. 5.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당(Child Benefit)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나, 보육비지원(Tax-Free Child care)과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 (자녀수당)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적격 청소년의 주된 양육자는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됨¹⁹³⁾
 - 주된 양육자란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의식주 등 자녀 돌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함¹⁹⁴⁾

192)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23, p. 22.

193) 영국 국세청, "Child Benefit," <https://www.gov.uk/child-benefit/what-youll-get>(accessed June 27, 2023)

194) 친구 또는 친척의 자녀를 돌봐주기로 상호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주된 양육자가 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자료: 영국 국세청, "Child Benefit -Eligibility,"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accessed June 27, 2023))

- 첫째에 대하여는 24파운드(1주당), 둘째 이후 자녀부터는 추가되는 자녀 1명당 15.9파운드(1주당)를 지급함
- 일반적으로 4주에 1번 지급되며, 한부모 가정 또는 UC와 같은 특정 세금 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매주 지급받을 수 있음
- CTC 적용 여부는 자녀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부¹⁹⁵⁾ 중 한 명의 소득이 5만파운드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100파운드 당 1%의 비율로 자녀수당 금액이 감소하며, 따라서 6만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당은 없음¹⁹⁶⁾
- (보육비 지원) 함께 거주하는 11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에 대하여 3개월마다 최대 500파운드(연간 최대 2,000파운드)를 지급함¹⁹⁷⁾
 -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3개월마다 최대 1,000파운드(연간 최대 4,000파운드)를 지급함
 - 자녀의 11세(장애인의 경우 16세) 생일이 지나고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대상에서 제외됨
 - 보육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보육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양육자가 8파운드를 납입할 때마다 정부에서 2파운드를 지원하는 형태임
 - 세액공제(CTC, WTC, UC)를 받거나 고용주로부터 보육 바우처(childcare vouchers)¹⁹⁸⁾를 받는 경우 보육비 지원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즉시 기존의 세액공제는 중단되고 한번 중단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195) 이 경우 ‘부부’는 결혼한 부부, 동성파트너뿐만 아니라 결혼한 것과 같이 동거하는 두 사람(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임

196) LITRG, “The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Updated on 6 April 2023),”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credits-and-benefits/child-benefit/high-income-child-benefit-charge>(accessed July 6, 2023)

197) 영국 국세청, “Tax-Free Childcare,” <https://www.gov.uk/tax-free-childcare>(accessed June 27, 2023)

198) 고용주 측에서 제공하는 자녀 보육비 지원 제도를 말함

(2)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

- WTC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로,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함¹⁹⁹⁾
 - 25세(장애인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금액, 주당 최소 근로시간,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됨²⁰⁰⁾
 - 주당 최소 근로시간은 수급자의 연령, 자녀²⁰¹⁾유무, 장애여부에 따라 다름²⁰²⁾
- 지급액은 기본요소에 해당하는 금액(2023/24 기준 2,280파운드)에 가구별 추가요소(부부/한부모, 주당 30시간 근무, 장애, 중증장애, 자녀양육 등)별 금액을 더하여 산정함
 - 이러한 요소의 최대금액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실제 수취금액은 다르게 나타남
 -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간 기준소득(2023/24 기준 7,455파운드)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파운드당 41펜스씩 점감함(점감률: 41%)²⁰³⁾
 - 기준소득금액 초과에 따른 지급액 감소는 자녀요소 외의 WTC, WTC의 자녀요소, CTC의 자녀요소, CTC의 가족요소 순서에 따라 먼저 차감됨
 - 즉 WTC와 CTC를 함께 수급하는 경우 WTC가 먼저 차감되고 이를 다 소진하게 되면 CTC가 차감되는 구조임

199) 2017년 4월 5일 이전에 WTC를 신청한 경우 적용 가능하며, 2017년 4월 5일 이전에 CTC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7년 4월 6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음

200) 영국 국세청, "Working Tax Credit,"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accessed July 3, 2023)

201) 자녀는 16세(승인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0세) 미만을 말함

202) 주당 최소 근로시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의 근로시간을 합쳐서 30시간(한 명은 24시간 이상, 다른 한 명은 최소 16시간 이상), 장애가 있거나 장애·건강 등의 사유로 배우자 일방이 근로가 어려운 경우 및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16시간 이상
- 자녀가 없는 경우: 25~59세: 30시간, 60세 이상: 16시간, 장애인: 16시간

203)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23, p. 22.

〈표 IV-9〉 영국의 WTC 요소별 최대 지급액(2023/24 기준)

(단위: 파운드)

구성요소		연간금액
기본요소(Basic Element)		2,280
부부요소 ¹⁾ Couple Element, 기본요소에 추가)		2,340
한부모요소(Lone Parent Element, 기본요소에 추가)		2,340
30시간요소 ²⁾ 30 Hour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950
장애요소 ³⁾ Disability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3,685
중증장애요소 ³⁾ (Severe Disability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1,595
자녀양육 요소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 최대 자녀양육경비	주당 175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최대 자녀양육경비	주당 300
	자녀양육경비 보조비율	70%

주: 1) 부부 당 한 번만 추가 지급함. 부부이면서 이 중 한 사람이 이민통제(immigration control)에 해당하면서 자녀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요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공동 신청(joint claim)은 가능함
 2) 30시간 요소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부부 당 한 번만 추가 지급함
 3) 공동 신청이 이루어지고 두 사람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부 각각의 요소로 인정함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23, p. 7.

4) 소득세 과세단위 변천 과정

가) 개정 연혁²⁰⁴⁾

- 영국은 1799년에 소득세를 채택한 이래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였으나 1990년 4월 부터 완전한 개인단위과세로 전환함²⁰⁵⁾
- 1990년 4월 이전에는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였음

204) 영국의회도서관, “Tax, marriage, transferable allowances(2019.1.1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0870/>(accessed June 13, 2023)
 205) 김완석·정지선(2022), p. 74.

- 결혼한 여성의 소득은 남편의 소득으로 보았으며, 부부 소득을 남편의 소득인 것으로 보아 합산한 후 독신자와 동일한 세율표에 의하여 과세하는 합산비분할 과세 방식이었음
- 그러나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1972년부터 아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남편의 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과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이후 1978년 미드보고서(Meade Report)²⁰⁶)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위주의,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음
 - 같은 해인 1978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당시 기혼 부부에 대한 과세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동일한 보상을 받고 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단위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1970년 도입된 「평등 임금법(Equal Pay Act 1970)」과 1975년 도입된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봄
- 1986년 개인과세 개혁에 관한 재무부의 그린페이퍼(Green paper, The Reform of Personal Taxation)에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1980년 그린페이퍼에서는 국가 내에서 여성의 노동력의 규모와 범위가 크게 변화한 사회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인정하였으며,²⁰⁷) 개인단위 과세가 현재의 경제·사회적 필요에 더욱 적합한 과세방식이라 봄
 - 1984년 재무 장관은 부부합산과세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집에 머무르는 가정을 차별하며, 세금 문제에 있어서 아내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비판함

206) 김완석(2005), p. 53, 각주 41) 재인용: IFS,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George Allen & Unwin, 1978)

207)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혼 여성이었으나, 1980년 후반에는 기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언급함

-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제개혁(Finance Bill 1988)에 의하여 1990년 4월부터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함²⁰⁸⁾
-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단위과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인적공제 관련 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음
 - 합산과세 당시에는 부부 중 남편에 대한 기혼남성공제(Married Man's Allowance; MMA)가 있었으나, 개인단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됨
 - 개인단위과세로 전환된 후에는 기혼남성공제를 적용받던 사람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부부공제(MCA)를 도입하였으나, 1994년부터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4월 폐지됨
 - 2015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혼공제(양도 가능한 공제)가 도입됨
- (1) 부부합산과세 당시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799~1990년
- 영국은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던 1799년부터 1990년 4월 이전까지는 부부 중 남편에게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책임이 있었고, 결혼 여부 및 아내의 근로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기본 인적공제가 존재하였음
 - 다음은 1989/90 과세연도 당시의 공제 금액임
 - 1인 가구(독신자): 2,785파운드
 - 미혼인 커플 2명: 5,570파운드
 - 남편만 일하는 부부: 4,375파운드²⁰⁹⁾
 - 맞벌이 부부: 7,160파운드²¹⁰⁾
- 기혼남성공제(MMA)는 결혼한 부부 중 남편이 받을 수 있었으며, 남편은 일하지 않

208) 김완석(2005), p. 54, 각주 42) 재인용; Chris Whitehouse & Elizabeth Stuart - Buttle, Revenue Law - 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ition(Butterworths, 1992), p. 653.

209) 이를 기혼남성공제(Married Man's Allowance; MMA)라고 함

210) 기혼남성수당 4,375파운드와 아내근로소득공제(WEIR) 2,785파운드의 합계임

고 아내만 일하더라도 아내의 소득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었음²¹¹⁾

- 독신자의 경우 독신자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결혼을 한 부부에 대해서는 공동 소득은 남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두 사람 모두가 독신자 공제를 받을 수 없었기에 기혼남성공제(MMA)를 인정해 줌
- 만약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저축소득 제외)²¹²⁾에는 1,195파운드²¹³⁾의 아내 근로소득공제(Wife's Earned Income Relief; WEIR)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음²¹⁴⁾
- 즉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는 독신자 2명인 경우와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 이후 1942년에 아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이 독신자 공제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독신자 2명인 경우의 공제금액(5,570파운드)보다 큰 7,160파운드(1989/90 기준)²¹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공제 시스템은 미혼 부부보다 함께 일하는 부부에 대하여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어 결혼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었음

(2) 부부공제의 도입 및 폐지: 1990년 4월~2000년 4월

- 1990년 개인단위 과세로의 전환은 곧 기혼남성공제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했고, 대다수의 부부(가족)는 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됨
- WEIR 또한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없는 기혼부부의 경우 공제액이 4,375파운드에서 2,785파운드로 감소하게 되어 상당한 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됨

211) 즉 배우자 간 '양도 가능한(transferable)' 공제로 볼 수 있었음

212) 아내가 저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WEIR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아내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저축으로 가계에 기여하는 경우 세제 불이익이 있었다고 봄

213) WEIR 도입 당시에는 독신자 두 명에 대한 공제금액과 기혼남성공제 금액과의 차이를 공제해줌

214) 1인당 독신자공제 2,785 × 2명 - 기혼남성공제(4,375) = 1,195파운드

215) 기혼남성공제(4,375) + WEIR(2,785) = 7,160파운드

- 이러한 배경에서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MMA를 대체하기 위해 부부 공제(MCA)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7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함
 - MCA의 경우 두 개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MMA의 차이(1990/91기준 1,590파운드)²¹⁶⁾ 만큼을 남편이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소득이 초과할 경우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함

- 이후 MCA의 한도는 1994년 4월부터는 20%, 1995년 4월부터는 15%, 1999년 4월부터는 10%로 한도가 감소되었으며, 2000년 4월부터는 폐지되었음
 - 다만 제도가 폐지된 2000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5세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MCA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2023/24 과세연도를 기준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89세 이상인 경우에만 MCA를 청구할 수 있음

(3) 결혼공제(양도 가능한 공제) 도입: 2015년 4월 이후

- 양도 가능한 공제에 대한 논의는 1986년 개인과세 개혁에 관한 재무부의 그린페이퍼(Green paper)에서 기본공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됨
 - 처음에는 개인단위 과세 전환에 따라 기혼남성공제가 폐지되면 기혼부부의 공제 금액 감소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우자의 기본공제 전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러나 '완전히 양도 가능한 공제 시스템'은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행정비용 최소화 관점에서도 부적합하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1987년 이후로 찬반 논쟁이 계속됨

216) 1인당 독신자공제 2,785×2명 - 기혼남성공제(4,375) = 1,590파운드

-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2011년 당시 재정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40억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²¹⁷⁾
- 다만 특정 정책 목표를 촉진(예: 결혼 장려)하고 부부 중 일방이 집에 머무르는 가족 형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후 2007년 7월 사회정의센터(Centre for Social Justice)에서는 결혼한 부부간 양도 가능한 공제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하였고, 같은 해 8월 보수당에서 ‘조세제도 내에서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3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2015년 4월부터 배우자(동성 파트너) 간 기본공제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결혼공제 도입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의 제도에 이르게 됨

나) 최근 논의 동향

- 결혼·출산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오고 있으나, 그 방안으로서 과세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직접적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²¹⁸⁾
- 2022년 당시 보수당 지도부 후보였던 리즈 트러스는 총리 당선 공약으로 가족과 세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이후 추진된 바는 없음²¹⁹⁾

217)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axation of Husband & Wife, March 1986 p. 1.; Antony Seely(1995), p. 10, 각주 18) 재인용

218) dailymail uk, “Cut taxes to boost the UK’s low birth rate: Campaigners attempt to reverse the falling number of Brits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August 21, 2022,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1130887/Cut-taxes-boost-UKs-low-birth-rate-falling-number-marriages-say-campaigners.html>(Accessed July 3, 2023)

219) THE SPECTATOR, “Liz Truss is right to look at family taxation,” July 17, 2022, <https://www.spectator.co.uk/article/liz-truss-is-right-to-look-at-family-taxation/>(Accessed July 3, 2023)

- 과거 합산비분할 과세에서 개인단위 과세로 전환한 주된 이유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2차 소득자의 근로의욕 저하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합산과세로 돌아가는 것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존재함

2. 소비단위과세

가. 미국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 미국은 우리나라의 열거주의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음²²⁰⁾
 - 미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인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 비거주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소득세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부부단위임
 - 소득세 신고유형은 결혼유무 및 개별·합산신고 등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내국세법」 제101조에서 140조에 명시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함
 - 물가상승으로 인한 조세 왜곡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²²¹⁾

220)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6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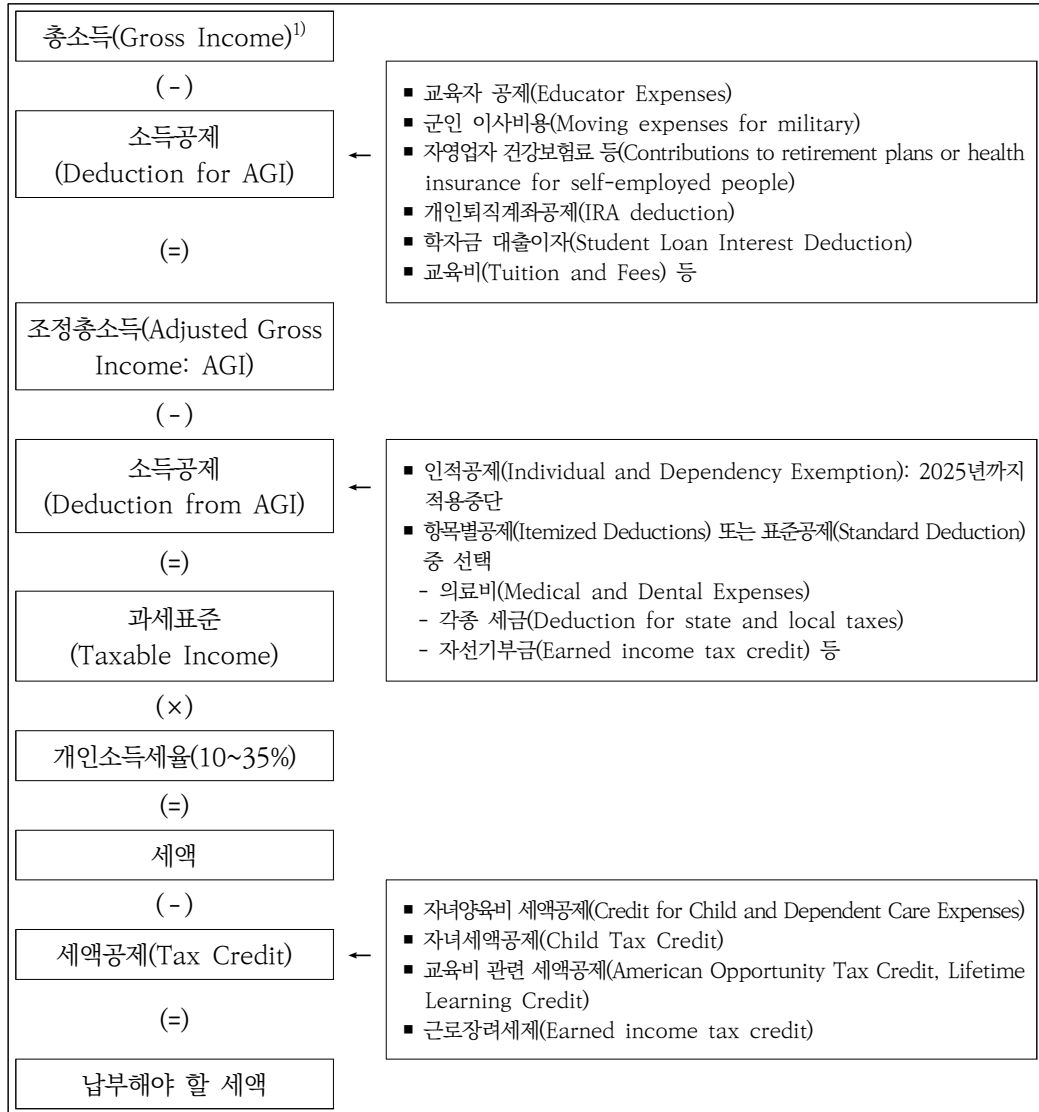
22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pp. 3~4.

- 미국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총소득(gross income)에서 허용된 각종 공제(allowances and deductions)를 차감한 순소득에 과세하는 구조로서, 결정세액 산정 시까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침
- 제1단계: 총소득(gross income)의 계산
 - 비과세소득²²²⁾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 이자 및 배당, 연금, 자본이득 등 소득 원천을 불문한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함
 - 제2단계: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계산
 - 조정총소득은 총소득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인퇴직계좌 기여금,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 적격 교육비, 교육자 공제, 적격 의료저축계좌 기여금, 적격 이사비용 등의 공제항목이 있음
 - 제3단계: 과세표준의 계산
 - 조정총소득에서 i)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amounts)와 ii)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차감하여 산정함
 - 제4단계: 과세표준에서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신고유형별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됨
 - 제5단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환급형(refundable) 세액공제 및 비환급형(non-refundable)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함²²³⁾

222)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산재보상금, 적격 장학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23)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반해 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함

[그림 IV-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 1) 비과세소득(비과세 이자소득, 장학금, 산재보상금 등) 제외
 자료: 미국 국세청, 미국 소득세 신고서(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참조

2) 소득세 과세단위

가) 개요

- 미국의 과세단위는 소비단위를 부부로 보며, 납세자가 부부단위합산과세와 개인단위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부부가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나 부부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인지 또는 각각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할 것인지의 결정은 납세자의 선택임
 -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복수세율표를 운용 중임

- 소득세 과세단위는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 신고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²²⁴⁾
 - 부부합산신고(Married individuals filing joint returns):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결혼한 납세자로서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이혼이나 별거규정 등에 의하여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합산신고를 할 수 없음²²⁵⁾
 -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과세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서로 다른 회계기준(예: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으로 신고할 수는 있음
 - 세대주(Heads of households):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부양하고 있는 미혼자로서,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 신고유형²²⁶⁾에 해

224) 미국 「내국세법(IRC)」 제1(a)조~제1(d)조

225) 이 외에도 배우자 한 명이 과세연도 중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전체 과세연도에 대하여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로서 과세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야 함

22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생존배우자(자격을 갖춘 미망인)의 경우에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이후 2년 간 부부합산신고 지위 등을 적용하도록 함
-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 부부합산신고를 신청한 경우

당되지 아니한 자의 신고유형을 말함

- 과세연도 중 전체 가구유지비²²⁷⁾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야 함
- 과세연도 중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적격 부양인²²⁸⁾과 함께 거주하여야 함²²⁹⁾

- 독신자(Unmarried individuals):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미혼이거나 법원의 이혼 판결 등에 따라 별거 중에 있는 납세자로서 다른 신고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부부개별신고(Married individuals filing separate returns):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결혼한 납세자로서 배우자와 소득 및 각종 공제액을 각각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말함

□ 한편 미국은 해당 연도 자녀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 신고방식을 다르게 취급함²³⁰⁾

- 미국은 자녀의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투자소득(unearned income)이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세율²³¹⁾이 적용되는 자녀투자소득세(kiddie tax)를 운용 중임²³²⁾
 -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은 2,300달러임
 - 자녀의 나이가 과세연도 종료일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전업학생인 자녀의 소득이 자녀양육비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등

-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와 1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경우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혼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전체 가구유지비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227) 신고유형 판정 시 가구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월세, 주택에 대한 보험료, 주택담보대출이자, 재산세 등이 있으며, 교육비, 의료비, 생명보험료, 교통비 등은 제외됨

228) 입양자녀, 의붓자녀 등을 포함한 자녀(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이면서 학생인 경우)와 친척(3촌 이내)이 해당됨

229)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으며,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함

230) IBFD, "Taxation of childre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10.1.1.3.\(accessed July 5, 202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10.1.1.3.(accessed%20July%205,%202023))

231) 상속 및 신탁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또는 부모의 과세표준 및 세율(brackets and rates for estates and trusts or the parent's tax rate)을 말함

232) 소득세율이 높은 부모가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 앞으로 투자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자녀의 근로로 인한 소득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이 적용됨

- 과세연도 종료일에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한편 자녀의 총소득이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세 신고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²³³⁾
 - 자녀가 자녀투자소득세(kiddie tax) 적용 대상인 자
 -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 1,250달러 이상 1만 2,500달러 미만임
 - 자녀의 총소득이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
-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주(州)에 따라서 부부별산제 또는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음²³⁴⁾
 -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한 통일적인 부부재산제도를 두지 않고 각 주의 자주적인 규율에 맡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앵글로색슨계의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는 주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민법(civil law) 체계를 도입한 주에서는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음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 미국은 소득세 과세 시 부부단위를 원칙으로 하면서 가구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고유형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조치를 세율, 공제제도 등에 두고 있음
 -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를 독신, 부부합산, 부부개별, 독신세대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 및 공제금액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신고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국 「내국세법」상 세율 및 공제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233) Form 8814

234) 전병목·박명호·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p. 50.

(1) 세율

- 미국의 개인납세자는 소득신고 시 신고유형(filing status)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율은 신고유형별로 달리 적용됨
 - 연방소득세율은 신고유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득인 과세 구간별로 과세연도 2023년 기준 10%에서 37%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한편 투자소득²³⁵⁾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유형에 따른 수정된 조정총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과함²³⁶⁾
 - 기준소득 금액은 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부부개별 12만 5,000달러, 독신 또는 세대주의 경우는 20만달러임
 - 소득세 과세구간은 일반적으로 물가 수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 주고 있음

〈표 IV-10〉 미국의 소득세 신고유형별 세율(과세연도 2023년 기준)

(단위: 달러, %)

과세소득 구간				세율
부부합산	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	
22,000 이하	15,700 이하	11,000 이하	11,000 이하	10
22,001~89,450	15,701~59,850	11,001~44,725	11,001~44,725	12
89,451~190,750	59,851~95,350	44,726~95,375	44,726~95,375	22
190,751~364,200	95,351~182,100	95,376~182,100	95,376~182,100	24
364,201~462,500	182,101~231,250	182,101~231,250	182,101~231,250	32
462,501~693,750	231,251~578,100	231,251~578,125	231,251~346,875	35
693,750 초과	578,100 초과	578,125 초과	346,875 초과	37

자료: 미국 국세청, “Rev. Proc. 2022-38,” <https://www.irs.gov/ko/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3>(accessed June 8, 2023)

235) 투자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기술료소득 및 수동적 참여로 인한 사업소득 등이 포함됨

236) 미국 국세청,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https://www.irs.gov/newsroom/questions-and-answers-on-the-net-investment-income-tax>(accessed June 29, 2023); 미국 「내국세법(IRC)」 제1411조

(2) 소득공제

- 과세표준(taxable income)은 조정총소득에서 i)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와 ii)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차감하여 산정함
- (인적공제: 한시적 중단) 납세자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allowance)를 받을 수 있음²³⁷⁾
 - 인적공제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 Act 2017)」에 의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²³⁸⁾
 - 2017년 기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은 4,050달러이며, 신고유형별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2,500달러당 2%씩 감소됨 -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은 2017년 기준 부부합산 31만 3,800달러, 독신 26만 1,500달러, 세대주 28만 7,650달러임
- (부양가족의 범위) 납세자가 부양가족(dependents)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부부합산신고요건(Joint Return Test) (2) 거주 또는 관계요건(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3) 신분요건(Citizen or Resident Test) (4) 총소득금액요건(Gross Income Test) (5) 부양요건(Support Test)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²³⁹⁾
 - (합산신고 여부(Joint Return Test))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인으로 신청할 수 없음²⁴⁰⁾

237) 미국 「내국세법(IRC)」 제151조~152조; Rev. Proc. 2016-55, 2016-45 IRB 707

238) 2018년도부터 인적공제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들이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짐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공제를 확대하였으며,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적공제 적용배제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함.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56~60.

239) 미국 국세청, "Publication 501(2022), Dependent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en_US_2022_publink1000220968(accessed June 29, 2023)

240) 다만 원천징수세(tax withheld)된 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가족구성원 또는 관계요건(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부양인은 납세자와 친척이거나 동일한 주소지를 가지고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함²⁴¹⁾
 - 친척(relative)의 범위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삼촌, 숙모, 조카 등은 포함되나 사촌, 위탁아는 친척으로 보지 않음
 - (총소득금액요건(Gross Income Test)) 부양인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과세연도 2022년 기준 4,400달러임
 - 총소득이란 과세대상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24세 미만으로서 전업학생(연간 최소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총소득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분요건(Citizen or Resident Test)) 부양인은 미국시민 또는 캐나다, 멕시코의 거주자이어야 함
 - (부양요건(Support Test)) 부양인을 위하여 연간 부양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²⁴²⁾
 - 부양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식비, 의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 생명보험료, 장례비, 비과세 장학금 등은 제외됨
-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개산공제인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항목별 공제는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이 표준공제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됨
- (표준공제) 표준공제는 일반적으로 조정총소득(AGI)에서 납세자의 신고유형(Filing Status)에 따라 정액이 공제되는 항목으로, 납세자가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인(Aged or blind)인 경우에는 추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음²⁴³⁾

241) 질병, 학업, 교육, 근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나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인정됨

242) 부양인에 대한 부양비용을 5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납세자에 의한 부양합의(multiple support agreement)를 통해 10%를 초과하는 자가 부양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10%를 초과하여 부양한 다른 납세자 모두로부터 부양대상자를 본인의 부양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는 동의 하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양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신분요건 등 나머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본공제) 기본 표준공제금액은 2023년 기준 부부합산신고 2만 7,700달러, 세대주 2만 800달러, 독신 및 부부개별신고 1만 3,850달러임
- (경로 또는 장애인 추가공제) 2023년 기준 부부합산신고 시 각각 1,500달러, 독신/세대주 1,850달러임
- (항목별 공제) 항목별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지출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 항목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도난손실 등이 있음
 - 한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에 대한 한도 규정을 적용받으나, 「Tax Cuts and Jobs Act 2017」에 의해 2018~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함²⁴⁴⁾

(3)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환급형(refundable) 세액공제 및 비환급형(non-refundable)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함²⁴⁵⁾
- 환급형 세액공제는 근로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건강보험료 세액공제(Health insurance credit)가 있음²⁴⁶⁾
- 비환급형 세액공제는 경로 및 장애인 세액공제(Elderly and Disabled Credit), 입양비용 세액공제(Credit for Adoption Expenses),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Tax Credits) 등이 있음

243) 미국 국세청, "Dependent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accessed June 30, 2023)

244) 납세자의 조정총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조정총소득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항목별 공제 대상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항목별 공제 총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함. 다만, 의료비, 재해·도난손실 등은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로, 2017년 항목별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신고유형별 한도금액은 부부합산 31만 3,800달러, 세대주 28만 7,650달러, 독신 26만 1,500달러, 부부개별 15만 6,900달러임

245)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반해 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함

246) IBFD, "1.8.3.1. Refundable credi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8.3.1(Accessed June 29, 2023)

- 이 외에 혼합형으로 자녀세액공제와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가 있음
 -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란 적격 학생당 최대 연간 2,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이 되는 경우 남은 세액공제 금액의 40%를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²⁴⁷⁾
 - 이하에서는 신고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이하 'EITC'라 함)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내인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임²⁴⁸⁾
- EITC는 1975년 「조세감면법(Tax Reduction Act 1975)」에 의해 최초로 도입됨
 - 신고유형 및 적격 부양자녀 수에 따른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음
 - EITC는 일반적으로 기본요건, 소득요건, 자녀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함²⁴⁹⁾
 -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고유형 및 적격자녀 수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한도를 충족하여야 함²⁵⁰⁾
 - 미국 EITC 지급액은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나누어 산정되며, 신고유형 및 적격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리 결정됨
 - EITC 최대 지급금액은 2023년 귀속 기준 자녀 0명이면 600달러, 자녀 1명이면 3,995달러, 자녀 2명이면 6,604달러, 자녀 3명 이상이면 7,430달러임²⁵¹⁾

247) 미국 국세청,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aotc>(accessed June 29, 2023)

248) 미국 「내국세법(IRC)」 §32

249) EITC 신청자가 군인, 종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special EITC rules)이 적용됨

250) 한시적으로 2019년 근로소득이 2021년 또는 2020년보다 많은 경우 2019년 금액을 사용하여 2021년 또는 2020년의 EITC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함

251) IRS, "Earned Income Tax Credit Income Limits and Maximum Credit Amount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tax-credit-income-limits-and-maximum-credit-amounts>(accessed June 29, 2023)

〈표 IV-11〉 미국의 EITC 신청을 위한 기준소득 금액(2023년 귀속 기준)

(단위: 달러)

자녀 수	소득기준(AGI)		투자소득
	부부합산신고	독신 등 ¹⁾	
0	24,210	17,640	11,000
1	53,120	46,560	
2	59,478	52,918	
3명 이상	63,698	56,838	

주: 1. 소득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되어 조정됨

- 1) 신고유형 중 독신, 세대주, 미망인을 포함하며, 부부개별신고 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EITC 적용대상 적격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음

자료: 미국 국세청, "Earned Income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able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accessed June 29, 2023)

〈표 IV-12〉 미국의 EITC 신고유형 및 부양자녀 수별 지급방식(2023년 귀속 기준)

(단위: %, 달러)

부양자녀 수		점증구간		최대지급액	점감구간		
		점증률	상한		점감률	하한	상한
독신 ¹⁾	0명 ²⁾	7.65	7,840	600	7.65	9,800	17,640
	1명	34	11,750	3,995	15.98	21,560	46,560
	2명	40	16,510	6,604	21.06	21,560	52,918
	3명 이상	45	16,510	7,430	21.06	21,560	56,838
부부 합산	0명 ²⁾	7.65	7,840	600	7.65	16,370	24,210
	1명	34	11,750	3,995	15.98	28,120	53,120
	2명	40	16,510	6,604	21.06	28,120	59,478
	3명 이상	45	16,510	7,430	21.06	28,120	63,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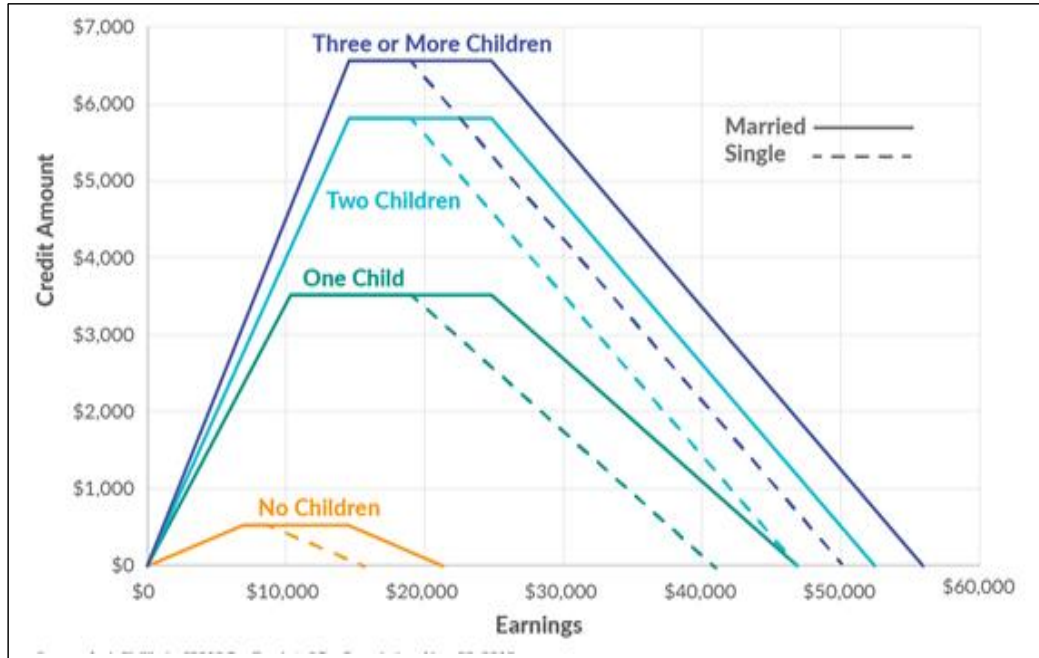
주: 1.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되어 조정됨

- 1) 신고유형 중 독신, 세대주, 미망인을 포함하며, 부부개별신고 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EITC 적용대상 적격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음

- 2) 자녀가 없는 경우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 최대 지급금액, 지급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을 상향조정하 바 있음

자료: IRC §32, IRS, "Earned Income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able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accessed June 29, 2023)

[그림 IV-4] 미국의 신고유형 및 부양자녀수별 EITC 지급방식



주: 최대 지급액 및 기준소득 금액 등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되어 조정됨
 자료: Tax Foundatio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ttps://taxfoundation.org/earned-income-tax-credit-eitc/> (accessed June 29, 2023)

- (자녀세액공제) 미국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와 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를 운영하고 있음²⁵²⁾
 - 2023년 기준 17세 미만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CTC 공제액(급여액)은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AGI), 부양자녀의 수, 소득세 신고 유형을 고려하여 결정됨

252) IBFD, “1.8.3.2.4. Credit for childre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8.3.2.4 (accessed August 10, 2023)

- 세액공제액(급여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AGI 1,000달러 당 50달러씩 점진적으로 감액됨(phase-out)
 - 기준금액은 미국 세무신고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며,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인 경우 20만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40만달러임
- 미사용 된 CTC 세액공제액(급여액)이 발생하는 CTC 신청자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ACTC라고 함
 - 2023년 기준 환급가능한 근로소득(earned income)²⁵³⁾ 기준금액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CTC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부양자녀²⁵⁴⁾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00달러의 부양가족 세액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가 추가로 적용됨²⁵⁵⁾
- 비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세액공제액은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됨
 - 기준소득 금액은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인 경우 20만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40만달러임

(4) 최저한세

- 미국은 세 부담의 과도한 경감을 제한함으로써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고 조세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제도를 운용 중임²⁵⁶⁾
- 비과세소득과 같은 우대항목을 가산하고, 공제항목이나 이연과세항목 등 조정항

253) 여기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란 임금, 급여, 기타 과세대상 종업원 혜택 및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함(안종석·박수진·이서현, 2017, p. 55)

254)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이상으로 대학생이거나 개인 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 자녀 또는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친척을 말함

255) IRS, "An overview of the credit for other dependents," <https://www.irs.gov/newsroom/an-overview-of-the-credit-for-other-dependents>(accessed August 10, 2023)

256) IBFD, "Alternative minimum tax (AM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10.1.2(accessed June 29, 2023)

목을 가감하여 계산한 최저한세 부담액에서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세액(regular income tax)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 최저한세로 납부함

- 우대항목(tax preference items)은 면세이자 등이 있음
- 조정항목(adjustment items)은 감가상각비, 주택담보대출이자, 제세공과금, 인적공제 등의 항목을 가산 또는 차감함
- 우대항목 및 조정항목을 가감한 후 최저한세 공제금액(exemption)을 차감하는데, 공제금액은 2023년 기준 신고유형별로 독신신고 8만 1,300달러, 부부합산 신고(생존배우자 포함) 12만 6,500달러, 부부개별신고 6만 3,250달러임²⁵⁷⁾

- 2023년 기준 신고유형별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11만 350달러이고, 이외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22만 700달러로,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하에서는 26%를 적용함

3) 주요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²⁵⁸⁾

- 미국은 1913년 연방소득세 도입 당시 부부재산제와 관계없이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하였으나 부부의 재산소유에 대한 법이 주(州)마다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로 혼재되어 달리 적용되고 있었음²⁵⁹⁾
- 미국은 1948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48)」에 따라 단일세율표 하에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가 개인단위와 이분이승제(Joint Return System)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257) 최저한세 잠정과세표준이 2023년 기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15만 6,300달러, 독신 등 이외의 신고의 경우 57만 8,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세 공제금액에서 차감함

258) 김완석(2005) pp. 48~52의 내용을 일부 요약 정리하였음

259) 미국에서는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는 주와 부부별산재산제를 채택하는 주 간의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1948년에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채택하였음. 이후 조세법이 혼인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누진세제구조 하에서 기혼자와 미혼자 세 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세율제도 도입과 과세단위별 공제액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해 오고 있음(안중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9, pp. 16~19)

- 부부재산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혼자 소득활동을 하였더라도 부부단위로 소득을 동일하게 나누어 각각의 소득으로 보아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세 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한편 도입 초기 부부합산 과세방식은 단일세율표 하에 지금의 독일 과세단위와 동일한 이분이승제²⁶⁰⁾ 방식이었음
 -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이 방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단위 신고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
- 미국의 1951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51)」에서는 이분이승제로 인하여 기혼부부에게 세 부담이 유리하게 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세율표 체계를 신설하였음
- 1950년대 초에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에 비해 홀벌이 기혼부부를 우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독신세대주를 위한 세율표를 제정하였음²⁶¹⁾
- 1969년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69)」을 개정하여 소득세율의 세율을 부부합산, 독신, 세대주, 부부개별 신고의 4종류로 세분화하여 신고하는 복수세율표를 개정함
- 1948년 이후 독신자의 세 부담이 부부합산신고에 비해 더 무거움에 따라 부부합산신고에 대한 우대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독신자는 1969년에 신설된 신고유형으로 부부합산, 세대주, 적격 미망인 신고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함
 - 그러나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독신자와 합산신고하는 기혼부부 간의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합산신고하는 기혼부부에 있어서도

260) 이분이승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부부 1인당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 부부 1인당 소득세액에 다시 2를 곱한 금액을 부부의 소득세액으로 하는 방식임

261) Bloomberg Tax, “The Unfairness of the Marriage Tax Penalty,”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the-unfairness-of-the-marriage-tax-penalty>(accessed June 29, 2023)

결혼보너스를 누리는 자와 결혼페널티를 부담하는 자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소득세제에서 의도하지 않은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한 부부의 세 부담이 독신에 비해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결혼보너스(marriage bonus) 또는 결혼페널티(marriage penalty)라 함

○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제거가 미국 소득세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

□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A)」²⁶²⁾은 부부합산신고 시 세 부담 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였음²⁶³⁾

○ 주요 내용으로는 기혼부부에 대한 표준공제 규모를 2003년부터 확대하여 독신 신고자 대비 2배까지 인상하였음

- 부부합산신고 시 표준공제금액을 2002년 기준 독신신고 4,700달러, 부부합산신고 7,850달러에서 2003년에 각각 4,750달러, 9,500달러로 확대함

○ 합산신고하는 기혼부부의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bracket)의 범위를 독신 신고자의 2배까지 인상함

○ 저소득납세자의 결혼페널티를 제거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시 부부합산신고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함²⁶⁴⁾

- 부부합산신고 시 단계적 체감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소득금액을 확대함

□ 미국의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2017」에 의해 고소득자가 직면하는 많은 결혼페널티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존재하고 있음²⁶⁵⁾

262) 동 법안은 기혼부부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조세감면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263) Urban Institute, "How Marriage Penalties Change Under the 2001 Tax Bill,"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how-marriage-penalties-change-under-2001-tax-bill> (accessed June 29, 2023)

264) 단독신고와 부부 합산신고의 차이를 보면, 점증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고, 점감구간에서의 기울기에도 차이가 없으며, 점감이 시작되는 소득 수준이 합산신고에서 더 높으나 두 배에는 미치지 못함

265) TAX POLICY CENTER, "What are marriage penalties and bonuses?," <https://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what-are-marriage-penalties-and-bonuses>(accessed June 29, 2023)

- 2017년 당시 35% 최고세율 과세구간을 제외하고는 부부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구간이 독신신고 시 과세구간의 두 배로 조정되어 결혼페널티의 주요 원인이 제거됨
 - 또한 자녀세액공제 체감규정 적용 기준소득 금액이 부부합산신고 시 40만달러로, 독신신고 20만달러의 두 배로 조정됨
 - 이전에는 독신의 경우 7만 5,000달러, 부부의 경우 11만달러에서 체감규정이 적용되어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또 다른 결혼페널티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최저한세의 체감규정은 고소득 납세자들에게 결혼페널티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체감규정이 적용되는 기초공제(AMT exemption) 금액은 기혼부부의 경우 독신인 경우의 두 배 미만으로, 2023년 기준 부부합산신고 12만 6,500달러, 독신신고 시 8만 1,300달러, 부부개별신고 6만 3,250달러임
- 1948년 현대적 부부합산신고가 시작된 이후로 결혼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에 대한 논쟁은 최근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²⁶⁶⁾
- 선행연구에서는 세제로 인한 결혼페널티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결혼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²⁶⁷⁾
 -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페널티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측정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 Feldstein and Feenberg(1996)는 결혼페널티가 부부의 결혼 의사결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부부 중 2차 소득자(저소득 배우자)의 경우 노동공급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함²⁶⁸⁾
 - 부부단위과세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과세하므로 2차 소득자의 한

266) Bloomberg Tax, "The Unfairness of the Marriage Tax Penalty,"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the-unfairness-of-the-marriage-tax-penalty>(accessed June 29, 2023)

267) Courtney Coile, "Marriage Penalties in Social Security Programs," *BULLETIN ON AGING & HEAL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3.

268) Martin Feldstein and Dan Feenberg, "The Taxation of Two Earner Families," *Empirical Foundations of Household Tax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39~75.

계세율이 1차 소득자의 한계세율과 동일하게 됨에 따라 2차 소득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

-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의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ARP)」으로 인해 다시 결혼패널티가 주목을 받았음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7.65%에서 15.3%로, 최대 지급액을 543달러에서 1,052달러로 확대함

나. 독일²⁶⁹⁾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²⁷⁰⁾

- 독일은 소득세 조사기간(Ermittlungszeitraum)²⁷¹⁾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²⁷²⁾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을 말하며,²⁷³⁾ 개인과 인적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임²⁷⁴⁾
 - 소득세 과세를 위한 조사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농업소득, 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 독일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단계에 따라 계산됨²⁷⁵⁾

2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300~302.

270) Bloomberg Tax, "Country Portfolios: Germany: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D.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9708317224>(accessed June 13, 2023)

271) 독일은 소득세 과세를 위한 이익의 조사기간(Ermittlungszeitraum)과 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이익의 귀속기간(Veranlagungszeitraum)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93)

2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303.

273) 독일 「소득세법(EStG)」 제1조 제1항

27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95.

27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p. 405~418.

- 각 유형별 소득을 합산한 금액(Summe der Einkünfte)²⁷⁶⁾에서 다음의 총 4단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zu versteuernde Einkommen)을 산정함
 - 노령면제, 한부모공제,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를 하여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을 산정함²⁷⁷⁾
 - 총소득금액에서 특별지출,²⁷⁸⁾ 비경상적 지출 공제 및 결혼금 공제를 반영하여 소득금액(Einkommen)을 산정함
 - 소득금액에서 자녀소득공제와 독일 「소득세법(EstG)」 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공제를 반영함
 -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함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
- 계산된 산출세액에 누진유보 등 특별세율(besonderer Steuersatz)²⁷⁹⁾ 적용에 따른 소득세를 가산하고, 세액감면(Steuerermäßigungen),²⁸⁰⁾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확정소득세가 결정됨

□ 독일의 소득세율은 5개의 구간으로 나뉘며,²⁸¹⁾ 소득세액 산정방법을 방정식으로 구

276) 독일은 소득(Einkünfte)의 유형을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 유형별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77) 독일 「소득세법(EstG)」 제2조 제3항

278) 특별지출공제는 소득창출에 연관된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납세자의 담세력을 줄여주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연금 납입액,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 주거용 부동산 관련 모기지 이자비용 및 재산세, 자녀 양육 의무 관련 비용, 이혼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액에 대한 공제, 자녀 보육비·교육비 공제 등이 있음

279) 누진유보 등 특별세율 규정은 비과세 소득을 일단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세율 구간을 확정하고, 비과세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누진을 적용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323~324)

280) 세액감면(Steuerermäßigungen)은 독일 「소득세법(EstG)」 제34c조 내지 제35c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상업활동소득 관련 세액감면, 가계관련서비스(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및 기술자 비용(Handwerkerkosten)에 대한 세액감면,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세액감면 등이 있음

281)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제1항

정하는 수식체계방식을 취하고 있음²⁸²⁾

- 1구간은 기본공제 구간으로 세액이 0이 되는 구간이며, 2023년 기준 기본공제 금액은 1만 908유로(부부 공동신고 시 2만 1,816유로)²⁸³⁾임
- 2구간 및 3구간은 최소 14%에서 최대 4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음
- 4구간 및 5구간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42%, 45%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표 IV-13〉 독일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구간	과세표준 ¹⁾		한계세율 ²⁾³⁾	세 부담 범위 (공동신고의 경우 2배)
	개인별 신고	공동 신고 (기혼자 또는 동성파트너)		
1	10,908 이하	21,816 이하	0	0
2	10,909 이상 15,999 이하	21,817 이상 31,998 이하	14~23.97	0~967
3	16,000 이상 62,809 이하	31,999 이상 125,618 이하	23.97~42	967~16,407
4	62,810 이상 277,825 이하	125,619 이상 555,650 이하	42	16,407~106,714
5	277,826 이상	555,650 이상	45	106,714~

주: 1) 2023년 귀속소득 기준이며,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 구간은 사회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매년 조정됨

2) 1구간은 기본공제(Grundfreibetrag) 구간으로 세액이 0이 되며, 2구간과 3구간은 한계세율이 증가하고, 4구간과 5구간은 한계세율이 일정함

3) 연대부가세(5.5%)와 교회세는 소득세율의 일정 비율로 별도 적용

자료: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de_s_001.html%23ita_de_s_1.10.(accessed June 12, 2023);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32a조 제1항

28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321~322. 1990년에 도입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32a조 제1항; 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고안한 방식이며, 개인별 신고 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 1구간: 0
- 2구간: $(979.18 \times y + 1,400) \times y$
- 3구간: $(192.59 \times z + 2,397) \times z + 966.53$
- 4구간: $0.42 \times x - 9,972.98$
- 5구간: $0.45 \times x - 18,307.73$

여기서, x = 과세표준

y = (과세표준 - 10,908) ÷ 10,000

z = (과세표준 - 15,999) ÷ 10,000

283) 2024년에는 1만 992유로(부부 공동신고 시 2만 1,984유로)가 적용됨

2) 소득세 과세단위

가) 개요

- 독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혼인 여부, 자녀 수 및 기타 요인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의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도 가구 형태 등에 따라 6가지 과세유형(Steuerklassen)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과세유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공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침
 - 이하 '나) 소득세 과세유형'에서 살펴봄
- 독일은 결혼한 부부²⁸⁴⁾의 경우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별과세(Einzelveranlagung)와 부부합산분할과세(Zusammenveranlagung)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²⁸⁵⁾
 - 부부합산분할과세는 납세자와 배우자가 독일 소득세법 상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음²⁸⁶⁾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개별과세 또는 부부합산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며,²⁸⁷⁾ 개별 과세를 선택할 경우 각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부부합산분할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누어(Ehegattensplitting, 이하 '이분이승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즉 먼저 부부의 개별 소득을 합산하여 공동소득으로 귀속시킨 후 총 과세 소득의

284) 동성 파트너 또한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section 2(8));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결정에 따라 2013년 7월 19일부터 기혼 부부에 대한 세금 조항을 민법상 파트너십 제도에 따라 등록된 파트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됨(소급적용 가능)

285)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5 Jul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75134096926%23ita_de_s_1.1.4.2.\(accessed January 31, 202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75134096926%23ita_de_s_1.1.4.2.(accessed%20January%2031,%202023))

286) 독일 「소득세법(EStG)」 제26조 제1항

287) 대부분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50%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세액에 두 배를 곱하여 최종산출세액을 계산함

- 공동 소득에 대하여는 부부를 공동 납세의무자로 봄

- 부부 중 일방의 소득이 높고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소득 분할 효과가 높아 지므로 개별과세보다 부부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지며, 소득 수준이 유사할수록 개별 과세와의 차이가 적어짐
- 다만 특정 공제와 관련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²⁸⁸⁾ 합산분할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개별과세보다 세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음
 - 이 경우 개별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Marriage Penalty)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미성년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함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인 자녀가 얻는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는 자녀합산과세제도(Zusammenveranlagung mit Kindern)가 「연방헌법(Grundgesetz)」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음²⁸⁹⁾

□ 독일은 민법상 법정재산제로 유예공동제(Zugewinnngemeinschaft)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외에 부부별산제(Gutertrennung)와 부부재산공유제(Gutergemeinschaf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⁹⁰⁾

- 유예공동제는 혼인 중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부부별산제와 유사), 이혼할 경우 혼인 중 증가한 이익을 청산하여 분할하도록 함
- 부부별산제는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정산할 필요가 없으며, 부부재산공유제의 경우 혼인 중에는 부부 일방이 취득하는 재산도 공동 소유가 되

288) 이하 기술하는 기타소득공제 대상 소득, 누진유보 적용대상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함

289) 1964. 6. 30., BVerfGE Bd. 18, S.97; 김완석(2005), p. 56.

290) 이동식(2018), pp. 100~101.

며, 이혼 시 재산을 정산하여야 함

- 부부재산제에 대한 약정은 혼인 중에도 가능하며, 언제든지 약정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근로소득세 과세유형(LohnSteuerklasse)

- 독일은 가구 형태(독신자, 기혼자, 이혼자, 한부모 가정 등)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과세 유형(LohnSteuerklasse)²⁹¹⁾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I~VI)으로 분류하고 있음²⁹²⁾
 - 유형 I: 독신자(자녀가 없는 미혼, 이혼 또는 사별한 자를 포함), 기혼자로서 개별과세를 선택한 자
 - 유형 II: 미혼,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이고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 유형 III: 합산분할과세를 적용하는 기혼부부로서 상대 배우자가 유형 V를 선택한 경우
 - 유형 IV: 합산분할과세를 적용하는 기혼부부
 - 유형 V: 합산분할과세를 적용하는 기혼부부로서 상대 배우자가 유형 III을 선택한 경우
 - 유형 VI: 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다수의 고용주로부터 급여소득이 받는 자
- 어떤 과세 유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근로소득을 받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공제 정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91) 근로소득공제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소득세 평가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님(NWB (2022), p. 2866)

292) 독일 「소득세법(EStG)」 제38b조: 과세유형 규정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세전소득만 파악하고 있을 뿐 확정 종합소득세액을 모르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기본공제액, 근로소득 보상액의 정도를 과세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결혼 유무 등에 따라 유형이 달리 적용되므로 소득이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기본공제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산청 시 차이가 발생함(서보국(2020), p. 25)

- 부부 또는 동거인이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한 경우 부부가 각자 유형 IV를 적용하거나 유형 III과 V를 조합하는 것 중에서 선택 가능함²⁹³⁾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유형III, 소득이 낮은 자가 유형V를 적용받게 됨
 - 과세 유형 III과 V의 조합은 월별 순 가치분소득 측면에서 부부간 소득차이가 최소 10% 이상인 경우에 선택할 실익이 있다고 봄²⁹⁴⁾
 -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체계상 부부간 소득격차가 크고 배우자 일방이 고소득자일수록 각자 유형 IV를 적용받을 때보다 유형 III과 V로 조합할 경우 가계 전체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²⁹⁵⁾
- 과세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어느 때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변경 신청한 과세유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²⁹⁶⁾

293) 독일 「소득세법(EStG)」 제38b조 제3항; 독일 세무플랫폼, “Kombination aus Steuerklasse 3 und 5 für Ehepaare,” <https://www.anwalt.org/steuerklasse-3-und-5/>(accessed June 12, 2023)

294)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가 각자 유형 IV를 적용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높아져 월 가치분 소득은 낮아지는 반면 과세연도 말에 환급세액이 발생함. 반대로 유형 III과 V의 조합을 선택할 경우 과세연도 말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 대한 선납세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음

295) 부부 중 유형 III을 적용받는 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유형 V를 적용받는 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증가하게 되는데, 배우자 간 소득기여도가 60:40 수준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계 전체의 월 근로소득 공제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유형 III과 V의 조합이 유리하다고 봄(Finanztip, “Welche Steuerklasse wählen ?! - Steuern sparen,” <https://community.finanztip.de/thema/7909-welche-steuerklasse-w%C3%A4hlen/>(accessed August 22, 2023))

296) 독일 「소득세법(EStG)」 제39조 제6항

〈표 IV-14〉 독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단위 가구유형

과세유형	유형
I	1. 무제한 납세의무자 중 1) 미혼자(ledig) 2) 기혼자(verheiratet),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verwitwet), 이혼한 납세자(geschieden)로서 과세유형 III과 IV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제한적 납세의무자
II	유형 I의 무제한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법」 제24b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조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 ¹⁾
III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기혼자로서 ²⁾ 유형IV에 속하지만 부부의 신청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유형V를 적용받는 경우 ³⁾
IV	기혼자로서 부부 양쪽이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자이고 과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별거생활을 하지 않는 납세자 ⁴⁾
V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기혼자로서 유형IV에 속하지만 부부의 신청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유형III의 적용을 받는 경우 ³⁾
VI	다수의 고용주(회사)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는 납세자

주: 1)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자로서 자녀 부양책임이 있는 자: 편부모, 별거부부
 2)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이혼한 납세자를 포함함
 · 이혼한 과세연도에 두 배우자는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자였고 별거생활을 하지 않았음
 · 이혼한 과세연도에 상대 배우자가 새 배우자와 재혼하여 별거생활을 하지 않으며 상대 배우자와 그의 새 배우자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3) 기혼 부부로서 배우자가 유형 III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다른 한 명은 유형V에 속하게 됨. 통상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자가 유형 III, 소득이 낮은 자가 유형V를 선택함
 4) 통상 본인과 배우자가 동등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유형 IV와 IV를 선택함
 자료: 독일 「소득세법(EStG) 제38b조 제1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330 〈표 VII-1〉; 전병욱(2019), p. 59.; steuertipps.de, <https://www.steuertipps.de/lp/steuern-steuerklassen>(accessed June 12, 2023)

다) 개별과세 또는 합산과세 선택²⁹⁷⁾

과세기간 내에²⁹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는 개별과세(Einzelveranlagung)

297) germantaxes.de, “How to File a Joint Tax Return with Your Spouse.” <https://germantaxes.de/tax-tips/marriage-joint-declaration/>(accessed June 12, 2023)

298) 부부가 공동세금신고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2월 31일에 결혼했다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공동세금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와 부부합산분할과세(Zusammenveranlagung) 중 선택할 수 있음²⁹⁹⁾

-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부부로서 모두 독일에서 무제한 납세의 의무가 있음
-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음
 - 영구적인 별거란 부부가 더 이상 결혼 동거 또는 경제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의 시도가 없는 경우 다음 해에 영구적인 별거를 하는 것으로 간주됨
 - 직업상 또는 건강상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영구적으로 별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또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이혼을 접수한 연도(Trennungsjahr)에는 공동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개별과세 및 합산분할과세 여부는 매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중 한 명이 개별과세를 선택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둘 다 개별과세됨³⁰⁰⁾
-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려면 공동신고 신청이 필요하며, 두 배우자 모두 공동세금 신고서에 서명·동의하여야 함
 - 이 때 부부는 하나의 납세자(single person)로 취급됨
 - 공동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세금평가통지서(Steuerbescheid)를 받으며, 공동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하나의 계좌로만 이체되며 분할 지급되지 않음
-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한 부부가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과세유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각각 유형 IV로 선택되며, 유형 III과 V의 조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음³⁰¹⁾
 - (유형 IV+IV 또는 유형 III+V)를 적용하다가 유형 I 또는 II에 따른 개별과세

299) 독일 「소득세법(EStG)」 제26조 제1항

300) 독일 「소득세법(EStG)」 제26조 제2항

301) 독일 「소득세법(EStG)」 제38b조 제3항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무서(Finanzamt)에 별거 또는 이혼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합산과세 선택 시 각 배우자가 부담할 소득세액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음³⁰²⁾
 - 각 배우자의 소득에서 관련비용(Werbungskosten)과 노령면제, 한부모공제 등을 차감하여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을 별도로 계산함
 - 별도로 계산한 총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특별비용(Sonderausgaben) 및 비통상적인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자녀인적공제 등을 합산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공동 과세소득(zu versteuernde Einkommen)을 계산함
 - 배우자 각각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관계없이 공동과세소득에서 차감함
 - 결정된 공동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2로 나누고, 그 금액을 배우자 각각의 소득세액으로 함

3) 과세단위 관련 세법규정

-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된 인적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제도를 살펴봄
 -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가구 상황(결혼유무, 자녀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³⁰³⁾ 결혼한 자가 합산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독신자 기준 공제금액의 2배를 적용함

가) 기본공제

- 납세자는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개인별 기본공제(Grundfreibetrag)를 받을 수

302) germantaxes.de, "How to File a Joint Tax Return with Your Spouse," <https://germantaxes.de/tax-tips/marriage-joint-declaration/>(accessed June 12, 2023)

303) Bloombergtax, "Country Guides, Germany, 6. Personal Tax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591347240>(accessed January 31, 2023)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독신자 1인당 1만 908유로(2024년 기준 1만 1,604유로)
입³⁰⁴⁾

- 기본 소득공제는 최저생계비를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며, 부부합산과 세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2배(2만 1,816유로)를 공제함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최저생계비는 기본공제가 아니라 자녀 관련 공제제도를 통하여 차감함
- (노령면제)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만 64세가 되는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임금 및 총 조정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연간 한도는 646유로, 소득에 대한 비율은 13.6% 임
- 노령면제의 한도 및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단계적으로 2040년까지 폐지될 예정임
- (한부모 소득공제) 독신 납세자는 가정에 자녀인적공제 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4,260유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240유로씩 공제금액이 추가됨³⁰⁵⁾
- 자녀인적공제 또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임

나) 특별지출공제(Sonderausgaben)

- 특별지출공제 항목³⁰⁶⁾ 중 부양가족과 관련된 자녀 보육비·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살펴봄

304)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제1항; 기본공제금액은 정부 정책 및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매년 변경됨

305) 독일 「소득세법(EStG)」 제24b조

306) 자녀 보육비·교육비 공제 외에도 연금 납입액,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 주거용 부동산 관련 모기지 이자비용 및 재산세, 자녀 양육 의무 관련 비용, 이혼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액에 대한 공제 등이 있음

- (자녀 보육비)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14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간 최대 4,000유로를 한도로 보육비(Kinderbetreuungskosten)의 3분의 2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³⁰⁷⁾
 - 14세 이상이라도 25세 이전에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든 자녀를 포함함
 - 수업료, 특수 기능 교육, 스포츠, 기타 여가 활동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자녀 교육비) 납세자는 연간 최대 5,000유로를 한도로 자녀인적공제 또는 아동수당 대상 자녀의 학교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Schulgeld)의 30% 금액을 소득공제(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³⁰⁸⁾
 - 독일 또는 EU회원국 내에 위치한 학교, 해외 독일 학교에 대한 교육비용이 포함되며, 숙박, 돌봄 및 식사에 대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
 - 한도 금액은 자녀 1명당 금액으로, 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도 1번만 지급됨
- 특별지출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36유로의 특별지출 표준공제(Sonderausgaben-Pauschbetrag)를 적용함³⁰⁹⁾
-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2배의 금액(72유로)을 적용함
- 다) 「소득세법(EStG)」 제33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 공제(Aussergewöhnliche Belastungen)
-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지출(zumutbare Belastung, 이하 '합리적 부담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³¹⁰⁾
 - 납세자가 법률적·도덕적 사유로 본인과 동일한 자산상태, 가족상태, 소득 수준에 있는 절대다수의 다른 납세자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감해주는 것임

307) 독일 「소득세법(EStG)」 제10조 제1항 제5호

308) 독일 「소득세법(EStG)」 제10조 제1항 제9호

309) 독일 「소득세법(EStG)」 제10c조

310)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조

- 즉 부양가족에 대한 불가피하고 비경상적인 지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 하는 경우를 말함
- 비경상 지출 공제대상에 유형별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 경비, 특별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합리적 부담 수준은 총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데, 혼인 여부, 자녀 수, 소득 수준 등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소득 공제액에도 차이가 발생함
 - 공제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을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례비용, 장애인을 위한 경비, 의료비(의약품 구입비, 치료비 등) 질병으로 인한 요양원 시설비·간병비용,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음³¹¹⁾
 - 다만 장애인을 위한 경비는 합리적인 부담을 초과하더라도 장애 등급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고정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³¹²⁾
 - 공제대상 금액은 납세자의 합리적 부담 수준을 초과한 지출액을 말하며, 개별과세 보다는 부부합산과세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합리적 부담 수준의 비율이 낮아 지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가하게 됨
 - 공제대상금액 = 비통상적 지출액 - (총소득금액 × 합리적 부담 수준 비율)

311) Finanzamt NRW, "Welche Kosten sind abzugsfähig? - Zumutbare Belastung," <https://www.finanzamt.nrw.de/steuerinfos/privatpersonen/aussergewoehnliche-belastungen/allgemeine-aussergewoehnliche-belastungen>(accessed June 20, 2023)

312)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조 제2a항; 동법 제33b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별 일정 금액(384~2,840유로)을 공제할 수 있음

〈표 IV-15〉 독일의 「소득세법(EstG)」 제33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 소득공제 관련
합리적 부담 수준의 비율

(단위: 유로, %)

구분		총소득금액 구간		
		15,340 이하	15,340 초과~51,130 이하	51,130 초과
자녀 ×	개별과세 ¹⁾	5	6	7
	부부합산과세 ²⁾	4	5	6
자녀 ○	자녀 2명 이하	2	3	4
	자녀 3명 이상	1	1	2

주: 1. 표 안의 수치는 총소득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함
 2. 자녀는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인적공제 또는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함
 1)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하는 경우
 2)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율 적용하는 경우
 자료: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조 제3항

라) 「소득세법(EstG)」 제33a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 공제(Außergewöhnliche Belastung in besonderen Fällen)

□ 납세자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교육 등을 위한 비용(Aufwendungen für den Unterhalt und Berufsausbildung)을 지출한 경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³¹³⁾

○ 공제 대상 지출에는 식품, 의복, 가전·가구, 의무보험 등의 일상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유지비용 등이 포함되며,³¹⁴⁾ 이는 「소득세법(EstG)」 제33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 공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EstG)」 제33a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공제에 우선하는 규정이므로 제33a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313)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a조

314) 2008년 6월 19일 자 BFH 판결(III R 57/05, Federal Tax Gazette II 2009, 365)에 따르면 「소득세법(EStG)」 제33a조 제1항의 소득공제는 생계유지를 위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비용만 대상으로 함

제33조 따른 소득공제는 신청할 수 없음³¹⁵⁾

-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비 등에 대하여 1인당 기본공제 금액(2023년 기준 1만 908유로)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³¹⁶⁾
 - 피부양자 본인이 계약자인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함³¹⁷⁾
 - 공제금액 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며 조정되며, 피부양자에게 다른 소득이나 보수가 있는 경우 연간 624유로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감소함
 - 배우자와 합산과세가 불가능하거나(예: 배우자가 독일의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한 명이 개별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계유지비에 대한 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 피부양자가 독일의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거주 상황 및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음
 - 부양가족의 비용을 여러 명의 납세자가 부담할 경우 납세자별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공제할 수 있음

□ 부양가족(Unterhaltsempfänger)은 납세자(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법적으로 부

315)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a조 제4항; Smartsteuer(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1.1. Verwandtenunterhalt,”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u/unterhaltsaufwendungen/#D063083600002>(accessed June 20, 2023); 예를 들어 양로시설(altersbedingte Heimunterbringung;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스스로 가정을 꾸리기 힘든 노인들에게 숙식·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이 용료는 「EStG」 제33a조에 따른 공제 대상이므로 「EStG」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원 비용은 「EStG」 제33a조에 따른 지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EStG」 제33조에 의한 공제 대상임(BFH 2000. 2. 24., III R 80/97, BStBl II 2000, 294; BFH Urteil vom 2011. 6. 30. - VI R 14/10)(자료: Smartsteuer(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3.1. Altersbedingte Heimunterbringung,”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h/heimunterbringung/#D063045800018>(accessed June 20, 2023))

316)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a조 제1항

317) 다만 부양가족이 납세자에 대한 피보험자로서 가입된 경우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독일 「소득세법(EStG)」 제33a조 제1항 제2문 단서), 독일 「소득세법(EStG)」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지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함께 거주하는 방계친척을 포함함³¹⁸⁾

- 법적부양의무가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과 배우자를 말하며,³¹⁹⁾ 동성파트너 또는 사실혼 배우자(Lebenspartner; 동거인)도 포함됨
 - 배우자와 영구적으로 별거하고 개별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생계유지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³²⁰⁾
- 방계친척에는 형제자매, 이모·삼촌, 조카, 사위·며느리, 처남·처제 등이 포함됨
- 피부양자는 스스로 부양할 수 없으며, 연령이나 건강상태 또는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함
 -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상태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으며,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함
 - 일반적으로 시장가치 기준으로 1만 5,500유로 이하의 자산까지는 충분한 자산이 없는 것으로 봄³²¹⁾

□ 또한 자녀인적공제 또는 아동수당 대상인 성인 자녀(volljährigen Kindes)가 해외에 거주하며 추가적인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비(Ausbildungsfreibetrag)에 대하여 연간 1,200유로 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음³²²⁾

- 한도 금액은 자녀 1명당 금액으로, 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도 1번만 지급됨

318) Smartsteuer(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Unterhaltsaufwendungen,”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u/unterhaltsaufwendungen/#D063083600001>(accessed June 20, 2023); Steuernetz, <https://www.steuernetz.de/lexikon/unterstuetzung-beduerftiger-personen> (accessed August 2, 2023)

319) 법적 부양의무는 독일 「민법(BGB; Bürgerliches Gesetzbuch)」 제160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법적 부양의무자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됨. 예를 들어 배우자는 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하며, 부모는 조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함

§§1602 (1)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만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미성년자는 자산이 있더라도 그 자산의 수입과 노동의 수입이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모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320) BFH Urteil vom 27.7.2011, VI R 13/10, BStBl II 2011, 965

321) 독일 「소득세법 시행령(EStR)」 제33a.1조; 독일 연방재정법원 판결 BStBl. II 11, 164, 2010. 5. 5.; BStBl. II 05, 483 2005. 12. 2.

322) 독일 「소득세법(EStG)」 제33a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각 부모는 공제 금액의 절반씩 공제할 수 있으며 부부 동의하에 다른 비율로 분배할 수 있음

마) 자녀인적공제

- 자녀인적공제(Kinderfreibetrag)는 아동수당(Kindergelde)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둘 중 혜택이 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자녀인적공제 및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18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음

- 직업이 없는 21세 미만의 자녀
- 교육 또는 직업 훈련 등 받고 있는 25세 미만의 자녀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인해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자녀(장애가 25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자녀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3,012유로이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공제로 1,464유로를 적용함 (총 4,476유로)³²³⁾

- 자녀인적공제는 납세자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부양자의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 자녀인적공제로 인한 혜택이 아동수당 혜택보다 큰 경우에 적용함

-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공제 금액은 2배로 적용함

- 즉 자녀인적공제와 양육 및 교육비 공제 각각 6,024유로, 2,928유로로 총 8,952유로임

- (아동수당³²⁴⁾) 자녀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납세자는 월 250유로 씩(연간 3,000유로,

323)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조 제6항

324) 아동수당(Kindergelde) 관련 제도는 독일 「소득세법(EStG)」 제62조부터 제78조까지 규정되어 있음

2023년 기준)³²⁵⁾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³²⁶⁾

- 자녀의 수 및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음
- 아동수당으로 인한 혜택이 자녀인적공제금액 클 경우에 적용함
- 한도 금액은 자녀 1명당 금액으로, 적격 수급자 1명에 대해서만 지급됨³²⁷⁾
 - 즉 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도 1번만 지급되며,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를 양육한 자에게 지급함
 - 통상 조부모 및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함

바) 기타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최대 410유로까지 공제하는 제도로 형평공제(Harteausgleich)라고도 함³²⁸⁾
 - 즉 형평공제에 따라 기타소득은 410유로까지 비과세되며, 공제금액은 기타소득 등이 820유로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됨³²⁹⁾
 - 기타소득공제의 한도는 부부합산과세와 개별과세 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정한 경우에는 부부합산과세가 아닌 개별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부 중 배우자 일방(A)이 600유로, 다른 일방(B)은 410유로의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개별과세를 선택해야 형평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게 됨
 - 합산과세 시 기타소득이 820유로를 넘기 때문에 형평공제액은 0이 됨
 - 개별과세 시 A는 220유로의 형평공제를 받을 수 있고, B는 410유로 전액에 대해 형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25) 2022년의 경우 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 219유로, 셋째의 경우 225유로, 넷째 자녀 이후는 250유로였음

326) 독일 「소득세법(EStG)」 제66조

327) 독일 「소득세법(EStG)」 제64조

328) 독일 「소득세법(EStG)」 제46조 3항; 서보국(2020), pp. 20~22.

329) 독일 「소득세법 시행령(EStDV)」 제70조

〈표 IV-16〉 독일의 소득세 형평공제액 산정 예시

(단위: 유로)

과세대상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A)	형평공제액(B)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A - B)
450	370	80
500	320	180
550	270	280
600	220	380
650	170	480
700	120	580
750	70	680
800	20	780
820	0	820

자료: 서보국(2020), p. 22.; finanztip.de, <https://www.finanztip.de/steuererklaerung/haerteausgleich/> (accessed June 13, 2023)

사) 누진유보 조항(Progressionsvorbehalt)³³⁰⁾

□ ‘누진유보 특별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세’란 확정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 결정 시 특정 비과세된 소득이 포함됨에 따라 추가되는 세액을 말함

○ 누진유보 대상이 되는 공제 또는 비과세 소득은 실업급여 I,³³¹⁾ 단기근로수당, 질병수당 등의 근로소득보상액(Lohnersatzleistungen) 성격의 급부를 말하며, 「소득세법(EstG)」상 열거하고 있음³³²⁾

330) 1974년 8월 5일 도입된 규정으로 특정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세액의 경감이 해당소득의 비과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과세소득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포함시키고 여기에 결정된 세율을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과세소득에 적용하도록 하는 장치임; 서보국(2020), pp. 23~24.

331) 법정 실업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 마지막 급여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것으로, 실직 이전 2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자격이 있음

- 연계보조금(Überbrückungsbeihilfen; Bridging Aid), 겨울근로수당, 주택수당, 실업급여II,³³²⁾ 교육수당 등 일정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 유보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이라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응능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연방 조세법원에서도 누진 유보조항을 합헌이라 봄³³⁴⁾
-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과표(Steuersatzbemessungsgrundlagen)’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임³³⁵⁾
 - 독일은 소득세에 대해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최종 소득세액을 결정함
 - (예시) 개인별 신고를 하는 자의 과세소득이 4만유로이고, 단기근로수당(비과세소득)이 1만유로인 경우 누진유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2022년 기준, 교회세 및 연대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음³³⁶⁾
 - 과세소득 4만유로에 대한 소득세액은 8,177유로임(평균세율 20.44%)
 - 누진유보 대상인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5만유로에 대한 소득세액은 1만 1,816유로로 계산됨(평균세율 23.63%, 이를 “특별세율(besonderer Steuersatz)”이라고 함)

332) 독일 「소득세법(EstG)」 32b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열거된 소득(실업급여 I, 육아수당, 출산수당, 단시간 수당 및 단기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 추가 금액, 부모수당, 군인복지법상 실업급여, 파산자금, 장애인을 위한 과도기 수당, 질병수당 및 아동질병수당, 부상수당, 감염예방법에 따른 소득 손실보상, 부분퇴직수당, 해외에서 벌어들인 일정 소득 등)을 말함

333)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구직자를 위한 주정부 지원 혜택으로, 수혜자가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격이 있으며 구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334) BFH, v. 29. 07. 2005, VI B 199/04, BFH/NV 2005, 2002~2003.; 서보국(2020), p. 24, 각주 27) 재인용

335) 독일에서 소득세액은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의 서면고지서에 의하여 확정됨(「독일 소득세법(EStG)」 제25조)

336) 독일경제저널, “Progressionsvorbehalt: Definition, Höhe und Voraussetzungen,” <https://www.handelsblatt.com/finanzen/steuern-recht/steuern/steuer-progressionsvorbehalt-definition-hoehe-und-voraussetzungen/28933838.html>(accessed June 13, 2023)

- 세무서는 과세소득 4만유로에 대하여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9,452유로와 8,177유로의 차이금액인 1,275유로를 누진유보에 따른 추가세액으로 결정함

- 이와 같은 누진유보 조항을 적용받는 소득이 많은 부부일수록 소득세액 결정 과정에서 개별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할 경우의 세 부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음

5) 소득세 과세단위 변천과정

가) 개정 연혁

- 1920년 제정된 연방소득세법에서는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의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대로 유지됨
 - 가족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그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음
 - 1921년 법 개정으로 인해 부인(妻)의 소득 중 독립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부(父)와 관계없는 사업에서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부(父)의 소득과 구별해서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나, 1934년 이러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다시 완전한 합산 비분할주의를 적용함
 - 이는 나치시대에 부인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음
-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단위에 관하여 종래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족이 아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함(부부소득 합산 비분할주의)³³⁷⁾

337) 독일 (구) 소득세법 제26조; 1941년 12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 부인 노동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21년의 규정을 일부 부활시켜 부인의 소득 중 부(父)와 관계없는 사업에서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명문화된 법 개정은 195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다만 1921년의 규정을 일부 부활시켜 부(父)와 관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부인의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로부터 제외함³³⁸⁾
- 이러한 과세제도는 당연히 결혼한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혼인징벌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됨
- 1957년 1월 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상 비분할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결혼 전의 세액보다 과중하게 되므로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며, 「연방헌법(Grundgesetz)」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함³³⁹⁾
 - 「연방헌법」 제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은 특별한 국가질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단순히 혼인 및 가족의 보호만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혼인 및 가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1958년 합산분할과세 방법인 이분이승제와 개인단위과세 중에서 납세의무자 부부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함³⁴⁰⁾
 - 이분이승제는 부부의 쌍방 소득을 합산한 후, 그 합산한 소득의 절반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 2를 곱하여 얻어진 세액을 부부의 세액으로 함
 - 즉 부부는 공동의 소득을 공동으로 소비하는 2명의 독신자처럼 취급됨

338) 독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339) 1957. 1. 17., BVerfGE Bd. 6, S.55

340)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분이승제’를 입법자에게 대안으로 제시함

나) 최근 논의 동향

- 독일의 부부합산 분할과세는 1958년 도입되었는데, 노동시장에서의 성역할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가족 및 평등정책 목표 변화에 따라 합산분할과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³⁴¹⁾
 - 특히 소득이 많은 홑벌이 부부에게 유리하며, 여성이 대부분인 2차 소득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옴
- 부부합산 분할과세 폐지와 관련된 개혁은 독일의 여러 정당³⁴²⁾에서 시도했던 바 있음³⁴³⁾
 - 독일의 우파당(AFD)은 과거 부부합산 분할과세 대신 홑벌이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만큼 추가로 공제하거나, 배우자 간 기본공제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음
 - 부부합산 분할과세 제도가 전통적인 부부관계(배우자 일방이 가사에 전업하는 형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혜택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녹색당은 수입이 적은 배우자(대부분의 경우 여성)가 더 많은 소득세 공제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제도라고 평가함³⁴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요인법(Faktorverfahren)³⁴⁵⁾을

341) DIW, "DIW Berlin untersucht Alternativen zum Ehegattensplitting," March 29, 2017, https://www.diw.de/de/diw_01.c.555170.de/themen_nachrichten/diw_berlin_untersucht_alternativen_zum_ehegattensplitting.html(accessed June 26, 2023)

342) 대표적으로 사회민주당(SPD), 좌파당(Die Linke), 녹색당(Die Grünen), 우파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등에서 시도함

343) smartsteuer, <https://www.smartsteuer.de/blog/2021/07/23/abschaffung-des-ehegattensplittings-pro-und-contra/>(accessed June 26, 2023)

344) 독일 Public-Service.Info, "Steuerklassen III und V werden abgeschafft," <https://www.oeffentlichen-dienst.de/wirtschafts-news/82-steuer/3819-steuerklassen-abgeschafft.html> (accessed June 26, 2023)

345) 분할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액 산정 시 세무서에서 배우자 또는 등록 파트너의 (추정) 연간 총 급여를 바탕으로 세금감면 승수를 적용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개별과세를 한 경우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제도임(독일 「소득세법」 제39f조, Faktorverfahren anstelle Steuerklassencombination III/V)

도입하였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크게 유리하지도 않아 신청하는 자는 적은 반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된다는 평가받고 있음

- 독일경제연구소(DIW)(2017) 연구보고서에서는 배우자 분할합산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단위과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배우자 간 양도 가능한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음³⁴⁶⁾
 - 양도 가능한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생계유지비 수준이 세금목적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며, 기존의 분할합산과세 제도의 이점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 분할합산과세를 폐지함으로써 약 15억유로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봄
 - 만약 기존 결혼에 대한 합법적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 규정을 포함한 모델을 도입한다면 추가세수는 약 5억유로로 감소할 수 있으나, 향후 세수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함
 - 또한 추가세수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확장 및 질적 향상에 사용한다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혜택 증대와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독일에서 분할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나, 개정이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는 없음
 - 최근 독일 연합협정(Koalitionsvertrag)에서 적-적-녹 정부(Ampel-Regierung: SPD, FDP, Die Grünen)는 2023년 7월 1일부터 과세 유형Ⅲ 및 V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음³⁴⁷⁾

346) DIW, "DIW Berlin untersucht Alternativen zum Ehegattensplitting," March, 29, 2017, https://www.diw.de/de/diw_01.c.555170.de/themen_nachrichten/diw_berlin_untersucht_alternativen_zum_ehegattensplitting.html(accessed June 26, 2023)

347) steuertipps.de, <https://www.steuertipps.de/steuererklaerung-finanzamt/steueraenderung/familienbesteuerung-statt-ehegattensplitting-das-steht-im-koalitionsvertrag>(accessed June 26, 2023)

- 독일경제연구소(DIW)에서는 과세유형Ⅲ 및 V의 조합을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배우자 분할합산과세 개혁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배우자 분할합산과세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³⁴⁸⁾

다. 프랑스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³⁴⁹⁾

- 프랑스는 프랑스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과세함
 - 소득세 과세체계는 프랑스 거주자³⁵⁰⁾에 대해서는 전 세계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프랑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프랑스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주어짐
 -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소득에 대해 개인단위로 부과하는 대신 가족계수(Le quotient familial, parts)를 바탕으로 세대 구성원(배우자, 시민연대계약 파트너, 자녀 또는 기타 피부양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가구(세대)단위(foyer fiscal) 임
 - 프랑스 「민법」에서 시민연대계약(pactecivil de solidarité, PACS)이란 이성 또는 동성인 두 명의 성인 자연인 사이에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음³⁵¹⁾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소득을 8가지³⁵²⁾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합산과세 체계로 운용 중임
 - 프랑스 세법은 단일법전 체계로, 소득세를 비롯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

348) SIS Verlag GmbH, "DIW Berlin: Abschaffung der Steuerklasse V kann Reform des Ehegattensplittings nicht ersetzen," <https://www.sis-verlag.de/archiv/steuerpolitik-gesetzgebung/meldungen/5237-diw-berlin-ehегattensplitting>(accessed June 26, 2023)

349) 프랑스 국세청, "Principales caractéristiques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bofip.impots.gouv.fr/bofip/6430-PGP.html/identifiant=BOI-IR-20121127>(accessed July 3, 2023)

350)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란 프랑스 내에 '세대'가 있거나 또는 '주된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함

351)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 1

352) 산업 또는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 자본소득, 근로·연금·퇴직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특정 법인 이사 보수, 양도소득

액 중 실제법에 관한 사항은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에서 규정하고 있음³⁵³⁾

- 프랑스는 1969년부터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가족계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한도 등을 대상으로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음³⁵⁴⁾

□ 프랑스의 소득세액 결정 단계별 흐름을 [그림 IV-6]에서 정리함³⁵⁵⁾

- 제1단계: 총소득(Revenu brut global)의 산출
 -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한 세대구성원의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revenu brut)에서 각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charges)을 공제하여 각 소득별 순소득 산출하며, 해당 비용에는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공제 등이 있음³⁵⁶⁾
- 제2단계: 순종합소득(Revenu net global)의 산출
 - 각 소득 유형별 과세체계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개인별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각 유형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사회보장기여금 및 공제비용을 차감하여 순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함
- 제3단계: 과세표준(Revenu net imposable)의 산출³⁵⁷⁾
 - 결손금 및 특별비용에 대한 공제를 차감한 후 순종합소득이 산정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제(abattements spéciaux)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순소득인 과세표준(Revenu net imposable)을 산출함

353) 참고로, 신고와 납부, 세무조사 등 절차적인 내용은 조사절차법(LPF)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354) 권성준·허운영·이형민,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p.144~145.

355) 프랑스 경제·재정부, “Revenu brut global, revenu net imposable,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quelles différences?,”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evenu-imposable-revenu-fiscal-reference#\(accessed July 3, 2023\)](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evenu-imposable-revenu-fiscal-reference#(accessed%20July%203,%202023))

356) pwc, “Individual-Deductions,” <https://taxsummaries.pwc.com/france/individual/deductions> (accessed July 3, 2023)

357) 프랑스 정부, “Impôt sur le revenu - Calcul de l'impôt,”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particuliers/impot-revenu-calcul-impot> (accessed July 3,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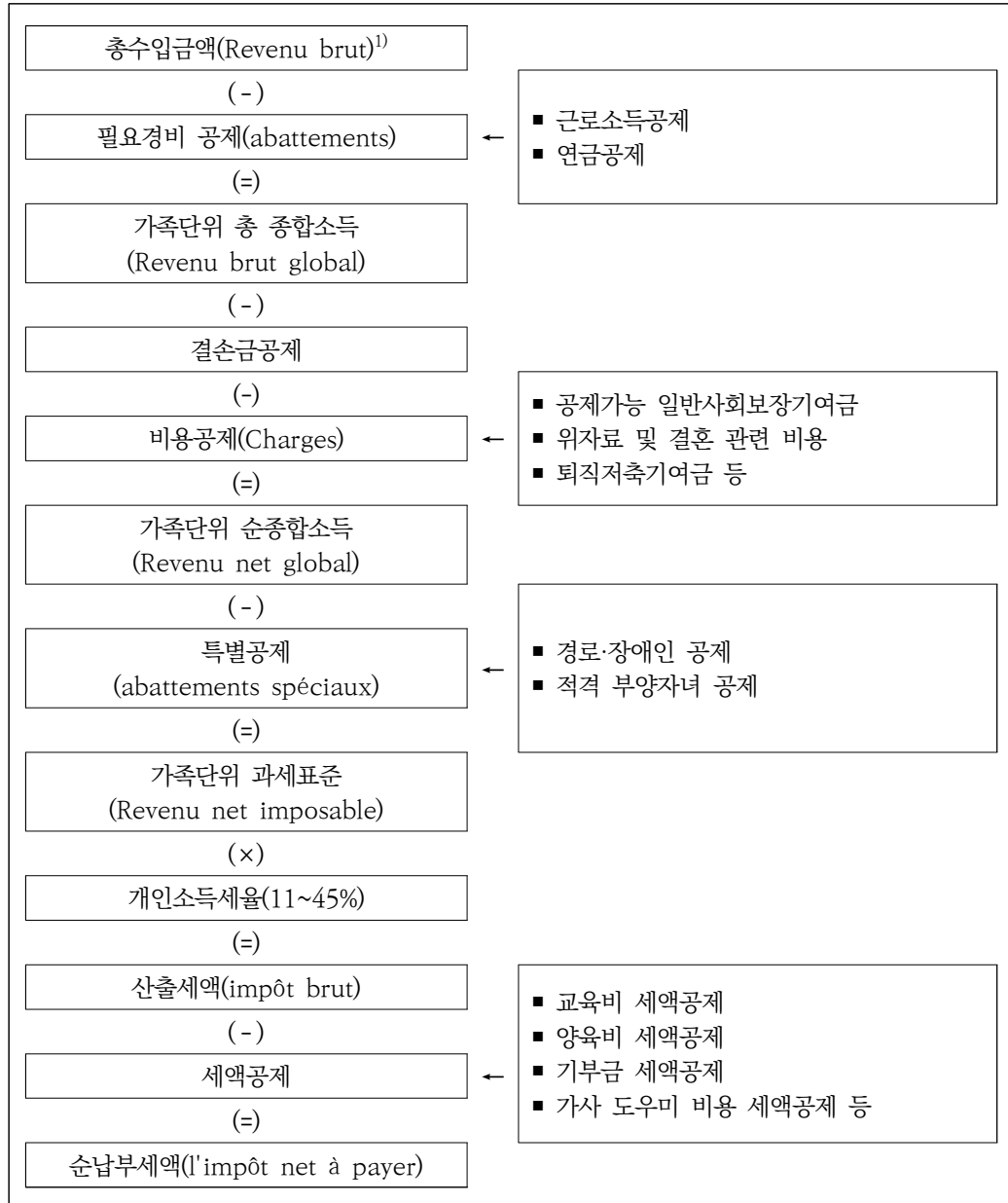
- 프랑스의 인적공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로·장애인 소득공제, 적격 부양자녀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등이 있음
- 제4단계: 세액(impôt brut)의 산출
 -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월결손금 및 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한 과세 대상 순소득(Revenu net imposable)을 가족계수(parts)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여 1 part당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세대가 총 부담해야 할 세액을 산출함
- 제5단계: 순납부세액(l'impôt net à payer)의 계산³⁵⁸⁾
 - 산출세액이 산정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본인 또는 가족단위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로는 크게 가족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재택 고용서비스, 개인 지원으로 구분됨³⁵⁹⁾
 - 한편 세액공제는 환급형과 비환급형 세액공제방식으로 운영되며, 환급형 세액공제로는 양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 등, 비환급형 세액공제로는 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음³⁶⁰⁾

358) 프랑스 경제·재정부, “Particuliers: les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auxquels vous pouvez prétendre,”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financement-aides-credits-impot> (accessed July 3, 2023); 참고로, 프랑스는 당초 비거주자에 한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5년 12월 17일 법률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제도를 폐지하였음

359) 프랑스 국세청, “JE DÉCLARE MES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je-declare-mes-reductions-et-credits-dimpot>(accessed July 5, 2023)

360)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Déduction, réduction d'impôt, crédit d'impôt: quelles différences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23>(accessed July 8, 2023)

[그림 IV-6]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 1) 비과세 소득 제외
 자료: 프랑스 소득세 신고서(Formulaire 2042: Déclaration de revenus)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소득세 과세단위³⁶¹⁾

가) 개요

-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조세일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족단위로, 가족단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구성원(납세자의 상황과 부양가족)을 고려한 가족계수를 바탕으로 부과함³⁶²⁾
 - 가구단위 과세에 따라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가족계수(N)’로 나눈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가족계수(N)=1’ 당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가족계수(N)’를 곱함으로써 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식으로, 이를 “N분N승제”이라고 함
 - 1945년 12월 31일 도입된 N분N승제는 기존 부양자녀 수에 따른 공제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N분N승제의 본질은 누진과세의 완화임
- 프랑스에서는 「민법」상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가족단위로 담세력을 파악하는 세제가 존속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음
 - 「민법」에서는 법정재산제로서 혼중취득재산공동제를 규율하면서도 부부재산 약정을 통하여 약정공동재산제로서 동산 및 혼후취득재산공동제 또는 포괄공동제, 별산제, 혼중취득재산참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⁶³⁾

361) 프랑스 국세청, “Règle de l'imposition par foyer fiscal,” <https://bofip.impots.gouv.fr/bofip/1907-PGP.html/identifiant=BOI-IR-CHAMP-20-20120912>(accessed July 6, 2023)

36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p. 351.;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93, §194

363) 김현진,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프랑스 부부재산제와 청산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제695권, 2021, p. 137.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1) 소득세 합산대상 및 소득의 범위

- 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³⁶⁴)하며 가족단위 합산과세 구성원은 납세자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자연인 등³⁶⁵)으로 구성됨³⁶⁶)
- 소득세 과세단위 합산대상 소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소득이 포함됨
 - 납세자의 소득(기혼자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의 경우 배우자와 파트너 포함)
 -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미혼 자녀의 소득³⁶⁷)
 - 부모와의 합산과세를 선택한 자녀의 소득
- 기혼부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시민연대계약(PACS)도 포함됨³⁶⁸)
- 부양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18세 미만 자녀, 21세 미만 또는 학업 중인 25세 미만 성인자녀,³⁶⁹) 장애인³⁷⁰)으로 과세단위에 속한 경우를 말함
 -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상 피부양자로 간주되거나 가족단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음³⁷¹)
 -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64)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6

365) 부양가족이 있거나 없는 독신자, 배우자,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은 파트너, 미성년 자녀, 기타 부양가족을 말함

366) 프랑스 국세청, “Principe de l'imposition par foyer fiscal,” <https://bofip.impots.gouv.fr/bofip/348-PGP.html/identifiant=BOI-IR-CHAMP-20-10-20170406>(accessed July 5, 2023)

367) 위탁아동 포함

368) 동거하는 부부의 각 구성원은 과세 연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프랑스 공공서비스국, “Quelle déclaration pour un couple en concubinag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62>(accessed July 7, 2023))

369) 원칙적으로 18세가 된 성인자녀는 부모와 분리하여 개인적으로 과세됨

370)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자로 혈연관계, 연령 또는 소득요건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는 장애인 피부양자의 소득을 자산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371)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96조, 제196조 A bis, 제6조 제3항

-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 기혼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 장애(CMI-invalidity)라고 표시된 카드를 소지하고 함께 거주하는 자
- 세금목적상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함
 - 다만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선택을 통하여 부모와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³⁷²⁾
 - 결혼한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독립된 가구로 간주함
- 18세 이상이 되는 자녀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성인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과세단위에 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³⁷³⁾
 - 21세 미만 성인자녀
 - 학업 중인 25세 미만의 성인자녀³⁷⁴⁾
 -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성인자녀
 -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 중인 성인자녀
-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아니더라도 ‘장애’가 표시된 이동성 카드를 소지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가족단위에 포함할 수 있음³⁷⁵⁾
 - 동일인이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계수와 노인부양비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는 없음

37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분리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그 내용을 부모의 소득세 신고서에 표기하고 서명하여야 함

373) 자녀를 과세단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음

374)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375) 프랑스 공공서비스국, “Impôt sur le revenu - Personne invalide à charg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87>(accessed July 4, 2023)

(2) 가족단위 합산과세의 예외³⁷⁶⁾

- 기혼부부의 배우자와 시민연대계약(PACS) 파트너는 결혼한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개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기혼부부의 배우자와 시민연대계약(PACS) 파트너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각각의 소득과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단일 공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혼(PACS 포함) 부부는 한 가구를 구성하며 모든 소득에 대한 공동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³⁷⁷⁾
 - 부부별산제를 선택하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혼소송 중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거 중인 경우
 -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경우가 아닌 상당기간 가정을 포기하고 각자 독립된 경제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

- 가족계수 결정 시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아 과세단위에 포함하여야 하나 성년 자녀, 기혼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단위 합산과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 (1) 21세 미만 (2) 25세 미만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3) 연령에 관계 없이 군복무를 수행하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가족단위에 포함함

376) 프랑스 국세청, “Dérégations facultatives à la règle de l'imposition par foyer fiscal”, BOI-IR-CHAMP-20-20-20 - IR - Champ d'application et territorialité - Dérégations facultatives à la règle de l'imposition par foyer fiscal | bofip.impots.gouv.fr(accessed July 6, 2023)

377)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6조 제5항

수 있음

- 결혼한 자녀는 연령에 관계 없이 독립된 가구로 간주하므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1) 21세 미만 (2) 25세 미만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연령에 관계 없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부모의 과세단위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음³⁷⁸⁾
-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부모의 과세단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³⁷⁹⁾하나 결혼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부모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음

(3) 가족계수

- 소득세액을 설정하는 기준인 가족계수(parts)는 가구별 부담능력(부양가족의 수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됨³⁸⁰⁾
-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계수는 2023년 6월 기준 <표 IV-17>과 같음
 - 가족계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는 각각 1단위로, 기본 가족지수(부부)는 2임
 - 그리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part가 부여되어 부양자녀 2명까지는 0.5part씩, 3명 이상부터 1part씩 증가함³⁸¹⁾
- 가족계수는 한부모가구, 장애인 등³⁸²⁾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part를 추가적으로 부여함³⁸³⁾
 - 미성년 자녀 등 한 명 이상의 부양자녀(enfants à charge)가 있는 한부모가구

378) 원칙적으로 결혼했거나 동거 관계에 있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자녀는 가족계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1인당 6,368유로(2022년)를 소득공제함

379)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380)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Impôt sur le revenu: déclaration et revenus à déclare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47>(accessed May 4, 2023)

381)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94조: 별거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공동양육권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계수는 각각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됨

382) 퇴역군인

383)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95

- 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part가 0.5씩 부여됨
-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등이 장애가 표시된 이동성 카드를 소지한 경우 등³⁸⁴⁾은 0.5part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다만 자녀 수가 많은 기혼 부부에게 세금절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하 후술하기로 함

〈표 IV-17〉 프랑스의 기본 가족계수(parts) 예시(2023년 6월 기준)

부양가족 수	독신 등 ¹⁾	부부 ²⁾
0명	1	2
1명	1.5	2.5
2명	2	3
3명	3	4
추가 자녀당	1	1

주: 1. 장애, 한부모가구 등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part를 부여함
 2. 별거 또는 이혼 등으로 공동양육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계수는 각각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됨
 1) 이혼, 별거 등 포함
 2) 연대시민계약(PACS) 포함

자료: 프랑스 재무부, "Quotient familial et 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accessed June 3, 2023)

(4) 가족단위 합산과세에 따른 세액의 계산방식³⁸⁵⁾

-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각 가구구성원 개인의 소득을 소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함
-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revenu brut)에서 각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charges)을 공제하여 각 소득별 순소득 산출하며, 해당 비용에는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공제 등이 있음

384) 40% 이상의 장애에 대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85) 프랑스 내무부, "Impôt sur le revenu - Calcul de l'impôt,"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particuliers/impot-revenu-calcul-impot>(accessed July 7, 2023)

- 각 소득 유형별 과세체계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개인별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각 유형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사회보장기여금 및 공제비용을 차감하여 순종합소득금액(Revenu net global)을 산출함
- 각 개인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가족단위의 소득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으로 확정하여야 함
- 직전연도에 발생한 가족단위 구성원의 결손금은 동일한 성격의 소득 및 당해 연도 다른 구성원의 소득과 상계함
- 총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³⁸⁶⁾은 자산 및 투자소득에 대한 일부 일반사회보장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위자료 및 결혼 관련 비용 기여금,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주거비, 특정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이 있음³⁸⁷⁾
- 일반 사회보장기여금(CSG)³⁸⁸⁾의 부분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³⁸⁹⁾
 -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위자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음³⁹⁰⁾
 -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조비(생계유지비)를 대상으로 1인당 2023년 기준 3,786유로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³⁹¹⁾
 - 다만 수령인의 소득이 1인 기준으로 1만 1,441.49유로(부부 1만 7,762.96유로)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결손금 및 특별비용에 대한 공제를 차감한 후 순종합소득이 산정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제(abattements spéciaux) 등을 차감하여

386) 각 소득별 순소득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은 해당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등을 말하고, 순종합소득 산출 시 적용되는 비용은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비용을 말함

387) 프랑스 국세청, "IR - Base d'imposition - Charges déductibles du revenu brut global - Conditions générales de déductibilité,"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49-PGP.html/identifiant=BOI-IR-BASE-20-10-20130701>(accessed August 29, 2023)

388) 누진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일반사회공헌금은 납부 연도의 전체 과세소득에서 일부 공제(최대 6.8%) 받을 수 있음

389)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CSG는 해당 소득에서 직접 공제됨

390)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56조 (II) 2°

391)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56 (II) (2° ter)

과세대상 순소득인 과세표준(Revenu net imposable)을 산출함

-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적공제는 매우 제한적인 바, 대표적으로 경로·장애인 소득공제가 있음³⁹²⁾
 - 경로·장애인 소득공제란 세대 내에 장애인이 있거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납세자 또는 합산과세 시 부부 중 한 명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2022년 기준 1인당 최대 2,62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경로·장애인 인적소득공제는 순종합소득(revenue net global)의 수준에 따라 축소³⁹³⁾되어 순종합소득이 2만 6,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
 - 경로·장애인 소득공제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65세 이상인 구성원이 2명인 기혼 또는 PACS 부부의 경우 두 배가 적용됨
- 이 외에 기타 특별공제로는 적격 성년자녀³⁹⁴⁾에 대한 특별소득공제가 있음
 - 자녀가 결혼했거나 미혼,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합산과세 시 가족계수의 적용이 아닌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³⁹⁵⁾
 - 과세연도 2022년 기준 공제액은 6,368유로로 설정되어 있음³⁹⁶⁾
 - 적격 성인자녀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는 가족계수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세대상 순소득(Revenu net imposable)을 가족계수(parts)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 part당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적용한 가족계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함

392)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57 bis

393) - 1만 6,410유로 미만인 경우 공제액: 1인당 2,620유로
 - 1만 6,410유로 초과 2만 6,400유로 미만인 경우 공제액: 1인당 1,310유로

394) 결혼(PACS 포함)한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합산과세를 요청할 수 있음. 그 요건은 21세 미만, 25세 미만으로 학업을 계속 중이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 중인 자녀가 결혼(PACS 포함)하였거나 미혼, 이혼 또는 별거 중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함

395) 프랑스 재정경제부, “Le rattachement d'un enfant majeur au foyer fiscal, quels avantages?,”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attachement-foyer-fiscal-enfant-majeur> (accessed July 7, 2023); 위자료 공제(déduc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를 요청할 수 없음

396)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96B

- 소득세는 0~45%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이며, 2011년 이후로 고소득자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최대 4%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함³⁹⁷⁾
 - 과세소득이 25만유로 초과 50만유로 이하(부부합산신고 50만유로 초과 100만유로 이하)의 경우 3%, 50만유로(부부합산신고 100만유로) 초과분에 대하여 4%를 적용함

〈표 IV-18〉 프랑스의 과세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22년	2023년	
~10,225	~10,777	0
10,226~26,070	10,778~27,478	11
26,071~74,545	27,479~78,570	30
74,546~160,336	78,571~168,994	41
160,337~	168,995~	45

주: 1.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바, 과세소득이 25만유로 초과 50만유로 이하(부부의 경우 50만유로 초과~100만유로 이하)의 경우 3%, 50만유로(부부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분에 대하여 4%를 적용함

2. 신고연도 기준임

자료: 프랑스 재무부,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tranches-imposition-impot-revenu>(accessed May 4, 2023)

-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도는 자녀 수가 많은 기혼 부부에게 세금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의 한도(Plafonnement des effets du quotient familia)를 두어 이를 보완하고 있음³⁹⁸⁾

397) 프랑스 재무부,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tranches-imposition-impot-revenu>(accessed July 4, 2023)

398)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Impôt sur le revenu - Quotient familial d'une personne en concubin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088>(accessed July 4, 2023); 자녀를 공동양육할 권리가 있는 경우 각 부모에 대해 한도가 반으로 감소하여 자녀당 839유로가 됨

- 가족계수와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2023년 기준 추가 가족계수 0.5part당 1,678유로임
 - 한편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장애인과 같은 개인상황에 따라 한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³⁹⁹⁾
 -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첫 번째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 3,959유로를 한도로 함⁴⁰⁰⁾
 - 장애인인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673유로의 추가 감면한도가 적용되어 한도는 2023년 기준 추가 가족계수가 0.5part당 3,351유로가 됨
 - 감면 한도는 납세자의 개인상황 및 부양자녀에 따른 가족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실제 산출세액과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거나 독신 등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족계수 유형별 소득세 감면 한도 적용 전 세액을 비교하여 적을 경우 적용함
- 예를 들어 3명의 부양자녀를 둔 부부의 비용 공제 후 과세대상 소득이 8만유로일 때, 부부가구의 2023년 기준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실제세액) 3명의 부양자녀를 둔 부부가구의 가족계수는 일반적으로 4이며, 실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 $80,000 \div 4 = 20,000$ 유로
 - 실제 산출세액: $[10,777 \times 0\% + (20,000 - 10,777) \times 11\%] \times 4 = 4,058.12$ 유로
 - (비교세액)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교세액은 다음과 같음
 - 부양자녀 3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족계수 2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 부부는 더 높은 과세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됨
 - 과세표준: $80,000 \div 2 = 40,000$ 유로
 - 비교 산출세액: $[10,777 \times 0\% + (27,478 - 10,777) \times 11\% + (40,000 - 27,478) \times 30\%] \times 2 = 11,187.42$ 유로

399)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97 I. 2.

400)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Impôt sur le revenu - Quotient familial d'un parent isol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5120/personnalisation/resultat?lang=&quest0=0&quest1=1&quest2=1&quest3=1&quest=\(accessed July 4, 2023\)](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5120/personnalisation/resultat?lang=&quest0=0&quest1=1&quest2=1&quest3=1&quest=(accessed July 4, 2023))

- (납부세액)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실제 산출세액이 가족계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한도 적용 전 비교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감면 한도인 6,712유로를 적용하여 $11,187.42 - 6,712 = 4,475.45$ 유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됨
- 프랑스는 가족단위 과세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산출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⁴⁰¹⁾
 - 본인 또는 가족(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특정 지출에 대하여 가족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개인 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운용 중임⁴⁰²⁾
 - 가족 관련 세액공제는 등록금 세액감면, 보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주거주지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주택 세액공제,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장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음
 - 프랑스는 환급형과 비환급형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음⁴⁰³⁾
 - 환급형 세액공제는 보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비환급형 세액공제는 등록금 세액감면,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1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⁴⁰⁴⁾
 - 종합한도 적용대상 공제는 보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 또는 공익 목적, 비과세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종합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401) 프랑스 경제·재정부, "Particuliers: les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auxquels vous pouvez prétendre,"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financement-aides-credits-impot> (accessed July 6, 2023)

402) 프랑스 국세청, "JE DÉCLARE MES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je-declare-mes-reductions-et-credits-dimpot> (accessed July 6, 2023)

403)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Déduction, réduction d'impôt, crédit d'impôt: quelles différence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23> (accessed July 6, 2023)

404)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200-0A

- 종합한도는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세금가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⁴⁰⁵⁾
- 프랑스는 총소득에 대한 세액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세액을 감면(décote)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임⁴⁰⁶⁾
 - 가족계수의 적용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후 세액감면·공제를 고려하기 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조정함
 -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과세연도 2022년 기준으로 소득세액이 독신 1,840유로, 부부합산 3,045유로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⁴⁰⁷⁾
 - 감면세액은 과세연도 2022년 기준으로 독신 833유로(부부공동 1,378유로)에서 총소득에 대한 세액의 45.25%를 차감한 금액임
 - 예를 들어 총소득세가 1,400유로인 합산과세대상 부부의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후 부담세액은 $1,400 - [1,378 - (1,400 \times 45.25\%)] = 655.50$ 유로임
- 납세자의 세액공제 전 총 산출세액이 61유로 이하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⁴⁰⁸⁾

3) 주요 변천과정 및 논의동향

가) 주요 변천과정

- 프랑스는 1945년 12월 31일⁴⁰⁹⁾ 가족단위 합산분할과세를 기본으로 하여 세대

405)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En quoi consiste le plafonnement global des niches fiscale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179>(accessed July 6, 2023)

406) 프랑스 경제·재정부, “Pouvez-vous bénéficier de la décot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decote-impot-revenu>(accessed July 6, 2023)

407) 분리과세 대상인 배우자 및 PACS 파트너는 감면 적용 및 계산에 있어서 독신 납세자로 간주됨

408)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657-1 bis조

409) Loi n° 45-0195 du 31 décembre 1945 portant fixation du budget général(services civils) pour l’exercice 1946

(foyer)의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른 가족계수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는 N분N승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1914년 소득세 도입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일정한 재산을 부부의 공통 재산으로 정하는 부부공유재산제 하에서 세대합산비분할을 채택하였음
 - 1930년대에 저출산 대책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음
 - 1939년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이 협의되기 시작되어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법(Code de la famille)」이 제정되었음
 -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드골 장군이 도입한 가족계수는 다자녀를 둔 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이후 프랑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음
 - 프랑스는 1945년 N분N승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제 내에 인구정책적 요소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N분N승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지만 가족을 지원하는 프랑스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가족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주된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945년 도입 당시 가족계수는 독신자 1. 기혼부부 2. 자녀 1명당 0.5를 적용하여 부양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음
 - 1970년대에 인구문제가 다시 커다란 정책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1980년대에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었고, 그 결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족계수를 달리 설정하게 되었음
 - 과세연도 1979년에는 다섯 번째 자녀부터 가족계수 1을 적용하였고, 1980년 이후로는 현재와 동일한 셋째 자녀부터 1을 적용하기 시작함
 - 한편 1974년에는 성년이 되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하향하면서 부양자녀의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

- 1981년에는 가족계수 적용에 따른 세 부담 경감액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었음
 - N분N승제가 고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액에 대한 한도액이 설정되었음
 - 이후 한도액은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계속 인상되다가 1998년 감면액 한도를 하향 조정⁴¹⁰⁾하였고, 2001년에는 그 수준을 크게 인하하였음
- 2004년부터는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은 커플에 대해서도 세제상 기혼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었음
 - 1999년에 민법상 시민연대계약(PACS)⁴¹¹⁾이 제정됨
- 2012년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가족계수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대신 소득세 감면 한도를 2회에 걸쳐 하향 조정하여 가족계수의 영향을 완화하였음⁴¹²⁾

나) 최근 논의동향

- 프랑스의 가족정책 중 N분N승제의 가족단위 과세가 프랑스 출산율 제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어 N분N승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 반면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노동과 육아의 양립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출생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견이 있음⁴¹³⁾

410) Loi n° 98-1266 du 30 décembre 1998 de finances pour 1999; Loi n° 2001-1275 du 28 décembre 2001 de finances pour 2002

411)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연대시민계약(PACS)이란 이성 또는 동성인 두 명의 성인 자연인 사이에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혼인관계가 없는 이성 또는 동성의 커플에게 민사계약에 근거한 법적 신분을 주는 것을 말함

412) 0.5part당 2011년 2,336유로 → 2013년 2,000유로 → 2014년 1,500유로; Loi n° 2012-1509 du 29 décembre 2012 de finances pour 2013

413) 神尾真知子, 「フランス—高出生率の政策的背景—」, 『統計』 71(10), 2020. 10., pp. 12~18.

- 한편 Landais(2004)는 세제상 N분N승제에 의한 금전적 혜택은 출생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음⁴¹⁴⁾
 - 또한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우대조치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점유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N분N승제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 이외에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배우자의 노동공급(노동참가 유무 및 노동시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⁴¹⁵⁾
 - Carbonnier(2008)는 N분N승제 하에서는 개인단위로 부과되는 것보다 소득자 이외의 이차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가 여부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혼 여성의 노동시간도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⁴¹⁶⁾
 - Buffeteau and Echevin(2003)은 2005년 자녀가 있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계수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세제 개정이 결혼행태와 노동공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세제 개정으로 인하여 결혼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⁴¹⁷⁾

- 프랑스의 N분N승제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는 제도임에도 1945년 최초 실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음

414) Camille Landais, "Le quotient familial a-t-il stimulé la natalité française?", *Économie publique*, n° 13-2003/2, 2004.

415) Guillaume Allegre & Hélène Périvier & Muriel Pucci, "Imposition des couples et statut marital -Simulation de trois réformes du quotient conjugal en France," *ECONOMIE ET STATISTIQUE*, 2021.

416) Clément Carbonnier, "Spouse labor supply: fiscal incentive and income effect, evidence from French fully joint income tax system," *THEMA Working Paper*, n° 2008-20, 2008.

417) Sophie Buffeteau and Damien Echevin, "Taxation, marriage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France," 2003. 6.

- 그 배경으로는 프랑스에서는 인구정책이 전통적으로 지지되어 오고 있으며, 민법상 부부공유재산제를 유지해 온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3. 국제비교

가. 소득세 과세단위 개요

- <표 IV-19>에서는 조사대상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단위와 그 특징, 민법상 부부재산제를 정리함
 - (소득세 과세단위) 조사대상국 중 한국, 일본, 영국은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는 소비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음
 - 미국과 독일은 소비단위를 부부로 보며 납세자가 부부단위합산과세와 개인단위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은 소득세 신고유형을 독신자, 세대주, 부부개별, 부부합산 4가지로 구분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복수세율표를 적용하며, 독일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개별신고 2가지 중 선택가능하며 단일세율 체계임
 - 프랑스는 소비단위를 가족으로 보아 가족계수를 통한 가족단위과세(소위 N분N 승제)를 채택하고 있음
 -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한 한국, 일본, 영국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소비단위를 채택한 미국은 주(州)에 따라 다르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민법상 부부공유제가 인정됨
 - 미국은 주(州)에 따라 부부별산제 또는 부부공유제가 적용됨
 - 독일은 유예공동제를 원칙으로 하나 약정에 따라 부부별산제 또는 부부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음

- 가족단위과세를 채택한 프랑스는 민법상으로도 부부공유제를 원칙으로 함

〈표 IV-19〉 국가별 소득세 과세단위와 특징

구분		소득세 과세단위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인 단위	한국	개인단위과세	부부별산제 원칙 ¹⁾
	일본	개인단위과세	부부별산제
	영국	개인단위과세	부부별산제 ²⁾
소비 단위	미국	납세자가 부부단위와 개인단위 중 선택 (복수세율표) - 신고유형: 세대주/독신자/부부합산/부부개별	부부별산제 또는 부부공유제 ³⁾
	독일	선택적 이분이승제(단일세율표) - 신고유형: 개별신고/부부합산신고	유예공동제 원칙 ⁴⁾
	프랑스	N분N승제(가족계수제)	부부공유제

주: 1) 단,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부부재산제 선택 가능

2)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부재산 관계는 개별 법률규정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됨

3) 주(州)별로 상이함

4) 유예공동제는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부부별산제와 유사하나 혼인 관계 종료 시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독일은 혼인 기간 중 언제라도 부부간 약정에 따라 부부별산제 또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음

자료: 본문 내용 참조하여 저자작성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 조사대상국 모두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의 가구 상황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선택한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에 따라 조세제도의 특징이 존재함

○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는 최저생활비 보장, 부양가족 수에 따른 납세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영국은 통상 가구원 중 소득이 높은 납

- 세자에게 공제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가구 차원의 세 부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다만 저소득층 지원세제 등과 같은 특정 공제제도의 경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의 소득 또는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의 지급액이 결정됨
- 소비단위과세를 채택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는 가구 상황에 따른 세 부담을 과세단위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음
- 미국과 독일은 가구 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단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단위에 따라 각종 공제제도 적용 방법을 달리 규정함
 - 선택적 합산과세이나 복수세율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고유형을 4가지(독신자, 세대주, 부부합산, 부부개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공제금액 및 한도를 다르게 적용함
 - 다만 부부 합산신고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과세소득 구간이나 공제제도에서 공제금액이나 기준소득, 공제한도 등을 독신자 또는 부부개별 신고 시 적용되는 금액의 2배가 되는 구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혼 보너스 또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소득 구간 등이 조정되고 있음
 - 독일은 전통적인 이분이승제 방식의 선택적 합산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신고유형은 개별신고와 합산신고 2가지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개별신고 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금액의 2배가 적용됨
 - 다만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특정 항목(예: 자녀보육·교육비 공제, 특별지출공제 등)과 아동수당은 부부합산과세 시에도 2배가 적용되지 않음
 - 프랑스는 가족단위 합산과세제도 하에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통하여 가구 상황에 따른 담세력 차이를 고려하고 있음
- 이하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된 주요 조세제도로써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와 저소득층 근로 및 자녀양육 지원세제를 국가별로 비교함
- 인적공제는 가구형태나 과세단위와 관련성이 높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

본 인적공제⁴¹⁸⁾를 중점적으로 비교함

- 저소득층 근로 및 자녀양육 지원세제의 경우 그 지급액이 개인이 아닌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 형태, 자녀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과세단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

1) 인적공제

- 조사대상국 중 모두 인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식은 차이가 있음
 -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미국은 인적공제 제도가 있으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단됨⁴¹⁹⁾
 - 조사대상국 모두 경로자,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대상과 적용방식(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은 상이함
 -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은 특수한 가구 상황을 공제제도 또는 소득세 과세단위 체계를 통하여 고려하고 있음
 - 한국, 일본, 영국, 독일은 공제제도를 통하여 고려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세 과세단위 체계 내에서 고려함
 - 미국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는 별도 신고유형(세대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계수를 통하여 한부모 요소를 반영함
-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모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표 IV-20>에서 국가별 기본 인적공제 제도를 정리함

418) 기본인적공제는 납세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부양함에 따라 납세자의 담세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납세자의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임

419)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세금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시행에 따른 조치

- 우리나라와 일본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일본은 16세 미만 자녀는 재정정책인 아동수당을 적용하므로 세법상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음
- 영국은 납세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허용되나, 결혼한 부부가 모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본공제의 10%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결혼공제)
- 독일의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는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합산신고 시 자녀인적공제는 2배로 인정함
- 프랑스는 배우자, 부양가족 수 등 가구상황에 따라 가족계수를 적용하므로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가 없음
 - 가족계수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1단위, 부양자녀 2명까지는 각 0.5단위, 3명 이상부터는 1단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추가 0.5단위를 인정함⁴²⁰⁾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득공제를 두고 있으며 가족계수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420)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는 가족계수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 경감을 제한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두고 있음

〈표 IV-20〉 국가별 기본 인적공제 제도

구분	기본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그 외 부양가족
한국	기본공제 (1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일본	기초공제 (최대 48만엔)	배우자공제 (최대 48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최대 38만엔)	부양공제 (최대 63만엔)	부양공제 (최대 58만엔)
영국 ¹⁾	개인공제 (1만 2,570파운드)	- ²⁾	-	-
미국 ³⁾	-	-	-	-
독일	기본공제 (1만 908유로)	기본공제 ⁴⁾ (1만 908유로)	자녀인적공제 (1명당 최대 4,476유로) ⁵⁾	부양가족 생계유지비 지출공제 (비경상 지출공제) ⁸⁾
프랑스 ¹⁾	- ⁶⁾	- ⁶⁾	- ⁶⁾⁷⁾	- ⁶⁾

주: 1. 부양가족 등이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 영국과 프랑스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제도가 없으며, 프랑스의 경우 인적공제 대신 가족계수에 반영함
- 2) 단 부부의 과세소득이 모두 기본세율(20%) 구간 이내인 경우 결혼공제(1,260파운드)로 배우자에게 공제금액 이전 가능
- 3) 미국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적공제를 중단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은 4,050달러임
- 4) 독일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는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5) 자녀의 최저생계비, 양육 및 교육비 요소를 고려한 금액이며, 부부 합산신고 선택 시 2배(8,952 유로)를 적용함
- 6) 프랑스는 인적공제 대신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를 가족계수(N)에 반영하며, 가족계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 경감을 제한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두고 있음
- 7)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득공제를 두고 있으나 가족계수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8) 독일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 지출한 생계유지비 등을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한도로 허용하며, 부양가족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한도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작성

2) 부양가족 범위

- 조사대상국 중 영국을 제외한 국가는 모두 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일정 범위 내의 친족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나 구체적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영국은 부양가족의 일반적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 「민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판례법에 따르며, 세법상 공제 항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세자의 담세력에 고려되는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장애인을 인정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 프랑스는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을 가족계수에 포함하는 부양가족으로 봄
- 부양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프랑스의 경우 가족계수)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통상 연령, 소득, 거주⁴²¹⁾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조사대상국 모두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학업·요양 등의 형평상 배우자, 부양가족 등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봄
 - 조사대상국 모두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 요건이 없으며, 자녀 및 그 외의 부양가족은 정해진 연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이 없으며, 소득이 있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 독일, 프랑스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
 - 한국과 독일(25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한함)은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프랑스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일본은 사업 전종자 관련 추가 요건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령, 소득, 거주 요건 외에 부양비용 부담률, 부양인의 국적 등의 추가 요건을 두고 있음

421) 거주 요건은 생계를 함께하는지 또는 실질적 부양을 하는지를 말함

〈표 IV-21〉 국가별 세법상 부양가족 등의 범위와 요건

		한국	일본	영국 ¹⁾	미국 ²⁾	독일	프랑스
범위	배우자	○	○	○	○	○	○ ⁴⁾
	자녀	○	○	○	○	○	○
	그 외	직계존속,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6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족, 위탁아동, 양호위탁노인	장애인	형제자매, 삼촌, 숙모, 조카 등(사촌, 위탁아동 제외)	직계존속, 방계친족	장애인
요건	소득	· 총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	· 총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	-	· 총소득금액 일정금액 미만(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 제외)	· 스스로 부양할 수 없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자	- ⁵⁾
	연령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 연령요건×	· 16세 이상 ²⁾	-	· 19세 미만(풀타임 학생의 경우 24세 미만)	· 18세 이하(직업 없는 경우 21세, 교육·직업훈련 등 받는 경우 25세 미만) - 장애인(25세 이전 발생): 연령 요건 미적용	· 자녀: 18세 미만 ⁶⁾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거주	· 생계를 함께하는 자 ³⁾	· 생계를 함께하는 자 ³⁾	-	· 함께 거주하는 자 ³⁾	· 함께 거주하는 자 ³⁾	· 장애인: 함께 거주하는 자

〈표 IV-21〉의 계속

	한국	일본	영국 ¹⁾	미국 ²⁾	독일	프랑스
기타	-	· 당해 급여가 없는 청색신고 사업 전 종자이거나 백색신 고 사업 전종자가 아닐 것	-	· 피부양자가 연간 부 양비용의 50% 초 과 부담 · 미국 시민,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 부부합산신고 하지 않는 자녀	-	· 자녀 등이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독립된 가구로 간주하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주: 1) 영국은 우리나라 「민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법에 따르며 부양가족의 일반적 범위와 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세법상 공제 항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우자, 자녀, 장애인이 납세자의 담세력에 고려되는 대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2) 16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아닌 아동수당을 적용받음

3) 일반적으로 근무, 학업, 요양 등으로 인하여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인정함

4) 연대시민계약(PACS) 포함

5) 단 18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고 분리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6) 다만, 성인자녀이더라도 21세 미만, 학업 중인 25세 미만, 연령 제한 없이 장애 또는 군복무 중인 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합산되는 과세단위에 포함할 수 있음

자료: 본문 참조 하여 저자작성

3) 저소득층 근로 및 자녀양육 지원세제

- 조사대상국 중 한국, 영국,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근로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음⁴²²⁾
 - 저소득층의 근로 및 자녀양육 관련 지원세제는 그 국가가 채택한 소득세 과세단위제도가 개인단위라고 하더라도 가구단위의 소득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한국과 영국의 경우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근로 및 자녀장려세제 지급액 산정 시에는 가구단위 소득 및 재산, 가구 형태(맞벌이/홀벌이, 한부모), 자녀수 등을 고려함
 - 미국은 소득세 신고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가구소득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함

다. 소득세 과세단위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 <표 IV-22>에서는 조사대상국가의 소득세 과세단위 도입시기와 주요 변천과정과 변천 사유,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봄
 - 한국, 일본, 영국의 경우 과거 합산비분할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가 현재는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개인과세제도를 채택하였다가 개별과세와 부부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결혼보너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세율체계를 도입함
 - 독일은 가족단위 합산비분할과세를 도입하였으나, 개별과세와 부부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로 전환함
 - 프랑스는 세대합산 비분할과세에서 가족계수를 활용한 세대합산과세(N분N승제)로 전환함

422) 한국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영국의 경우 WTC 및 CTC, 미국은 EITC 및 CTC라고 표현하나, 해당 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로 통일함

〈표 IV-22〉 국가별 과세단위 유형과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구분	변천 과정	변천 사유	최근 논의 동향	
개인단위과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6년 가족단위 합산비분할 과세제도 도입 · 1949년 독자적 소득세법 제정, 개인단위과세 적용 · 1974년 자산소득 세대단위 합산비분할 과세 · 1994년 자산소득 부부단위 합산비분할 과세 전환 · 2002년 개인단위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 비분할과세 위헌 판결 · 헌법상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특별한 보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혼인감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부는 혼인과 출산 관련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과세단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7년 가족단위 합산비분할 과세제도 도입 · 1947년 민법상 친족법개정, 개인단위 개별과세 전환 · 1950년 개인단위 과세 전환(사우프 권고) · 1957년 자산소득 세대단위 합산과세제도 도입 · 1988년 완전한 개인과세제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상 가족제도 폐지 · 세제간소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N분N승제 도입 검토 의견이 제기됨 · 국회 논의 중이나 세수감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집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부부단위 합산비분할 과세제도 도입 · 1972년 부인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단위과세 허용 · 1990년 완전한 개인단위 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사회적 지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을 감소 해결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 · 2022년 보수당에서 가족과세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양성평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음
소비단위과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3년 연방소득세 도입, 개인단위과세 채택 · 1948년 선택적 이분이승제(단일세율표) 전환 · 1951년 선택적 이분이승제(복수세율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보너스 또는 결혼 패널티 문제 해소 · 세법상 결혼 우대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세율표 도입 이후 결혼 패널티 해소를 위한 세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년 가족단위 합산비분할 과세제도 도입 · 1941년 부인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단위과세 허용¹⁾ · 1958년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 · 1964년 자녀소득 합산과세 위헌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 비분할과세 위헌 판결 · 헌법상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특별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합산분할과세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 독일경제연구소(DIW, 2017)는 부부합산분할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단위전환 및 양도 가능한 기본공제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4년 소득세 도입, 세대합산비분할과세 채택 · 1945년, 세대단위과세(N분N승제, 가족계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장려(가족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계수 적용에 따른 다자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1981년 세 부담 경감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였고, 이후로 그 수준을 조정해 오고 있음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V. 시뮬레이션 분석: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 분석 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를 기초로 하여 조사대상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 과세단위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크기를 비교·분석함
- OECD에서 2023년에 발간한 『Taxing Wages 2023』⁴²³⁾의 데이터와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한 후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 크기를 측정하였음
 - OECD(2023)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라 가구유형을 8가지⁴²⁴⁾로 분류하여 조세 격차(Tax Wedge)⁴²⁵⁾를 비교·분석함
 - OECD(2023)는 우리나라의 조세격차(Tax Wedge)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세 공제제도 중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423) OECD에서는 회원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크기를 측정하여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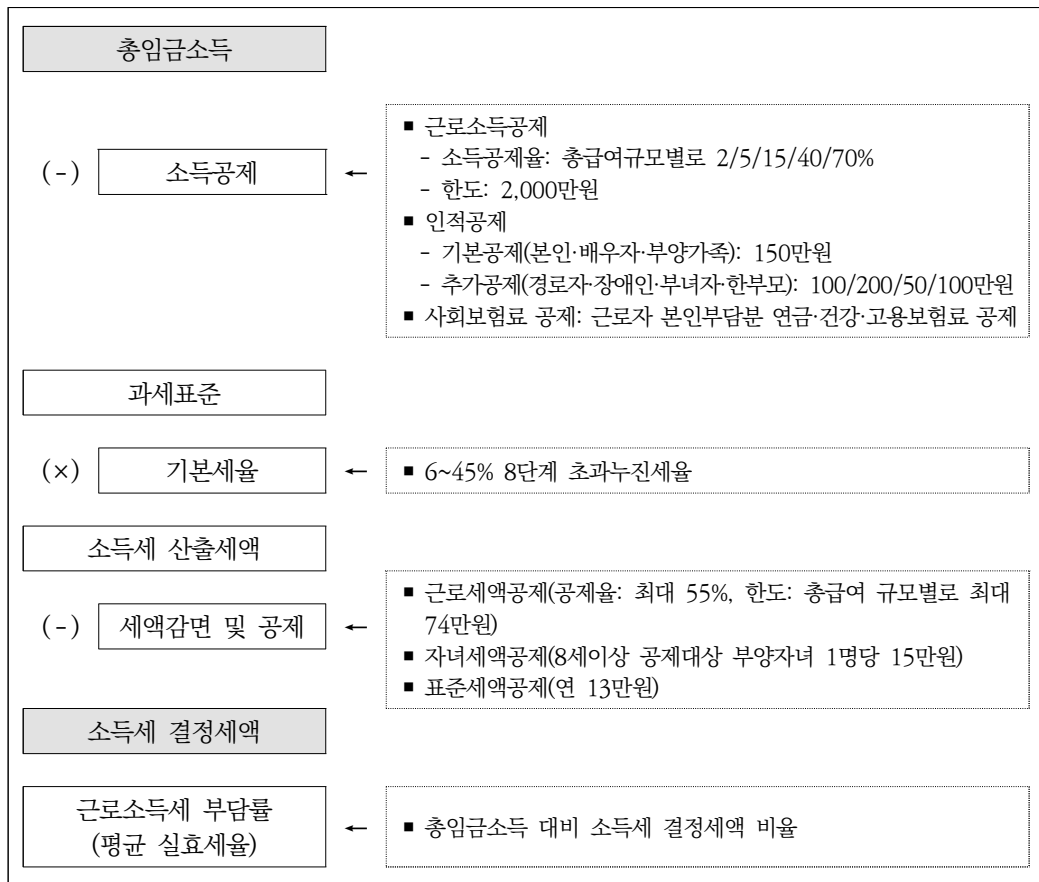
424) ① 독신·무자녀·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②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00% 수준 가구
③ 독신·무자녀·평균급여의 167% 수준 가구
④ 한부모·2자녀·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⑤ 부부·2자녀·평균급여 100% 수준 홑벌이 가구
⑥ 부부·2자녀·평균급여 167%(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 수준 맞벌이 가구
⑦ 부부·2자녀·평균급여 200%(배우자는 평균급여의 100% 수준) 수준 맞벌이 가구
⑧ 부부·무자녀·평균급여 167%(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 수준 맞벌이 가구

425) 조세격차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개인소득세(income tax)와 본인의 사회보장기여금(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SC)의 합에서 현금보조금(cash benefits)을 차감한 값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비용(labour costs)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됨

세액공제만을 반영함

-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산출하는 방식은 [그림 V-1]과 같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함

[그림 V-1]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산출과정



주: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분석대상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은 본 보고서 조사대상국가의 과세단위 유형에 따라 크게 개인단위와 소비단위로 나누며, 소비단위는 다시 부부단위와 가족단위로 나누어 분석함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미국과 독일은 부부단위, 프랑스는 가족단위를 채택하고 있음
- 부부단위 과세방식은 다시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복수세율표를 적용하는 미국식과 단일세율표 하에서 이분이승제를 적용하는 독일식으로 나누어짐
- 분석시나리오 중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분석대상인 평균임금의 400%로 설정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구간⁴²⁶⁾에 미치지 못하여 미국식과 독일식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분이승제로 분석함
- 미국의 신고유형별 복수세율표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구간을 제외하고는 부부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구간이 독신 또는 부부개별신고 시 과세구간의 두 배로 설계되어 있음⁴²⁷⁾
 - 부부가구에게 적용할 세율표상의 과세구간이 독신 및 부부개별신고 시 적용하는 과세구간의 2배인 경우에는 복수세율표의 미국식과 이분이승제의 독일식은 세 부담이 동일하게 됨
 -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전일제 성인 근로소득자(full-time adult gross wage earnings)의 평균임금(average wage)은 4,978만원임

426) 우리나라의 2022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0억원 초과	45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427) 미국의 과세단위는 부부합산/부부개별/세대주/독신 4가지의 신고유형에 따른 복수세율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소득 구간별로 최대 37%의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음; 미국은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2017」에 의해 고소득자가 직면하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당시 35% 최고세율 과세구간을 제외하고는 부부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구간이 독신신고 시 과세구간의 두 배로 조정된 바 있음

- 분석범위는 개인/부부/가족단위 과세단위 유형에 대하여 가구유형 및 소득 수준을 결합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의 크기를 비교함
 - 가구유형은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맞벌이/홀벌이로 분류하며, 한부모가구는 분석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 수준은 전일제 성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150%(주소득자: 100%, 2차 소득자: 50%)와 400%(주소득자: 300%, 2차 소득자: 10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 총 임금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함
 - 조사대상국가의 과세단위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측정 시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등은 현행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가구당 근로소득금액은 각 개인별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을 단순합산함
 -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자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각종 공제제도 중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를,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함
 -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주소득자가 적용 받는 것으로 가정함
 - 가구당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개인단위의 경우 각 개인별 공제금액을 단순합산하고, 소비단위의 경우 산출세액 및 총 급여액을 과세단위 유형별 가중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액에 다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함
 - 가구당 표준세액공제는 개인단위의 경우 각 개인별 공제금액을 단순합산하고, 소비단위의 경우 자녀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부부가구당 26만원을 적용함⁴²⁸⁾
 - 가구당 자녀세액공제는 2명 이하 시 자녀 1명당 15만원을 적용함⁴²⁹⁾

428)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음

429) 참고로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소비단위의 가구당 세 부담 측정 시 가중치는 부부단위는 2, 가족단위는 프랑스와 동일하게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0.5씩 산정하여 3을 적용함
- 분석 시나리오 및 과세단위 유형에 따른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표 V-1>과 같음

<표 V-1> 소득세 과세단위에 따른 세 부담 계산방식과 분석 시나리오

조사 대상국	과세단위		가구의 소득세 부담	분석 시나리오
한국	개인단위		· 주소득자와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¹⁾	개인단위
독일	부부 단위	단일세율표	· 주소득자와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각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1/2에 현행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다시 두 배하여 산출한 후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²⁾	이분이승제
미국		복수세율표	· 주소득자와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각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신고 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²⁾	
프랑스	가족단위 (N분N승제)		· 주소득자와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각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된 가족계수로 나눈 후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에 가족계수를 다시 곱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²⁾	N분N승제

주: 1.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인단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2.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자녀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3. 소비단위의 가구당 세 부담 측정 시 가중치는 부부단위는 2, 가족단위는 프랑스와 동일하게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0.5씩 산정하여 3을 적용함
 1)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주소득자가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함
 2) 가구당 근로소득금액은 각 개인별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을 단순합산함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우리나라 근로자의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을 측정한 결과는 <표 V-2>과 같음
 - 평균임금의 150%와 400%인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와 소비단위 중 부부단위와 가족단위로 적용하였을 때 세 부담 수준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함⁴³⁰⁾

- 평균임금의 150%(400%) 소득 수준인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가구는 담세력을 감소시키는 배우자 및 자녀요소를 공제제도 또는 과세단위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소득 수준의 부부가구에 비해서는 세 부담이 더 높고, 과세단위의 유형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 동일한 소득 수준의 자녀가 없는 독신가구의 세 부담은 개인단위 과세 시 9.23%(22.06%)이며, 홑벌이가구의 세 부담은 0.48%p(0.29%p) 낮은 8.75%(21.77%), 맞벌이가구는 5.16%p(7.01%p) 낮은 4.07%(15.05%)로 나타남

- 평균임금의 150%(400%) 소득 수준인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 수준의 가구더라도 맞벌이가구의 세 부담이 홑벌이가구에 비해 개인단위가 4.68%p(6.72%p), 소비단위가 1.63%p(1.63%p) 더 낮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총 급여금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⁴³¹⁾
 - 평균임금의 150%의 소득 수준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최대 공제율은 홑벌이가구가 5%인 반면, 맞벌이가구의 주소득자와 2차 소득자는 각각 5, 15% 임⁴³²⁾

430) 독신가구 중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431) 이 외에도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간에 세 부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보험료 공제가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됨

- 한편 자녀가 없는 가구는 과세표준 산출 시 부부단위와 가족단위 모두 자녀요소를 반영하지 않게 되므로 소비단위 두 유형의 세 부담은 동일한 수준을 보임
 - 자녀가 없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세 부담은 소비단위의 경우 각각 5.23% (14.23%), 3.60%(12.6%) 임
- 평균임금의 150%(400%) 소득 수준의 자녀가 없는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세 부담은 소비단위의 경우 3.6%(12.6%)로, 개인단위 4.07%(15.05%)에 비해 0.47%p(2.45%p)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는 소비단위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1/2함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이 하향되면서 누진성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됨⁴³³⁾
 - 자녀가 없는 평균임금의 400% 소득 수준의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경우 주소득자와 2차 소득자의 소득 합산 전 각각의 과세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은 각각 35%, 15%이나 소득합산 후 적용세율은 24%로 낮아지게 됨⁴³⁴⁾
- 자녀가 2명 있는 평균임금의 150%(400%) 소득 수준의 홑벌이 근로자가구의 세 부담은 개인단위가 7.38%(21.05%)로 가장 높고, 누진성 완화효과로 인하여 부부단위

432)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초과~1,500만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500만원) × 40%
1,500만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1,500만원) × 15%
4,500만 초과~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10,000만원) × 2%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 433)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규모에 따라 한도가 달리 설정되고 있어 총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공제금액이 감소하나 소비단위 과세 시 가구당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식에서 부부 및 자녀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 수준의 가구더라도 공제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 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434)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2023년 기준 최대 45%의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음

4.23%(13.72%), 가족단위 1.74%(10.6%)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미국이나 독일식의 이분이승제는 합산대상 부부의 소득을 1/2로, 프랑스의 N분N승제는 가족단위로 합산한 소득을 가족구성원의 수(N)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N분N승제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됨

- 자녀가 2명 있는 평균임금의 150%(400%) 소득 수준의 맞벌이 근로자가구는 가족단위의 세 부담이 개인단위에 비해 2.11%p(5.4%p) 낮은 0.96%(8.98%)로, 분석 대상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가족단위의 경우 과세단위에서 배우자 요소뿐 아니라 자녀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누진성 완화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소득 수준과 가구유형의 맞벌이 근로자가구는 가족단위를 적용하는 경우, 홀벌이 가구의 개인단위에 따른 세 부담 7.38%(21.05%)에 비해 6.42%p(12.07%p) 낮은 세 부담 수준을 보임

〈표 V-2〉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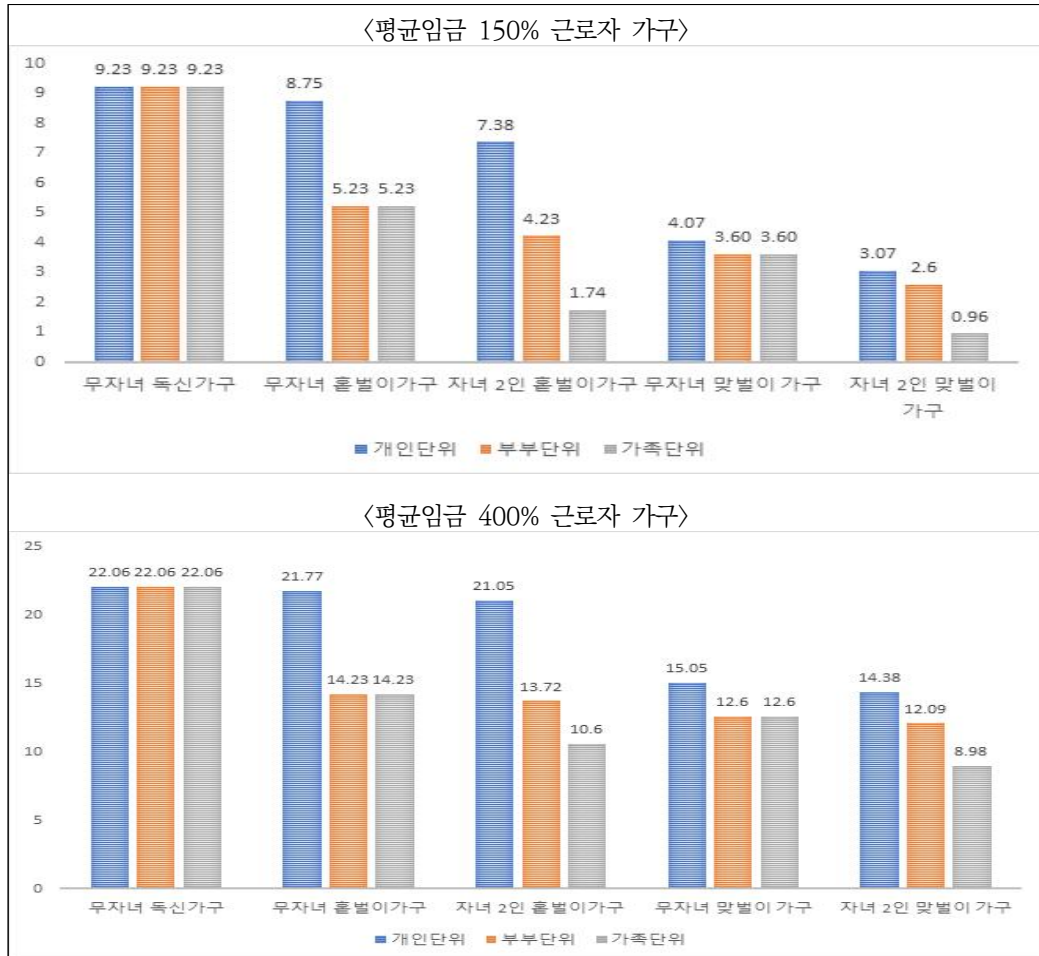
소득 수준	가구유형		개인단위 (A)	소비단위 ¹⁾		(B-A)	(C-A)	
				부부단위 (B)	가족단위 (C)			
평균 임금 150%	독신가구		자녀 0명	9.23	9.23	9.23	0.00	0.00
	부부 가구	홀벌이가구	자녀 0명	8.75	5.23	5.23	-3.52	-3.52
			자녀 2명	7.38	4.23	1.74	-3.15	-5.64
		맞벌이가구	자녀 0명	4.07	3.60	3.60	-0.47	-0.47
			자녀 2명	3.07	2.60	0.96	-0.47	-2.11
	독신가구		자녀 0명	22.06	22.06	22.06	0.00	0.00
평균 임금 400%	독신가구		자녀 0명	22.06	22.06	22.06	0.00	0.00
	부부 가구	홀벌이가구	자녀 0명	21.77	14.23	14.23	-7.54	-7.54
			자녀 2명	21.05	13.72	10.60	-7.33	-10.45
		맞벌이가구	자녀 0명	15.05	12.60	12.60	-2.45	-2.45
			자녀 2명	14.38	12.09	8.98	-2.29	-5.40

- 주: 1. 소득세 부담률(평균실효세율) = 공제·감면세액 차감 후 소득세 결정세액/총 임금소득
 2. 과세단위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측정 시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등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에 대한 개인단위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4.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5. 맞벌이가구의 소득가득비율은 평균임금 150%의 가구의 경우 주소득자 100%, 2차 소득자 50% 이고, 평균임금 400%의 가구의 경우 주소득자 300%, 2차 소득자 100% 임
 6.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1) 소비단위의 세 부담 측정 시 가중치는 부부단위는 2, 가족단위는 프랑스와 동일하게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0.5씩 산정하여 3을 적용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2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V-2]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및 가구유형별 세 부담 비교

(단위: %)



- 주: 1. 소득세 부담률(평균실효세율) = 공제·감면세액 차감 후 소득세 결정세액/총 임금소득
 2. 과세단위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측정 시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등은 현행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에 대한 개인단위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4.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5. 맞벌이가구의 소득가득비율은 평균임금 150%의 가구의 경우 주소소득자 100%, 2차 소득자 50% 이고, 평균임금 400%의 가구의 경우 주소소득자 300%, 2차 소득자 100% 임
 6.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1) 소비단위의 세 부담 측정 시 가정치는 부부단위는 2, 가족단위는 프랑스와 동일하게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0.5씩 산정하여 3을 적용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2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시사점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변경했을 때 납세자의 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국의 과세단위 유형에 따라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음
- 소득세 누진세율체계 하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가 개인단위 또는 소비단위인지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제도를 기초로 평균임금 150%(400%) 소득 수준의 근로자 가구의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 크기를 크게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측정한 결과, 개인단위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소비단위 과세방식인 미국과 독일의 부부단위합산과세나 프랑스의 N분N승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부부요소 또는 자녀요소 등 가족구성원의 수를 고려하므로 누진성이 완화되어 세 부담 수준이 개인단위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특히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 중 프랑스의 N분N승제 가족단위는 자녀의 수(N)가 많을수록 누진성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세 부담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⁴³⁵⁾
- 한편 납세자의 담세력을 감소시키는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⁴³⁶⁾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제제도⁴³⁷⁾를 두고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독신가구가 부부 가구에 비해 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 가구유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짐
 - 다만 독신가구는 배우자 및 자녀요소를 공제제도 또는 과세단위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과세단위의 유형은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35) 프랑스의 기본 가족계수는 독신자의 경우 1, 부부의 경우 2, 부부와 부양자녀 2명인 경우 3,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증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함

436)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일정 범위 내의 친족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음

437)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는 최저생활비 보장, 부양가족 수에 따른 납세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총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총 급여금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동일한 소득 수준의 홑벌이 가구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남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소득세 제도를 모두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에 따라 세 부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측정 시 반영한 공제제도는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공제를 적용하였음
 -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⁴³⁸⁾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구의 세 부담 측정 시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등은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소득세 과세단위의 부부 또는 가족단위로의 변경은 세율, 공제감면제도 등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필요로 함
 - 근로자가구의 실제 소득세 부담은 과세단위 이외에도 납세자의 담세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공제감면제도 등에 따라 결정됨
 - 우리나라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를 두고 있음
 - 반면 프랑스는 가족단위 과세로써 납세자의 개인 상황과 부양가족을 일반적으로 가족계수에 반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본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438) 본 연구는 OECD(2023)의 조세격차(Tax Wedge) 모형을 기초로 하여 세 부담을 측정하였으며, 현행 우리나라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등 소득세 제도를 모두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지 않은 OECD(2023)의 세 부담 측정방식을 보완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 부담을 계산함

않으며 일부 과세소득 구간에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소비단위의 경우라도 소비단위 과세방식,⁴³⁹⁾ 가구의 특성이나 소득기여도, 공제제도나 세율 등의 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다 다양한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⁴⁴⁰⁾
- 추후 연구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공제감면제도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패널조사 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조세 관련 정보를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제 세수효과는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공제감면제도 등의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439) 소비단위(consumption unit)는 소득을 소비하는 부부 또는 가족 등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합산 대상의 범위나 소득의 분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440)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세수입이 감소하여서는 안됨(J. E. Meade(1978), pp. 377~378)

VI. 요약 및 결론

-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단위(tax unit)로서의 ‘납세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 크기가 달라짐⁴⁴¹⁾
 - 소득세 과세단위는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제도 등을 포함한 소득과세의 기본체계로서 과세단위의 선택은 납세자의 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결혼 및 노동공급(예: 맞벌이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침

- 소득세 과세단위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가득(稼得)하는 개인단위로 산정할 것인가 또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소비단위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됨
 - 개인단위(individual unit)는 소득을 얻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대 구성원별로 그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 각각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한편 소비단위(consumption unit)는 소득을 소비하는 부부 또는 가족 등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합산 대상의 범위나 소득의 분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세 과세단위는 헌법 및 민법상의 기본원칙과 관련 규정과의 일치성을 비롯하여 과세 공평성 및 중립성, 조세 간소화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 첫째, 과세단위는 헌법, 민법, 기타 다른 세법과의 사이에서 과세원칙의 불일치성

441)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납부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례세율 체계에서는 과세단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을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⁴⁴²⁾
- 둘째, 과세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어떤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개인 또는 가구 간의 공평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함
 - 셋째, 중립성의 관점은 결혼이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과세단위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넷째, 소득세 과세단위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과세당국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임
 - 이 외에도 소득세 과세단위는 세수 규모나 소득 재분배 기능 측면에도 영향을 미침
- 그러나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소득세 과세단위로서 개인단위 또는 소비단위는 과세 공평성, 중립성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음⁴⁴³⁾
- 개인단위는 일반적으로 결혼 및 취업에 대한 중립성의 유지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privacy)의 보호, 세무행정의 단순화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반면 소비단위는 경제생활의 기본단위가 부부 또는 가족으로 공동소비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 간 세 부담 공평성을 확보할 수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해외의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소득세 과세단위는 주로 조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1948년 주(州)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부부재산제로 인한 납세자 간의 세 부담 불공평성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단위에서 부부단위로 전환함

442)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생활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443) Bittker, Boris I.,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Stanford Law Review* 27(6), 1975, pp. 1389~1463.

- 영국은 1990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부부단위에서 개인단위 과세로 전환하였음
 - 프랑스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단위인 N분N승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일본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녀요소를 고려하여 육아가구에 유리한 프랑스식 가족단위 과세방식인 N분N승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⁴⁴⁴⁾
-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세단위로 개인단위 또는 소비단위를 채택하여 그 과세단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한국, 일본, 영국은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공제제도 등 다양한 세 부담 조정 장치를 두어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과 독일은 소비단위를 부부로 보며, 납세자가 부부합산과세와 개인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운영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은 소득세 신고유형을 독신자, 세대주, 부부개별, 부부합산 4가지로 구분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복수세율표를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은 단일세율 체계 하에서 이분이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는 소비단위를 가족으로 보는 가족단위과세로, 납세자 및 부양가족의 상황을 가족계수(N)에 반영하여 가구의 담세력을 고려하는 N분N승제를 운용함
- 소득세 과세단위의 설정은 개인의 삶의 방식, 가족의 존재나 역할의 중요성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헌법의 기본원칙과의 조화, 조세정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444) 일본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N분N승제의 소득세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과세단위의 변경,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집중, 세수감소 측면에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소득세 과세단위의 부부 또는 가족단위로의 변경은 공제감면제도 등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평·중립·간소한 소득세제 구축,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세수효과 등 선택 기준 및 고려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 면세자 비중 등 소득세 세수현황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⁴⁵⁾
- 우리나라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을 OECD(2023) 방식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그리고 가구의 노동공급 행태에 따라서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비단위 과세는 부부가구의 소득기여도 및 합산대상 과세소득 규모, 소비단위 과세방식, 공제제도나 세율 등 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서도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해외 주요국 중 프랑스의 N분N승제 가족단위 과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⁴⁴⁶⁾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프랑스 출산율 제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결혼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이나 혜택 등 과세단위에 따른 세 부담 불공평성이 미국 소득세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세율표를 도입하는 등⁴⁴⁷⁾의 세제 개정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음

445)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은 5.3%로, OECD 평균 8.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20년 기준 37.2%로 2014년 48.1% 대비 10.9%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446) 프랑스는 가족계수 적용에 따라 다자녀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 절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1981년 세 부담 경감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였고, 이후로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수준을 조정해 오고 있음

447) 기혼부부의 결혼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표준공제 규모 확대, 과세표준 세율 적용 구간 조정, EITC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참고문헌

- 권성준·허윤영·이형민,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2.
- 김재진,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3. 12.
- 김현진,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프랑스 부부재산제와 청산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제695권, 2021.
- 서보국, 「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형평공제, 누진유보 및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제26권 제2호, 2020.
- 오윤, 『세법원론』, 한국학술정보, 2018.
- 유재선,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월드텍스 연구논집』, 제1권 제1호, 월드텍스 연구회, 2005, pp. 155~173.
- 이동식,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55권, 2018, pp. 95~136.
- _____,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2020.
- 이중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 이창현,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51권, 2016, pp. 7~37.

- 안종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안종범·전승훈·김동준,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JKES』, 제28권 제2호, 2010, pp. 171~199.
- 전병목,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전병목·박명호·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제1편』, 2012a.
- _____, 『한국세제사 제2편 제1권』, 2012b.
- _____,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 _____,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 Antony Seely, “Tax and Marriage,”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95/87, 1995.
- Bittker, Boris I.,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Stanford Law Review* 27(6), 1975.
- Camille Landais, “Le quotient familial a-t-il stimulé la natalité française?,” *Économie publique*, n° 13-2003/2, 2004.
- Clément Carbonnier, “Spouse labor supply: fiscal incentive and income effect, evidence from French fully joint income tax system,” *THEMA Working Paper*, n°2008-20, 2008.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Brackets, Standard Deduction, and Personal Exemption: 1988 to 2022*, 2021.
- Courtney Coile, “Marriage Penalties in Social Security Programs,” *BULLETIN ON AGING & HEAL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9.
-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23.
- J. E. Mead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George Allen & Unwin for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78.
- Guillaume Allegre & Hélène Périvier & Muriel Pucci, “Imposition des couples

- et statut marital -Simulation de trois réformes du quotient conjugal en France,” *ECONOMIE ET STATISTIQUE*, 2021.
- Martin Feldstein and Dan Feenberg, “The Taxation of Two Earner Families,” *Empirical Foundations of Household Tax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NWB,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2022.
- Sophie Buffeteau and Damien Echevin, “Taxation, marriage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France,” 2003. 6.
- 鎌倉 治子, 「家計への所得移転策と出生率との関係に係る理論と実証~フランスの所得税におけるN分N乗方式を中心に:レファレンス」,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編』, 73 (5), 2023.
- 林宏昭, 『どう臨む, 財政危機下の税制改革』, 清文社, 2002.
- 神尾真知子, 「フランス—高出生率の政策的背景—」, 『統計』 71(10), 2020.
- 税制調査会 基礎問題小委員会, 『個人所得課税に関する論点整理』, 2005.
- 税制調査会 専門所委員会, 「課税単位に関する専門小委員会報告」, 『ファイナンス』 22(1), 1986.
- 船橋 充 稿, 『所得税制の課税単位に関する一考察』, 租税資料館, 2014.

〈사이트〉

- 독일경제연구소(DIW), <https://www.diw.de>
- 독일경제저널, <https://www.handelsblatt.com/>
- 독일 세무플랫폼, <https://www.anwalt.org/>
- 독일 Public-Service.Info, <https://www.oeffentlichen-dienst.de>
- 미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aw.cornell.edu/uscode/>
-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 미국 비영리재단, <https://taxfoundation.org/>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영국의회도서관,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
일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elaws.e-gov.go.jp/>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일본 아사히신문, <https://news.tv-asahi.co.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프랑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https://www.service-public.fr/>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conomie.gouv.fr/>
프랑스 내무부,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
한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한국 국세청, <https://www.nts.go.kr/>
한국 삼일인포마인, <https://www.samili.com/>
한국 세정신문, <http://taxtimes.co.kr/news/>
한국 열린뉴스통신, <https://www.onews.tv/news/>
한국 정부입법지원센터, , <https://www.lawmaking.go.kr/>
한국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
Dailymail UK, <https://www.dailymail.co.uk/>
Finanzamt NRW, <https://www.finanzamt.nrw.de>
Finanztip.de, <https://community.finanztip.de/>
Germantaxes.de, <https://germantaxes.de/>
IBFD, <https://research.ibfd.org/>
LITRG, <https://www.litrg.org.uk/tax-guides/>
OECD 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

Public-Service.Info, <https://www.oeffentlichen-dienst.de/>
Smartsteuer(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https://www.smartsteuer.de/>
Steuernetz, <https://www.steuernetz.de/>
Steuertipps.de, <https://www.steuertipps.de/>
SIS Verlag GmbH, <https://www.sis-verlag.de/>
TAX POLICY CENTER, <https://www.taxpolicycenter.org/>
THE SPECTATOR, <https://www.spectator.co.uk/>
Urban Institute, <https://www.urban.org/>

세법연구 23-03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발 행 2023년 9월 27일
저 자 오종현 · 서동연 · 허윤영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미래기획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3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